

2006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노인에 대한 사회차별 실태조사:
개인적 및 제도적 차별경험을 중심으로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이 보고서는 연구용역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노인에 대한 사회차별 실태조사: 개인적 및 제도적 차별경험을 중심으로

2006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06. 11.

연구수행기관 한국성서대학교
연구책임자 원 영 희 (한국성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연 구 원 이 금 룡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
김 욱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 혜 지 (서울여자대학교 사회사업학과 교수)
한 은 주 (동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팀장)

목 차

연구요약

제1장 연구목적 및 필요성 15

제2장 연구의 배경 및 이론 검토 19

제1절 노인인권 및 노인차별의 개념 및 관련성 19

제2절 노인차별의 유형 및 원인 25

제3절 노인차별의 이론적 근거 29

1. 역할이론 29

2. 사회와해이론 30

3. 하위문화이론 31

4. 사회교환이론 32

5. 현대화이론 33

6. 정치경제이론 34

7. 연령계층이론 35

제4절 노인차별 관련 선행연구 고찰 36

1. 노인에 관한 편견과 부정적 이미지	37
2. 노인학대 경험	38
3. 고령자 고용차별	40
4. 노인범죄 피해	42
5. 노인자살	43
제5절 외국의 노인차별 대응 관련 제도 및 프로그램	44
1. 고용차별 관련 제도 및 프로그램	44
2. 노인학대 관련 제도 및 프로그램	50
3. 노인 의사결정권 침해 관련 제도 및 프로그램	56
제3장 조사결과	59
제1절 노인차별 실태 조사결과	59
1. 조사개요	59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59
2) 조사도구의 구성과 내용	59
3) 분석 방법	61
2. 조사결과 분석	62
1) 노인대상 노인차별 결과	62
(1) 일반적 특성	62
(2) 노인차별 유형별 경험 및 인지	64

(3) 제도적/규범적 노인차별에 대한 견해	68
(4) 노인차별상황에 대한 대처방안	69
(5) 노인차별에 대한 원인과 해결방안	70
2) 비노인층 대상 노인차별 결과	71
(1) 일반적 특성	71
(2) 노인차별 유형별 경험 및 인지	72
(3) 제도적/규범적 노인차별에 대한 견해	76
(4) 노인차별에 대한 원인과 해결방안	76
3) 지역별 노인차별의 실태와 인식	77
(1) 지역별 노인차별에 대한 경험 비교	77
(2) 지역별 노인차별에 대한 인지정도 비교	81
(3) 제도적/규범적 노인차별에 대한 지역별 비교	83
4) 세대간 노인차별의 인식비교	87
(1) 노인차별에 대한 이해에 대한 세대간 비교	88
(2) 세대간 노인차별 경험 비교	88
(3) 세대간 노인차별 인식 비교	91
(4) 세대간 노인차별 경험과 인식에 대한 중요도-실행도 분석 .	94
(5) 세대간 제도적 노인차별에 대한 견해 비교	102
제2절 전문가 델파이(Delphi) 조사결과	104
1. 조사개요	104

2. 조사결과 분석	105
1) 노인차별 인지도	105
2) 노인차별에 대한 원인	106
3) 개인적 측면에서의 노인차별 발생빈도 및 심각성	107
4) 제도적/ 규범적 측면에서의 노인차별 발생빈도 및 심각성	108
5) 노인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109
6) 노인차별에 대한 예방책	112
제4장 노인차별 대응을 위한 정책방안	116
제1절 노인차별 대응을 위한 기본 전제	116
1. 노인의 인권존중 및 국가의 인권보장 의무	116
2. 노인차별의 정책적 개입을 위한 패러다임 및 기본 원칙	118
1) 기본 패러다임	118
2) 노인차별의 개입을 위한 기본 원칙	121
제2절 노인차별 대응을 위한 정책방안	124
1. 노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환경 구축	125
1) 노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	125
(1) 노인고용 차별금지의 법적 근거 마련	126
(2) 고령자 고용촉진제도 확대	127
(3) 정년제 연장	128
(4) 노인 일자리 사업의 활성화	129

2) 노인의 안전과 사회적 참여의 권리 확대	130
(1) 노인학대 예방 및 대처	130
(2) 성년 후견인 제도의 도입	134
(3) 민간 옴부즈맨 제도의 도입	135
(4) 노인 범죄 피해 예방	135
(5) 정보 접근성 확대	135
(6) 물리적 접근성 확대	137
2.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 증진	140
1) 노인차별과 인권에 대한 사회적 교육	141
2) 전문교육 기회의 확대	144
3) 노인 대상 소비자 교육	144
4) 세대통합 프로그램의 확대	144
5) 대중매체로부터의 노인 소외 방지	145
6) 미디어를 통한 노인의 긍정적 이미지 구축	146
제5장 요약 및 결론	149
참고문헌	157
부 록	167

표 목 차

<표 2-1> 고정관념, 편견, 차별의 관계	22
<표 2-2> 국가별 노인학대 예방 체계 및 프로그램	58
<표 3-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노인층	63
<표 3-2> 노인차별 경험 및 인지도: 노인층	65
<표 3-3> 노인차별에 대한 경험 및 인지도: 노인층	67
<표 3-4> 제도적/규범적 노인차별에 대한 생각: 노인층	68
<표 3-5> 노인차별 상황 대처 방안: 노인층	69
<표 3-6> 노인차별에 대한 의견: 노인층	70
<표 3-7> 노인차별이 일어나는 이유와 해결방안: 노인층	71
<표 3-8>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비노인층	72
<표 3-9> 노인차별 경험 및 인지도: 비노인층	73
<표 3-10> 노인차별 대한 경험 및 인지도: 비노인층	75
<표 3-11> 제도적/규범적 노인차별에 대한 생각: 비노인층	76
<표 3-12> 노인차별에 대한 의견 및 이유와 해결방안: 비노인층	77
<표 3-13> 지역별 노인차별에 대한 경험 비교: 노인층	79
<표 3-14> 지역별 노인차별에 대한 경험 비교: 비노인층	80
<표 3-15> 지역별 노인차별에 대한 인지정도 비교: 노인층	81
<표 3-16> 지역별 노인차별에 대한 인지정도 비교: 비노인층	83

<표 3-17> 지역별 제도적/규범적 노인차별 관점 비교: 노인층	84
<표 3-18> 지역별 제도적/규범적 노인차별 관점 비교: 비노인층	86
<표 3-19> 노인층과 비노인층간의 노인차별에 대한 이해	88
<표 3-20> 세대간 노인차별에 대한 경험 비교	89
<표 3-21> 노인차별에 대한 인지도	92
<표 3-22> 세대간 제도적/규범적 관점 비교	102
<표 3-23> 델파이 조사 과정 설명도	105
<표 3-24> 노인차별 발생원인	106
<표 3-25> 개인적 측면에서의 노인차별 발생빈도 및 심각성	107
<표 3-26> 제도적 측면에서의 노인차별 발생빈도 및 심각성	109
<표 3-27> 노인차별 해결 방안: 중요성 및 시급성	111
<표 3-28> 노인차별 예방책: 중요성 및 시급성	113

그림 목 차

<그림 3-1> 지역별 제도적/규범적 노인차별 관점 IPA모형: 노인층 대상	85
<그림 3-2> 지역별 제도적/규범적 노인차별 관점 IPA모형: 비노인층 대상	87
<그림 3-3> 세대간 노인차별 경험빈도에 대한 IPA 모형	91
<그림 3-4> 세대간 노인차별 인식에 대한 IPA 모형	94
<그림 3-5> 노인이라는 이유로 무시하거나 심한 표현	95
<그림 3-6> 나이든 외모에 대한 거부감 및 싫은 느낌	96
<그림 3-7> 노인이기에 잘 보지도 듣지도 못할 거라는 대우	96
<그림 3-8> 아플 때 노환으로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함	97
<그림 3-9> 이성에 대해 관심이 없는 존재로 대우	97
<그림 3-10> 성에 대한 관심이나 이야기로 인한 무안	98
<그림 3-11> 노인에게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 혹은 무시	98
<그림 3-12> 다방이나 식당에서의 무관심 혹은 불편	99
<그림 3-13> 나이에 맞게 행동하라고 이야기하거나 들음	99
<그림 3-14> 노인을 비하하는 단어구사	100

<그림 3-15> 노인이기에 몰라도 된다는 식의 태도 100

<그림 3-16> 노인이라는 이유로 못미더워함 101

<그림 3-17> 노인이기에 부탁이나 요청하지 않거나 받지 못함 101

<그림 3-18> 세대간 제도적 관점에 대한 IPA 모형 103

<그림 3-19> 노인차별 해결방안: 중요성과 시급성에 따른 IPA 모형 . . . 112

<그림 3-20> 노인차별 예방책: 중요성과 시급성에 따른 IPA 모형 . . . 114

<그림 4-1> 제도적 환경-사회 인식의 균형적 패러다임 120

<그림 4-2> 노인차별 정책의 하위 목표 124

<그림 4-3> 정책적 개입 전략 148

제1장 연구목적 및 필요성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 및 사망률 저하 등에 따라 노인인구의 절대수 및 이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1960년 65세 이상의 노인인구수는 726천명으로 전체인구의 2.9%에서 2000년 7.3%로 이미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7%가 넘어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로 진입하였고, 2005년 말 노인인구수는 4,383천명으로 전체인구의 9.1%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2019년이 되면 노인수가 7,314천명(14.4%)이 넘어 '고령사회(Aged Society)'가 도래되며, 2026년에는 노인수가 10,113천명(20.0%)이 넘어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로 접어들 전망이다. 고령화 사회의 두드러지는 특징 중의 하나는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1960년에는 52.4세(남자 51.1세, 여자 53.7세)에 불과하였으나, 2005년에는 77.9세(남자 74.8세, 여자 81.5세)로 증가하여, 1960년 이후 45년간 평균수명이 25.5세나 늘어났다. 향후 평균수명의 연장은 계속될 전망으로 2010년에는 79.1세(남자 76.2세, 여자 82.6세), 2030년에는 81.9세(남자 79.2세, 여자 85.2세)로, 그리고 2050년에는 83.3세(남자 80.7세, 여자 86.6세)가 될 것으로 추계된다(보건복지부, 2005).

이러한 인구고령화 현상과 더불어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등 사회구조적 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노인문제는 우리 사회에 있어서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 사회 대부분의 노인들은 노년기에 있어서 경제적 어려움, 건강약화, 역할상실, 긴 여가시간, 보호의 문제, 고립 및 소외 등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된다(장인협·최성재, 1988). 과거 전통사회에서는 노인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시키는데 기여해 왔던 노인의 지식이나 경험은 오늘날 젊음과 생산성을 중시하는 사회적 특성 때문에 무용한 것으로 인식됨으로써 노인층은 노동시장에서 밀려나게 되고 사회적 역할상실로

인해 의존적 존재로 전락되는 등 우리 사회 노인의 사회적 지위는 상대적으로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있어서 핵가족화 및 가족규모의 변화로 인한 세대간 물리적, 정서적 거리의 형성 및 세대교류의 부족이 나타나게 되었고 과거 부양을 담당했던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인해 가족 내 노인부양의 기능이 현격히 축소되면서 오늘날 노인부양은 노인 개인이나 노인가족의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부양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연금 제도 및 의료서비스 등 사회비용의 증가 및 세대간 형평성 이슈와 연관되어 사회적 문제로서의 그 심각성이 큰 것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모든 상황들은 우리 사회 노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나 인식 및 노인편견을 형성시키는데 그리고 일상적 삶에 있어서 노인을 기피 또는 거부하거나 가해하는 등 노인차별을 초래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반적으로 '차별(discrimination)'은 특정 대상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 따른 부정적 행동을 의미하는데(Nelson, 2002), 이러한 의미에 근거할 때 노인차별은 노인이라는 연령층을 하나의 집단으로 보고 노인 개인이나 노인층에 대해 부당하게 행하여지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즉 노인차별은 노인 개인이나 노인집단을 대상으로 노인이라는 이유로 적절한 대우를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형태의 부적절한 행동이 가해지는 것을 의미한다(최원기, 1989). 노인차별은 인종차별(racism) 또는 성차별(sexism)처럼 특정집단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현실적 관점을 견지하게 되는데, 이는 관념적으로만 존재할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 노인에 대한 차별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노인차별은 노인과의 접촉 기피, 노인에 대한 고용차별, 대중매체와 관련한 부정적 노인이미지의 고착화 등 우리 사회 노인문제의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박종우, 1999). 또한 노인차별의 결과로 노인의 경제적 빈곤, 노인 소외, 노인자살 등 다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노인차별은 개인적 및 사회적 차별로 대별될 수 있다. 즉, 우리 사회 내 노인에 대한 각종 차별은 개인적 관계나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노인이 소외되고 부당하게 대우받는 경험을 갖게 한다. 개인적 노인차별의 경험은 노인의 자아 및 정체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Whitbourne & Sneed, 2002),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Pasupathi & Lockenhoff, 2002). 또한 제도적 노인차별은 노인기본권 보장 및 기초적인 생존권 보호를 저해하는 면으로서 현행 사회보장 제도나 관련 정책 등에서 볼 때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노인층에 대한 현황 파악과 대응이 시급하다. 노인차별은 인권존중을 중시하는 기본적 민주주의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윤리적,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오늘날 민주사회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세대간 화합이나 사회통합을 저해시킬 수 있다(김옥, 2002a). 이러한 점에서 노인차별의 관련 이슈는 사회복지적 고찰이 필요한 중요 연구주제로(김옥, 2002a), 국제적으로도 주요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UN에서는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1991년)’을 제정한 바 있는데, 주요 골자는 독립, 참여, 보호, 자아실현 및 존엄이다. 구체적으로 노인들의 건강과 영양, 노인소비자의 보호, 주거와 환경, 가족, 사회복지, 소득보장과 고용, 교육 등을 강조하면서 어느 영역에 있어서도 노인차별이 없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존엄의 원칙에서는 “존엄과 안전 속에서 살 수 있어야 하며, 착취와 육체적 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마드리드 고령화국제행동계획(2002년)’에서 “노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유기, 학대 및 폭력의 근절,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 고양 캠페인 등 일반 공중의 교육, 노인학대 근절 법률 제정 및 법률적 노력 강화, 노인학대에 대응함에 있어서 시민사회와 정부 사이의 협력체계 구축, 유기, 학대 및 폭력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노인보호, 모든 형태의 폭력의 원인, 성격 등 조사연구, 노인학대 대응을 위한 지원서비스 신설 등 다양한 행동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종합적인 인권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위한 국가인권 정책기본 계획(인권 NAP,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권고안을 의결하였는데, 이와 관련 우리 사회 사회적 약자인 노인 인권을 우선 보호하고, 자유권과 사회권을 포괄할 인프라를 구축하는 법과 제도 개선을 핵심 추진과제로 제시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 노인차별에 관한 피해 및 가해경험 등 개인적 차별 및 일상적 생활을 비롯하여 각종 제도와 관련한 노인의 사회차별 실태를 규명하는 것은 오늘날 노인들이 처한 현실 및 노인문제를 파악하고 노인의 삶의 질을 고양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노인복지를 구현하는데 주요 사안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들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 현존하는 노인차별을 규명하기 위해 관련 현황을 개인 및 제도적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도시 뿐만 아니라 농촌을 포함, 노인층 및 비노인층을 포괄하는 노인차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의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의 권리보장 시각에서 국가가 시급히 시행해야 할 관련 정책 및 제도의 개선 방향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제2장 연구의 배경 및 이론 검토

제1절 노인인권 및 노인차별의 개념 및 관련성

세계는 지금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 현상을 경험하고 있고 이러한 사회변화의 과정에서 적응상의 어려움을 겪거나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는데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노인의 인권과 차별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사회도 세계 어느 곳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급속한 산업화와 고령화 과정에서 노인공경 등 전통적 가치관과 비공식적 지지망이 약화되면서 노인의 존엄성이 무시되고 노인의 지위와 역할이 약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제도적인 면에서 노인에 대한 인권의식의 미비와 차별적 시각으로 인해 노인들의 건강한 삶을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어떻게 제한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만연된 노인에 대한 태도나 편견이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는 우리사회의 노인을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관점이 될 수 있다(김육, 2002a).

인권에 대한 개념은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Ife, 2001) 시대에 따라서, 또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간의 가치가 변화되고 완전한 인간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이 변화되기 때문에 인권에 대한 개념도 변화되고 다양한 것이다. 인권에 대한 초기의 관심은 투표권, 표현의 자유, 고문으로부터의 자유 등 공민권과 정치권에 관한 권리에 주된 관심이 주어졌으나 점차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한 관심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환경권, 정치적 안정, 경제개발 등으로 그 개념이 확장되고 있다(정경희 외, 2002).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인권에 관한 논의가 비교적 최근 들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만 아직도 노인의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장치는 부족한 상태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인간의 권리에 대한 선언적이고 포괄적인 표현이다. ‘인권(human rights)’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켜주는 기본적 권리’로서 시대나 상황에 무관하게 ‘인간답게 살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노인인권’이란 노인의 특성을 가진 인간이 ‘노인답게 살 권리’라고 할 수 있다(박수천, 2005). 이는 노인이 생물학적 생존권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환경을 보장하는 것을 포함한다. 인권은 인간이 자연인으로 누려야 할 평등, 자유의 권리로 자유의 억압이나 불평등에 관해 논할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고 있느냐는 점이 강조되고 이는 노인의 소득보장 측면, 의료보장 측면, 노인학대 문제, 여가활동 및 사회활동과 관련된 복지권이 확보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김미혜 외, 1999).

또한 노인인권의 구체적 내용으로 의식주 등을 보장받을 권리, 수발을 요구하고 받을 권리, 적절하고 충분한 의료를 보장받을 권리, 적절한 노동과 이에 상응하는 소득을 보장받을 권리, 재산상의 관리, 보호를 보장받을 권리, 정치 및 정책에 참여할 권리, 문화적 생활을 누릴 권리, 권리구제를 요구할 권리 등이 언급되고 있다(정경희 외, 2002). 노인에게는 세계인권선언에 명문화된 것처럼 기본적 권리가 완전하고 또 제한 없이 인정되어야 하고 오래 사는 것 못지않게 ‘삶의 질(quality of life)’이 중요하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아가 노인은 가족과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구성원으로 평가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만족한 생활을 향유하는 것이 가능해야 하는데 이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권리의 주체로서의 노인, 노인의 자기결정의 확립, 노인의 잔존능력의 존중과 활용, 노인의 가치와 존엄의 확보로부터 이루어질 수 있다(모선희 외, 2004).

1991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노인을 위한 UN원칙(UN Principles for Older Persons)에서도 노인의 독립(independence), 참여(participation), 보호(care), 자아실현(self-fulfillment), 그리고 존엄(dignity)의 원칙을 강조한바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2006년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안'에서 UN에서 제시한 원칙에 기초하여 노인의 인권보장과 노인학대 예방 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정하고 추진 중이다(국가인권위원회, 2006).

노인관련 인권문제는 법적, 제도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적인 차원에서 개인 혹은 집단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노인의 인권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국가가 충분하고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제도적 차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가정 혹은 기타 사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나 노인차별까지도 포함하고 있으며, 비제도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권침해가 일어나도 쉽게 드러나지 않는 경향이 있다(Biggs, et al., 1995, 심재호, 2005에서 재인용).

인권에 대한 정의에서와 마찬가지로 '차별(discrimination)'이라는 용어도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 차별은 '차이', '범주화'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하여 단순한 구분을 뜻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인식 뿐 아니라 태도와 행동을 포함한 '배제', '왕따', '거부', '억압', '탄압' 등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 국어사전에서도 차별은 차등이 있게 구별함을 뜻함으로 이미 등급을 달리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차별 대우'의 정의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남보다 나쁜 대우를 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강희설, 2004).

즉 차별은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자의적(恣意的)인 기준에 의해 불평등하게 대우하고 격리시키거나 소외시키는 현상을 의미한다. 차별은 편견에 의해 나타나는 부정적 결과로, 편견은 단지 마음의 상태라고 한다면 차별은 개인 또는 사회의 명백한 관적 행위라 할 수 있다(Saenger, 1953). 알포트(Allport, 1954)는 차별이란 어떤 집단

이나 그 성원들에 대해 행해지는 부당한 행위인 반면, 편견은 어떤 집단이나 그 집단에 속한 개인들에 대해 근거 없이 부정적 태도(attitude)를 지니는 것이라 하였다. 차별은 태도(attitude)의 전통적 세 가지 요소인 정의(affection), 인지(cognition), 그리고 행동(behavior) 중 행동적 요소와 관련이 있는데(Nelson, 2002), 이러한 측면에서 차별은 집단명칭에 근거해 불이익을 주는 행동을 지칭한다. 즉, 능력, 장점, 업적과 무관한 속성들을 근거로 해서 개인이나 집단이 의도적이건 비의도적이건 간에 부당하게 다루어지는 것으로, 차별은 고정관념이나 편견과는 달리 행동적(behavioral)인 측면을 주된 태도적 구성요소로 하는 것이다(차종천, 2004).

<표 2-1> 고정관념, 편견, 차별의 관계

태도요소	부정적 태도의 측면
인지적	고정관념
감정적	편견
행동적	차별

자료: Shaver, K. G.(1977). Principles of Social Psychology, Cambridge, MA: Winthrop Publishers, 차종천(2004)에서 재인용.

한편, 차별을 정당한 차별과 부당한 차별로 나누어 설명하기도 한다. 정당한 차별이란 사람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정당한 차별은 폐지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사회운영의 원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긍정적 차별이 정당하다는 것을 어떤 근거로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해서 되어왔다(강희설, 2004). 양창삼(1989)은 긍정적으로 차별하든지, 발전적으로 차별하든지 하는 것이 정당한 차별적 불평등의 개념이긴 하지만, 차별 속에는 항상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또 다른 요소가 자리 잡

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즉 차등의식 속에 우월감이나 열등감이 작용하여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파괴성이 농후한 차별적 의식을 낳을 소지가 있음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차별은 특정 집단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다 갖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부정적 차별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회인식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인종, 성, 연령 등의 측면에서 범주화하기 쉽다(Kunda, 1999). 버틀러(Butler, 1969)는 연령으로 인한 차별을 ageism이라는 용어로 표현하였는데 연령차별(ageism)은 인종차별(racism) 또는 성차별(sexism) 등 차별주의(-ism)의 한 형태로 특정 연령층에 대한 부정적 관점 또는 현실과 괴리된 관점을 견지한다(Butler, 1987; Palmore & Manton, 1973).

노인차별은 흔히 '에이지즘(ageism)'이라고도 지칭한다. 우리나라에서 'ageism'이라는 용어는 노인배타주의, 연령(차별)주의, 고령자 차별주의, 나이(차별)주의 등 다양한 형태로 혼용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정적 의미의 편견이나 차별을 의미한다. '에이지즘(Ageism)'이란 1969년 미국국립노화연구소(National Institute on Aging)의 초대 소장이던 로버트 버틀러(Robert Butler)에 의해 인종차별주의(racism)나 성차별주의(sexism)가 피부색깔이나 생물학적 성(性)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것처럼 연령에 의한 차별을 지칭하는 말로 처음 사용되었다(Butler, 1969). 버틀러(Butler, 1969)는 노인차별이란 노인집단 또는 노인 개인에게 노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취급하는 명백한 행동으로, 이는 대부분의 경우 편견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였다. 맥그완(McGowan, 1996)은 연령차별을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일방적 편견을 갖거나 이에 상응하는 차별적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에이지즘(ageism)의 대상은 어느 연령층이나 해당될 수 있으나 실제 일반사회에서 에이지즘(ageism)의 주요 대상은 노인층인 경우가 많다(Levin & Levin, 1982; Palmore, 1990).

고양곤(2002) 역시 “현대사회에서 연령차별주의의 주 대상은 노인이다”라고 주장하였고 그 이유로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은 나이가 들어 성장하면서 자연적으로 편견이나 차별을 극복할 수 있지만 노인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연령차별은 인종차별, 성차별과 달리 연령차별을 행하는 가해 집단의 구성원이 나이가 들어감에 연령차별을 당하는 피해 집단의 구성원이 된다는 점에서 독특한 특성을 지닌다(Nelson, 2002).

이와 같은 논의들을 고려하면 일반적으로 ‘에이지즘(ageism)’의 의미를 노인차별과 동일시하는 것에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김문영(2000)은 ‘에이지즘(ageism)’을 통해 본 노인차별에 대한 고찰에서 질병, 성적 불능, 외관상 추함, 지적능력 감퇴, 노망 등이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이며, 노인에 대한 편견이 실제 생활에서 차별행위로 드러나게 된다고 하였다. 노인차별은 직장생활, 고용, 정부기관의 제도나 프로그램, 그리고 가정 등 개인의 일상생활과 연관되어 나타날 수 있다(Palmore, 1990).

그러나, 여타의 차별 논리들과 마찬가지로 노인차별도 반드시 부정적인 의미로만 쓰이는 것은 아니다. 팔머(Palmore, 1990)는 노인차별이란 개념이 사회에서 항상 부정적인 의미만 내포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노인에 대한 세금혜택, 공공서비스 이용시 할인, 노인을 위한 의료보호 등을 긍정적 노인차별(positive ageism-prejudice and discrimination in favor of the aged)의 예로 지적하였다. 그러나 긍정적인 노인차별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연구들도 한결같이 노인차별이 노인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회에서 일어나는 노인차별의 형태 또한 부정적 행위가 압도적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제반의 논의들을 고려해 볼 때, 노인차별 역시 다른 차별 논의들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몇 가지 긍정적 차별들이 존재하지만 이를 노인에 대한 특혜로 보기보다는 사회적인 ‘형평’의 의미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노인차별은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차원에서 어느 분야에서든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사회적 관심과 적극적 개입이 필요한 노인의 인권문제와 관련된다. 우리나라의 노인을 위한 복지는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급급하여 사회적 불이익이나 학대 및 차별로부터 자유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관심이 부족했다. 노인의 인권과 노인차별은 상호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 노인이 존엄성과 품위를 유지하며 건강하고 만족스런 삶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이슈이며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제2절 노인차별의 유형 및 원인

차별은 차별 범위에 따라 개인적, 제도화된 차별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적 차별(individual discrimination)'은 외집단에 속한 사람을 멸시하고, 외집단의 참여기회를 부정하며 그들의 생명과 재산에 대해 폭력을 가하는 개인 수준의 공공연한 행위를 말한다. 반면 '제도화된 차별(institutionalized discrimination)'은 소수 집단의 성취를 저해하거나 제한하여 그들을 종속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위치에 묶어두려는 관행적으로 확립된 행위양식을 가리킨다. 그리고 차별은 편의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차별로 나누어 살펴볼 수도 있다(차종천, 2004). 즉 차별은 개인적 차원에서부터 집단과 국가, 국가간에 이르기까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팔머(Palmore, 1990)는 개인에 의한 편견이나 차별을 개인적 노인차별(personal ageism)로 강제퇴직정책 등이 제도적이고 사회구조적으로 노인을 차별하는 현상을 제도적 노인차별(institutional ageism)이라 하였다.

파스파티와 락켄호프(Pasupathi & Lockenhoff, 2002)는 노인차별의 유형으로 노인

층을 무시, 배제하고 그들의 욕구를 덜 반영하는 행위, 노인층에 대해 보다 방어적이고 동정적 행위, 그리고 노인에게 부정적이거나 보다 드러나게 치명적으로 해를 주는 행위 등을 지적하였다. 또한 노인에 대한 경미한 차별은 혐오집단에 속한 사람에 대한 반감을 표시하거나 집단에 소속된 사람을 피하는 것을 말하는 반면, 심한 경우 고용, 주거, 그리고 다른 사회특권 등을 그 집단에 속한 개인에게 배제시키는 등의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노인차별의 원인으로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사회·환경적 요인을 들 수 있다. 즉 전통사회에서는 노인의 육체적 능력보다는 오랜 삶을 통해 축적된 그들의 지혜를 높이 평가했기 때문에 노인들은 직접적 생산활동이 아닌 또 다른 측면에서 일정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으나, 산업사회에서는 직접적 생산 활동으로부터 일단 물러나면 더 이상 의미 없는 노동력으로 간주하여 그 외에 다른 사회적 활동도 일시에 중단되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임춘식, 1995). 노동력을 잃었다고 간주되는 노인들은 사회적으로 부양해야 할 부담으로 치부되어, 사회는 노인을 귀찮은 자로 보게 하고(한동희, 2002) 이것이 노인에 대한 무시와 차별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생산성(productivity)을 단지 경제적 잠재력(economic potential)으로 좁게 규정한다면 나머지 노인이나 아동은 비생산적이며 아동은 그나마 미래의 잠재성이 있어 경제적 투자이지만 노인은 경제적 부담으로 간주된다는 생각으로 인해 노인차별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노인은 은퇴와 함께 더 이상 경제적으로 생산적이지 못하며 가치가 줄어들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사회의 좁은 의미의 생산성의 강조가 노인차별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둘째, 노인차별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노인집단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의 확산을 들고 있다. 부정적 이미지의 확산은 노인에 대한 편견과 사회적

거리감을 느끼게 하고, 과도하게 일반화된 고정관념으로 자리잡게 되며, 그로 인해 노인차별을 자연스럽고도 당연하게 여기게 만들기도 한다. 또한 노인들에게는 기존의 부당한 대우를 정당하게 생각하게끔 내면화시키는 작용을 하기도 한다(강희설, 2004).

실제로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이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보다는 부정적 이미지가 고정관념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조부모와의 교류가 많을수록(김영숙, 2002), 노인문제 관심도와 노인과의 대화 정도가 많을수록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박경란·이영숙, 2001). 즉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확산이 노인차별의 근원임을 지적하고 있다(고양곤, 2002; 김문영, 2000; 김옥, 2002a; 최원기, 1989; 한동희, 2002).

기존 연구들(김영숙, 2002; 박경란·이영숙, 2001; 서병숙·김수현, 1999)에서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및 편견과 고정관념을 표현한 단어들을 나열하면, '항상 아픈', '노망한', '색 밝히는', '주책맞은', '저속한', '늪어빠진', '쪼글쪼글 할망구', '목표가 없는', '쇠약한', '은둔적인', '비활력적인', '수동적', '약한', '의존적', '무능한', '비생산적', '시대에 뒤떨어진', '지루한', '생활감각이 부족한', '자기중심적인', '불평이 많은', '고집스러운', '탐욕스러운', '보수적인', '폐쇄적인', '삶에 지친' 등이다. 이러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의 문제는 대부분 개인이 실제로 노인과 접촉하여 경험해서 갖게 된 인식과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가족, 학교, 또래집단, 매스미디어 등을 통한 사회화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학습된 것이며, 사회적 관습으로 자리잡아 차별을 제도화한다는 것이다(윤인진, 2000).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만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노인차별의 원인으로 지적하는 연구도 있다. 김문영(2000)은 사람들이 노인을 꺼려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감 때문이며, 이러한 경향은 노인이나 젊은이의 사망확률이 그다지 차이가 없는 전근대사회보다 고령일수록 사망할 확률이 높은 근대사회에서 더욱 심

하게 나타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Kastenbaum(1979)도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므로 나이듦을 두려워하고 죽음과 나이듦을 유사한 것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노인차별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현대사회에 있어서 노인을 배제하는 젊은이 중심의 문화가 노인차별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하위문화이론에서와 같이 노인들은 일반문화와는 다른 노인 특유의 가치관, 취미활동, 생활양식을 가지고 하위문화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것은 노인들의 정체성과 자아상의 토대가 되고 그들을 뭉치게 하는 집단 의식을 갖게 한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노인끼리만 따로 분리·격리되어 살아갈 때는 기존의 노인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이 강화되고(고양곤, 2002), 젊은층과 함께 할 수 없는 구조, 노인의 설자리를 격리시키는 사회구조가 된다는 것이다(한동희, 2002). 결국 노인들이 격리되어 하위문화를 이루고 사회전반은 젊은이 중심의 문화로 이루어질 때 노인들은 사회 속에서 분리되고 노인차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팔머(Palmore, 1990)는 로빈 윌리엄스(Robin Williams)가 주장한 미국 사회의 중요한 가치 중 다섯 가지가 노인차별을 조장한다고 하였다. 그 다섯 가지 가치는 수동적 수용(passive acceptance)이 아닌 능동적 지배(active mastery), 내적인 경험(inner experience)에 대한 관심이 아닌 외부의 세계(external world)에의 관심, 전통성(traditionalism)보다는 합리성(rationalism)의 강조, 특수성(particularism)보다는 보편성(universalism)의 강조, 그리고 수직적인 관계(vertical relationships)보다는 수평적인 관계(horizontal relationships)에의 관심이다. 노인층은 이러한 사회의 기본적 가치로부터 일반적으로 벗어난 것으로 이해되므로 부정적 편견이 영속되며 노인들의 이러한 경향을 '시대나 유행에 뒤진 구식'으로 여기고 노인의 특성, 사회에의 긍정적 기여, 그리고 노인층이 존중하는 가치를 존중하지 않고 젊음을 중시하는 사회(youth oriented society)의 가치가 노인차별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노인차별유형의 예와 노인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몇 가지 원인을 살펴보았다. 개개인의 노인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은 노인을 지속적으로 접하고 교류하면서 이해의 폭을 넓혀가면서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만 사회구조적인 차별은 당사자들의 노력과 더불어 제도적, 법적 지원을 동반한 사회적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3절 노인차별의 이론적 근거

노인차별을 설명하는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기 위해 기존 노인관련 제반 이론들에 대한 검토를 미시적 및 거시적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다음은 미시적·거시적 차원에서 역할이론, 사회와해이론, 하위문화이론, 사회교환이론, 현대화 이론, 정치경제 이론, 연령계층이론을 통해 오늘날 노인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역할이론

역할이론(role theory)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이 수행하는 사회적 역할들에 의해 자신의 사회적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자아개념(self concept)을 지켜나가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노년기에 접어들면 새로운 역할의 취득은 별로 없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에 수행하던 역할들을 상실하게 되면서 사회적 정체감과 자아존중감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다(Rosow, 1985).

실제로 노년기의 역할의 특징은 애매하고 불확실한 성격에서 찾을 수 있다. 즉 노년기에 들어서서 노인들이 어떠한 활동과 행동을 해야 하는지 애매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역할 불확실성(role ambiguity)'은 생산성이나 활동성만을 중시하고 노인의 특

성과 강점을 고려하지 않는 산업사회의 노인차별적 관점으로부터 비롯된 노인 위치나 역할의 애매함에서 오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을 버제스(Burgess, 1960)는 퇴직한 노인들의 '무역할성'(無役割性, rolelessness)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노인들을 무력하게 만들고 혼란에 빠뜨리며 나아가서 노인들이 의존적이게 만든다고 지적하고 있다(Hooyman & Kiak, 1991). 역할상실은 노인의 사회적 정체성과 자아존중감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노인은 배우자 역할이나 은퇴로 인한 직업역할의 상실을 다루는 방법을 배워나가야 한다. 또한, 노년기 삶의 독자성과 자립성을 고양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부여가 노인차별을 완화시키는 방안으로 제시된다.

2. 사회와해이론

사회와해이론(social breakdown theory)은 노년기에 들어서서 늙어가는 것에 적응하여야 하는 사람에게 사회 일반의 환경이 노인의 자존심을 약화시키고 부정적인 자기평가를 내리게 될 위험을 초래하는 문제를 체계적으로 규명해 보기 위한 이론이다. 사회적 낙인 이론에 토대를 둔 이 이론에서는 노인이 스스로를 무능력하다고 평가하게 되는 것은 질병이나 연령 때문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와해증후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즉 사회 및 가정에서의 역할상실, 노년기에 대한 공식적인 사회화 과정의 결여, 인생 후반기에 적합한 사회규준의 부재가 함께 작용하여 노인의 자존심이 약화되고 자신 이외의 사회에서의 평가에 의존하게 등 노인이 사회의 노인차별적 요인에 의해 사회에 길들여져 가는 방향이며 전형적인 노인상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주변 사람들과 사회는 노인들을 무능력하고 낡은 세대라고 낙인찍기 때문에 그나마 가지고 있던 능력이나 기능, 기술 등도 더욱 쇠퇴하게 되고 마침내 스스로를 무능력하다고 평가하게 되며 이것이 부정적 환류(negative feedback)의 악순환으로 이어진

다. 이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에게 불리한 사회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노인에게 적절한 일과 역할을 제공하고, 다양한 사회화 과정(예 : 정년 대비 은퇴교육 등)을 통하여 인생의 후반기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정체감과 자신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3. 하위문화이론

로스(Ross)에 의해 주창된 이론인 하위문화이론(subculture theory)은 노인들의 공통된 특성과 사회문화적 요인들에 의해 노인들만의 집단이 형성되며 그 내부에서 노인들의 빈번한 상호작용을 통해 일반문화와는 다른 노인 특유의 가치관, 취미활동, 생활양식을 가진 하위문화가 형성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노인들의 하위문화는 노인들의 정체성과 자아상의 토대가 되고, 그들을 뭉치게 하는 집단의식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Ross, 1965; Blau, 1981). 로스(Ross)는 “노인들은 점차 노령화될수록 그들 간에 긍정적인 친화성을 느끼게 되고 동시에 여타 연령집단으로부터 배타 혹은 무언의 경멸을 느끼게 되어 결국 그들만의 문화를 형성하게 된다.”고 하면서 이는 노령화로 맞게 되는 육체적 한계, 공통적인 역할변화, 급변하는 사회에서의 공통된 세대경험에 의해 나타나게 된다고 하였다(최정혜, 2002에서 재인용). 이러한 노인들의 집단의식은 필요에 따라서는 정치적 권력 행사로 표출되어 사회적인 집단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Hooyman & Kiyak, 1991). 즉 노인들이 그들만의 하위문화를 형성하는 이유는 타 연령집단과의 교류가 점차 줄고 연령차별적 정책 때문에 노인들만의 상호작용이 증가하고 공통의 신념과 관심을 가지고 그들 집단에 적절한 규범과 가치를 창출해 낸다.

로스(Ross)는 노인하위문화는 노인인구의 전반적 증가, 강제 및 자발적 은퇴의 증

가로 인한 사회로의 통합성 저하, 핵가족화에 의한 동거형태의 변화,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수명연장, 육체적 쇠약 및 경제적 종속성 증가로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고 하였다(최정혜, 2002에서 재인용). 그러나 노인의 생활양식이나 주거에 대한 선호도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하위문화 이론이 모든 노인들에게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어떤 노인들은 다른 노인들과 함께 살면서 하위문화 속에 노인들만의 공동의 삶을 즐길 수 있겠으나, 다른 노인들은 젊은이들과의 활발한 상호작용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은 노인끼리 모여 살기를 원한다고 추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노인들끼리만 집단을 이루어 살면서 일반 지역주민들과는 상호작용이 없이 격리되어 살아갈 때에는 기존의 노인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오히려 더 강화될 수도 있다(고양곤, 2002).

4. 사회교환이론

사회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은 인간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과정에 합리적, 경제적 모델을 적용해 인간의 사회적 행위를 설명하고 있다. 이 이론에 의하면 노인들의 사회적 지위는 노인들의 사회에 대한 기여도와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상과의 관계에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교환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사회적 행동은 두 사람 사이에 주고받는 가치(투자와 보상)가 비슷하게 이루어 질 때 자연스러운 교환 관계가 성립되지만, 투자와 보상의 균형이 맞지 않을 때에는 두 사람의 교환관계가 끊어지거나 아니면 투자가 많은 편에서 권력(power)을 가지거나 보상을 많이 받는 편에서 의존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김동일, 2000). 노인들이 소유한 교환자원의 약화로 새로운 자원이나 대체자원을 개발할 수 없을 때 주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 이론을 노인의 사회적 지위 변화에 적용해서 조사를 실시한 마틴(Martin, 1971)의 연구

에 의하면, 충분한 돈이나 기타의 사회적 지원을 가진 노인은 가족이나 친척들 앞에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노인들은 사회적 냉대와 차별대우를 받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노인문제의 바탕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교환 이론은 노인 차별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러 시사점을 주고 있다. 한편으로는 노인 스스로 사회가 인정하는 자원의 확보와 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일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가 노인들에게 이러한 자원을 확보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다(Dowd, 1980, 고양곤, 2002에서 재인용).

5. 현대화이론

현대화이론(modernization theory)은 한 사회가 현대화의 정도가 높을수록 노인들의 사회적 역할이나 지위가 하락하게 된다는 이론이다(Cowgill & Holmes, 1972; Cowgill, 1974). 카우길과 홈스(Cowgill & Homles)는 현대화 과정에서 노인의 지위를 약화시키는 네 가지 요인으로 건강기술, 생산기술, 도시화, 그리고 교육의 대중화를 말하고 이러한 요인들을 통해 노인 인구가 증가하게 되었으며, 다수의 고령노동자들은 젊은이들과의 경쟁에서 뒤쳐져 퇴직을 강요당하게 되어 노인의 사회적 지위가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생산 기술의 발전은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직업을 많이 창출해 내지만 젊은이에게 지식과 기술면에서 뒤지는 노인들은 노동 시장에서 퇴직되기 쉽다는 것이다. 도시화와 대중교육은 직업이동과 거주지 이동으로 세대간을 격리시키고, 또한 대중교육은 젊은이들의 교육기회를 증가시키면서 세대간의 격차를 가져와 결과적으로 노인들의 역할과 신분이 축소된다고 주장한다(고양곤, 2002). 즉 현대화의 대표적인 지표로 제도적 은퇴와 교육수준에서의 세대차이, 노인의 지리적 격리 등을 들고 있다(최정혜, 2002). 현대화이론은 현대적 요소와 전근대적 요소가

공존하는 사회에서 노인의 위치와 현대화과정을 거치면서 변화되어온 과정과 결과를 연구하는데 활용된다(최정혜, 2002).

6. 정치경제이론

정치경제이론(political economy theory)은 개인이 노년에 적응하는 방식과 사회자원의 분배방식을 결정하는 구조적 특성에 관심이 있고 계급, 성별, 인종 등에 의해 구체화된 사회, 정치, 경제적 측면이 개인의 노후경험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정치 경제 집단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불평등 정책을 계속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노인을 차별하게 되고 노인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Minkler & Estes, 1984). 이 이론은 노인문제의 해결을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체제의 구조와 운영의 개선에서 찾아보려는 거시적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치경제 이론가들은 인간의 노화과정 그 자체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사회문제가 될 수 없고, 노인문제의 원인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구조적 모순 때문에 노인들이 경제적·사회적으로 비인간적인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노인복지를 위한 사회보장제도나 보건의료정책 그 자체가 노인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노인들을 병약하고 무력한 존재로 만드는 편견과 낙인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Estes & Binney, 1989). 또한 정치경제 이론가들은 기존의 노년학자들도 노인들이 병약하고 무능력한 존재라는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데 일조해 왔다고 비판하면서 이러한 편견이나 부정적인 태도가 '신노년 차별주의(New Ageism)'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한다(김동일, 2002, 고양근, 2002에서 재인용).

7. 연령계층이론

연령계층이론은 연령계층과 사회구조 간에 혹은 연령계층들간의 관계 및 특징에 관심을 갖는다(Riley & Foner, 1972). 라일리(Riley, 1971, 1985)와 포너(Foner, 1975)에 따르면 모든 사회는 '사회경제적 계급(socioeconomic class)'에 의해 계층화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청년, 중년, 노년 등으로 나이에 따라 범주화 내지 계층화한다는 것이다. 나이에 따라 구분되는 각 연령층은 독특한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연령규범(age norm)'에 의해 규제된다. 또한 각각의 '연령계층들(age strata)'이 수행하는 역할의 가치는 사회로부터 차등적인 평가를 받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연령등급화(age grading)'라고 부른다. 예컨대 작업장에서 젊은 근로자의 역할은 대개 나이든 사람의 그것에 비해 더 생산적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연령 등급화의 결과이다. 직업인의 사회적 역할이 연령에 따라 그 가치가 등급화되는 것은 연령집단 사이에 '구조화된 불평등(structured inequalities)'을 낳는 사회적 결과를 초래하고 노인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

연령계층화 이론은 한 개인의 신체적 외모라든지 그가 지켜나가는 사회적 지위의 기간, 그리고 개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의 차이를 무시하고 사람의 연령을 단지 윌력이나 생의 단계(life stage)에만 의존하게 되므로 노인 개개인의 능력이나 역할을 왜곡시킬 수 있어 노인차별적인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 노인층은 다양한 특성과 성향을 가지고 있고 개개인에 따라 수입, 건강, 교육정도, 종교, 과거의 경험 등에 따른 다양한 욕구와 관심을 가진다. 실제로 사람들의 역할은 연령보다는 가족배경, 성, 사회 계급 그리고 정치적, 경제적 구조에 의해 평가받는 경향이 더 강하다는 점에서 연령계층화 이론은 한계를 보인다(Hagestad & Neugarten, 1985; Minkler & Estes, 1984).

제4절 노인차별 관련 선행연구 고찰

그동안 사회차별에 관한 선행연구들(강현아 외, 2000; 권경득, 2000; 김영중, 1990; 김정애, 1999; 양옥경, 1998; 유동철, 2000; 윤인진, 2000; 이재창 외, 2001; 한국여성개발원, 1996)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나, 주 대상은 여성과 장애인이었고 우리사회에서 노인의 차별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수행되었다. 노인과 관련된 기존 연구를 노인차별적 측면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주로 노인에 대한 태도(김운정·정선아, 2001; 김혜경, 1997; 이금룡, 2004; 이선자, 1989; 이시형 외, 1999; 조명희, 1987; 한정란, 2000; Hawkins, 1996; MaTavish, 1971; Rosencranz & McNevin, 1969; Sanders et al., 1984; Seefeldt, 1984; Troxler, 1971; Tuckman & Lorge, 1969)나 이미지(김미혜·원영희, 1999; 서병숙·김수현, 1999; 이은미, 1990), 고정관념이나 편견(박경란·이영숙, 2001; 원영희 2004; Hummert, 1993; Hummert et. al., 1995; MacNeil et al., 1996; Schmidt & Boland, 1986) 등 인식적 차원에서 진척되어 왔다. 그 외 노인차별에 관한 추상적인 담론 형식의 논의(김문영, 2000; 김옥 2002a), 노인차별의 상황적 판단(김정석·김영순, 2000; 구자순, 1987) 또는 노인의 차별감에 대한 인식(최원기, 1989) 그리고 노인차별에 관한 탐색적 연구(김옥, 2002b; Palmore, 2001)가 시도되었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노인차별 경험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 중 86.2%가 최소 한 가지 이상의 노인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하층 이하'의 노인과 '건강이 나쁘다'고 한 노인의 차별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옥, 2003). 즉 한국 노인들은 노령으로 인한 신체적 상황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어려움과 사회생활에서 무시를 당하거나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취업 등에 있어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직접적인 인간관

계에 있어서 보다는 사회적 여건과 관련하여 차별 피해 경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원영희, 2005) 우리나라 노인들은 개인적 관계성 보다 사회제도적 측면에서 차별을 경험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마찬가지로 노인복지정책 형성과정에서의 노인배제, 의료기관의 불친절과 부적절한 처치, 각종 공적부조제도에서의 차별, 고용기회의 차별, 여가장소의 부족, 교통수단 이용에서의 차별, 노인문화에 대한 경멸적 태도, 노인교육 기회에서의 차별 등과 같이 공공부문에서의 다양한 노인차별이 존재한다고 하였다(한동희, 2002). 그 외 우리나라의 도로 사정이 좋지 않은 것, 도로면적에 비하여 차량수가 많다는 것, 건널목에서 노인들이 건너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 주어진 교통신호체계, 보행자를 우선으로 생각하지 않는 잘못된 교통문화, 안전에 대한 불감증 등은 교통약자라 불리워지는 노인에게 피해를 증대시키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지광준, 2002).

이와 같이 몇몇의 선행연구를 기초로 우리 사회의 노인차별이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노인차별 경험의 원인이 개인적 수준(노인의 건강상태, 경제적 수준 등)과 제도적 수준(복지정책, 고용여부, 여가, 교통문화 등)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에서 현재까지 노인차별 실태 또는 현황을 관련 선행연구 주제들을 통해 살펴보았다.

1. 노인에 관한 편견과 부정적 이미지

사람들이 노인에 대해 긍정적, 부정적 고정관념을 모두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일반인들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측면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서병숙·김수현, 1999; 박경란·이영숙, 2001; 한정란, 2000). 이를 반영하듯 우리 사회의 노인공경에 관한 조사 결과(최성재 외, 2003), 조사대상자의 반 정도(47.6%)가

현재 한국 사회에서 노인이 공경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노인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결과 과반수 이상이 노인은 일상생활을 즐기며 살고 있지 않으며,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노인은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거나 거기에 집착하며, 나이가 들수록 능력이 떨어져 하는 일이 별로 없다고 하여 노인에 대한 부정적 기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에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노인편견에 대한 연구 결과(원영희, 2004), 대인관계, 여가문화, 성·결혼, 활동, 그리고 역량 등의 대인관계 영역이 다른 영역보다 노인편견 점수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그 외 미디어에서의 노인차별 또는 이미지가 어떠한지에 관한 연구가 시도되었다. 미국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2.7%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시간대의 방송에 나오는 노인 캐릭터는 채 2%도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Donlon, Ashman & Levy, 2005). 우리나라는 신문매체를 중심으로 한 노인광고에서의 노인 이미지를 연구한 결과, 광고에서의 노인묘사가 노인의 모습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김미혜·원영희, 1999). 이와 같은 현상은 노인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전달할 수 있고 단지 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할 수 있다.

2. 노인학대 경험

노인차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는 시발점으로 노인학대 연구를 들 수 있다. 미국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 중 약 2%에서 10% 정도의 노인이 학대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achs & Pillemer, 2004). 그러나 기관에 보고되고 있는 노인학대, 방임, 착취 등은 실제 6건의 학대 건수 중 1건 정도일 것으로 보고되어 여전히 가족 내 숨겨진 문제로 분석되고 있다((NCEA, 1998).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서 노인학대에 관한 학문적 또는 정책적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전국 6개 대도시 12개 노인종합복지관 이용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조애저 등(1999)의 연구결과, 조사대상자의 8.2%가 학대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윤(2000)의 연구결과 75.2%의 사회복지사가 노인학대를 목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5년 1월부터 시·도에 설치 운영한 전국 노인학대 예방신고센터(전용긴급전화 1389) 16개소에 접수된 노인학대¹⁾ 피해사례는 6개월간 총 1,131건이 접수되어 1일평균 16건의 노인학대 피해가 접수되어 우리나라의 노인학대 경험의 수위 역시 간과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노인이 경험하는 학대의 내용이 한 유형에만 국한되기 보다는 여러 유형에 걸쳐져 있어 복합적인 학대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성재 외, 2003). 그 외 최근 무료 및 실비 요양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이슈가 대두되었으며, 실제 조사 결과(정경희 외, 2002) 인간의 자유권에 해당하는 종교의 자유와 종교행사 참여 여부를 강요받거나(35.9%), 노인들이 원하지 않는 주방 일이나 부업 등과 같은 노동을 강요받거나(3.6%), 직원에 의한 폭행이나 폭언을 경험하거나(6.0%) 이를 목격한 경우(9.0%),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관련하여 정기적인 상담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73.6%), 목욕을 하거나 옷을 갈아입을 때 옷을 벗겨 수치스러운 경험이 있다는 경우(4.8%) 등의 인권침해 사례가 보고 되었다.

이와 같이 노인학대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원인을 탐색한 한은주(2006)는 노인의 개인적 특성인 자녀와의 관계 또는 의존성의 정도가 학대에 가장 큰 원인이며, 오히려 거시적 의미에서의 노인에 대한 사회, 문화적 가치관이 노인의 학대경험에는 그다지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노인에 대한 사회, 문화적 특성

1) 노인학대의 정의를 노인복지법 제1조의 2에서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이라고 했음. 그러나 보건복지부 노인학대상담 실적(2005 상반기)에 따르면 “자기방임”을 포함하고 있으며, 나아가 “자살행위”는 자기방임을 넘어 “자기학대”에 해당되는 것으로 광의의 노인학대이자 노인인권의 지표로 볼 수 있다.

이 노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특성 문제를 상쇄시켜 줄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에 대한 전반적 가치관 또는 의식의 중요성이 주장되었다.

3. 고령자 고용차별

미국, 영국, 호주, 아일랜드 등의 서구국가에서는 나이로 인한 부당한 차별을 명문화하고 그 판단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사회적 함의를 얻기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령으로 인한 강제퇴직, 채용거부, 차별대우 등을 금지하고 구인광고나 이력서 등에 연령을 명시하는 것도 불법행위로 보는 등 고용에 있어서 고령자를 차별하지 않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고용에 있어서의 연령차별금지법(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이 제정된 이후 노인이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되었다고 여겼으나, 실제 노동시장에서 나이차별을 하는 것은 여전하고 차별 사례도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icker, 1997). 또한 미국 매사추세츠의 교육·훈련부(Division of Employment and Training)가 1995년에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55세~64세 노인층이 일자리를 찾는데 평균 27주가 걸렸으나, 25세~54세 근로자층이 일자리를 찾는 데는 19주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Cooney, 1996). 또한 80%의 일반인과 61%의 고용주가 “대부분의 고용주가 노인을 차별하고 있으며 직업을 찾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Atchley, 1988). 그리고 직업을 가진 노인도 나이로 인하여 승진이나 해고를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Falk & Falk, 1997; Palmore, 1990; Rodeheaver, 1992; McMulin & Marshall, 2001에서 재인용).

우리나라는 1992년 고령자고용촉진법을 제정하여 55세 이상 고령자들을 위한 취업 교육 및 알선사업을 수행하여 왔다. 고령자고용촉진법은 300명 이상 고용인을 가진 업체들에게 55세 이상 고령자를 적어도 3%이상 고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노인 취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낮은 편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년도별 경제활동 참가율을 살펴보면 고령자(55세-79세)의 최근 5년 동안 전체 경제활동 참가율의 평균보다 낮은 50%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06). 또한 경제활동 분야에서 노인들은 신규 채용 시의 연령 제한, 정년제에 의한 차별, 고용직종과 임금수준의 격차 등과 같은 다양한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양곤, 2002). 한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들의 재취업욕구가 대상노인의 46.3%에 이르지만 개인이 인지하는 업무처리능력, 노인에게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노인취업직종의 부족, 취업에 대한 정보부족 등으로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사회복지신문, 1997).

‘고령층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통계청, 2006)에 따르면, 55~79세 고령층의 2006년 5월 경제활동 참가율은 50.3%로 전년 동월 대비 0.4%가 상승한 반면, 실업률은 2.1%로 0.2% 하락하였다. 55~64세 연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2.3%, 실업률은 2.6%였으며, 65~79세 연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7.2%, 실업률은 1.1%였다. 이는 고령화 추세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 참가율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의 지난 해 고령자 평균 고용률은 근로자 100명당 5명꼴(4.94%)로 전년대비 0.43% 상승하였고,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고령자 평균 고용률 추이를 보면 ‘01년에는 100명당 3명(3.0%), ‘02년에는 100명당 3.7명(3.7%), 2003년에는 100명당 4.2명(4.19%), ‘04년에는 100명당 4.5명(4.51%)이었다. 업종별로는 광업(14.87%), 기타서비스업(10.82%), 부동산 및 임대업(10.00%), 운수업(8.13%) 등 고령자 고용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반면, 통신업(0.81%), 도매·소매업(0.85%), 금융·보험업(1.13%), 제조업(1.86%) 등은 낮게 나타나 업종 간 고용률의 편차가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300~499인 사업장이 7.19%, 500~

999인 사업장이 7.91%로 비교적 높았으나, 1,000인 이상 사업장은 3.56%로 낮게 나타났다. 기준고용률 초과사업장은 45.8%이고, 기준고용률²⁾에 미달한 사업장은 54.2%였다. 업종별로 기준고용률을 초과한 사업장 비율은 광업(100.0%), 전기·가스·수도업(82.5%), 운수업(75.8%), 건설업(67.3%)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통신업(0%), 도매 및 소매업(7.9%), 금융 및 보험업(16.3%), 제조업(37.6%) 등은 기준 고용률을 초과한 사업장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06).

4. 노인범죄 피해

1970년대 후반 미국에서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범죄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노인범죄가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이들 집단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점차 커졌다(Flynn, 2000).

노인범죄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실업, 빈곤, 사회적 고립과 지위상실로 인한 아노미(anomie)로 인해 노인범죄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서구 연구결과(Kercher, 1987; Flynn, 2000)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노인범죄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1971년부터 2000년까지 30년 동안의 범죄통계와 사회경제지표를 활용하여 노인범죄 추이분석을 실시한 이현희 등(2003)의 연구결과 노인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30년 동안 노인의 강력범죄율 증가(220%)는 청소년(96%), 성인(72%)에 비해 2-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록 공식적 통계가 연령이 높아질수록 범죄피해율이 낮아진다는 결과에도 불구하고(이건중, 전영실, 1995) 노인들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고 있다. 그리고 실제 범죄피해율은 공식적인 통계수치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추산되는데 그 이

2) 기준 고용률: 제조업 2%, 운수업, 부동산·임대업 6%, 기타 3%

유는 피해노인들이 신고를 함으로써 법정문제에 관여되는 것을 주저하거나 가해자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신고를 기피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Zastrow, 2000). 노인이 가장 높은 비율로 당하는 범죄피해는 사기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절도와 폭행 및 상해로 나타났다. 한편 여자인 경우, 단독주택에 사는 경우, 가구 수입이 많을수록, 범죄피해가 더 심각하다고 지각할수록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두려움을 많이 느낄수록 범죄를 피하기 위한 예방행동을 더 많이 하고, 더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고독과 소외감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자숙 외, 2003). 범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노인들은 밤에 혼자 걸을 때 두려움을 느끼며 어떤 곳을 피해 다닌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기도 하고(이건중, 전영실, 1995) 외출을 삼가는 경향이 있어 '스스로 집에 갇혀 사는 현상(self-imposed house arrest)'을 경험하기도 한다(Dowd et al.,1981).

5. 노인자살

노인차별의 또 다른 지표인 노인자살 실태를 2004년도 OECD 통계를 통해 살펴보면, OECD 30개국 중 1위(2003)로서 노인 10만 명당 71명(65~74세 58명, 75세 이상 103명)이며, 일본의 32명에 비해 2배나 된다. 노인 자살증가율은 지난 10년간 3배 이상 증가했고 2000년과 2003년을 비교하며 10만 명당 26명에서 71명으로 2배가 증가했다(중앙일보, 2005. 5. 18). 노인자살의 위험요인으로 성별, 배우자 유무, 교육수준, 가정생활 수준, 가족형태, 경제상태, 건강상태, 가족통합, 지역사회통합, 우울 정도 등 다양한 요인들이 직·간접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노인자살이 단일한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현상이기 보다는 복합적인 요인들로 발생된다는 것이다. 특히 사회적 변인(가족통합과 지역사회통합)은 직접적으로 자살에 영향을 주기 보다는 사회

통합이 악화되면 우울증을 유발시켜 이것이 곧 자살을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형수, 2002). 노인자살에 대한 국내의 통계 및 신문기사 내용을 분석한 배지연(2004)의 연구결과 노인 자살자는 전체 자살자 중 1/4을 차지하는 사회문제이며, 남성노인의 자살률이 여성노인보다 3배 더 높았고, 자살방법으로 음독자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의 자살 원인으로는 경제적 곤란, 정신질환(우울, 치매 등), 신체 질환, 가정불화 등의 원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예방 또는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전혀 없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노인자살은 산업사회에서의 노인들의 지위약화와 역할의 상실, 경제적 및 심리적 불안감이 노인들을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현상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청소년 자살에 대한 관심과 연구에 비해 노인자살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도 노인에 대한 차별적 성향을 보여주는 측면이라 하겠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인차별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노인차별에 대한 직접적 경험이나 인지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였다. 노인차별에 관한 연구가 있었지만, 이는 노인 당사자에 한정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반인이 가하는 노인차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없었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노인차별의 전반적 양상에 대해 노인 및 비노인층의 입장에서, 그리고 전문집단을 대상을 통해 알아보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 노인차별을 완화 내지 해소할 수 있는 개인적, 사회적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제5절 외국의 노인차별 대응 관련 제도 및 프로그램

1. 고용차별 관련 제도 및 프로그램

고용에 있어서의 나이로 인한 부당한 차별을 명문화하고 판단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차별을 규제하는 사회적 노력을 기울이는 외국의 사례를 미국, 영국, 호주, 아일랜드 순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미국

○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of 1967

고령 근로자의 고용기회에 대한 차별 방지는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ADEA)’에 근거하여 제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는 1967년 노동부장관에 의해 의회에 상정되었으며 동년에 공포되었다.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는 생물학적 연령에 근거한 고용차별을 금지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동법은 고용주는 피고용인의 나이에 따른 피고용인의 보상, 직위, 조건, 또는 고용특권과 관련하여 개인의 고용을 거부하거나 해임하거나 차별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명시된 조항을 준수하지 않는 고용주는 형사소송의 대상이 된다(U.S. Department of Labor). ADEA 제정 이후에도 고령자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연방정부와 주정부차원에서 고령자의 상대적 고용을 증가시키고 퇴직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지연 외, 2004).

○ The Civil Service Reform Act of 1978

1978년에 제정된 The Civil Service Reform Act는 고령 근로자의 차별 방지를 주목적으로 제정된 법안은 아니나 고령 근로자 차별 금지에 관련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The Civil Service Reform Act는 미국인 개인행동의 전반적 공평성 증진을 목적으로 계획된 금지된 개인 행위로 알려진 금지조항을 포함한다. The Civil Service

Reform Act는 고용주가 근로자나 지원자를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 종교, 성별, 연령, 그리고 장애여부에 근거하여 차별적인 행위를 취하는 것을 금지한다(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 Older Worker's Benefit Protection Act of 1990

1990년 미국 의회는 고령 근로자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Older Worker's Benefit Protection Act를 제정했다. Older Worker's Benefit Protection Act는 고용주가 해직 연금을 비롯한 고용 연금 지급시 근로자의 나이에 근거하여 고령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한다. 1967년 제정된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를 수정한 동법은 고령 근로자가 그들의 권리를 포기하도록 압력을 받거나 강요되지 않도록 보장하고자 한다. Older Worker's Benefit Protection Act에 따라, 조기 퇴직 장려 혜택의 자격을 갖춘 근로자는 조기 퇴직 장려 혜택에 따라 어떤 연금들을 받을 수 있는가에 관한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만일 Older Worker's Benefit Protection Act의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근로자는 연령차별로 고용주를 기소하기 위해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의 권리를 거부할 수 있다(Lussier, 1998).

○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은 앞서 언급된 고령자 고용 차별 금지를 목적으로 한 모든 법의 집행을 위해 설치되었다.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은 모든 연방 정부의 고용 기회 평등에 관한 규칙, 실천, 그리고 정책을 감독하고 조정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한다.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은 위원회의 개별적 정책과 실천의 모든 측면에서 평등 기

회를 증진하기 위한 지속적인 확정적(affirmative)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관리할 책임 또한 갖는다.

■ 영국

Europe Union은 고용 집행부의 고용에서의 평등 처우(Equal Treatment in Employment)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Europe Union 회원국은 늦어도 2006년까지, 개인의 연령, 성별, 종교, 그리고 장애에 근거한 직장에서의 직·간접적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영국 또한 고용에서의 연령차별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을 현재 준비 중에 있다. 고령자의 고용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영국 정부가 취했던 정책적 대응들을 연대기 순으로 살펴보았다.

1993년 영국 보수당 정부에 의해 주도된 ‘Getting on’ campaign은 고령자의 고용차별 방지를 목적으로 한 일종의 사회 운동이었다. 보수당 정부는 ‘Getting on’ 운동을 통해, 고령 근로자를 새로이 고용하거나 유지하도록 고용주를 설득했으나 ‘Getting on’ 운동은 고용주의 고용행위에 별반 영향을 미치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1997년 영국 노동당 정부는 ‘연령 친화적 고용 정책’이라는 이름의 고용주를 대상으로 한 자발적 설득문을 채택했다. 1999년에는 ‘고용주를 위한 연령 다양성 실천 강령’을 발행했다. 동 강령은 연령과 고용에 대한 정부 정책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동 강령 역시 기업의 고용 행위에는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현 노동당 정부는 공식적인 직업센터의 구인 광고에 상한 연령의 제한을 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Macnicol, 2005).

■ 독일

독일은 정년연장제도를 실행하기 위한 사전 준비과정으로 정년연장제도를 위한 근무 시간 조정법(Altersteizeitgesetz)을 마련하였다. 이 법에 따라 55세 이상의 근로자 중 최근 3년간 지속적인 완전 고용의 상태를 유지한 자는 사용자와의 합의에 따라 주당 근무 시간을 반으로 조정할 수 있다. 근무시간의 감소로 총 임금은 감소하나 노동부의 지원을 통해 기존 임금의 70%를 보존한다. 또한 연금 기여액도 정부 보조를 통해 기존 총임금 기준 90%를 유지하도록 한다(김근홍, 2005).

■ 호주

호주는 고령자를 향한 모든 유형의 사회적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2004년 Age Discrimination Act를 제정했다. Age Discrimination Act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Troy, 2005).

- ° 고용, 교육, 주택과 토지·재화·서비스·시설에의 접근, 설비, 토지 매각, 보건복지 규정·프로그램·정보에 대한 요청 집행 등의 영역에서 개인의 연령에 근거한 차별을 제거한다.
- ° 모든 구성원이 나이에 관계없이 지역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처럼 법 앞에 동일한 평등권을 갖는다는 것을 보장한다.
- ° 특별히 청년과 고령자의 차별적 여건에 대한 인식에 의해, 청년과 고령자가 적절한 연금과 지원을 받도록 한다.
- ° 지역사회 내에서 모든 연령의 개인들은 동일한 기본권을 소유한다는 원리에 대한 인식과 수용을 촉진한다.
- ° 고령자들의 사회참여 특히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막는 장애물을 제거한다.
- ° 고령자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을 바꿈으로써 인구학적 변화에 대응한다.

호주 정부는 정년제를 폐지하여 연방정부 사법공무원과 공공기관의 근로자의 경우 65세에 퇴직하도록한 정년 의무 규정을 폐지하였다. 또한 1996년 직장관련법(Workplace Relations Act)를 제정하여 근로자가 고용주와 상의하여 퇴직의 방법과 시기를 단계적으로 계획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뿐만 아니라 본 법을 통해 직업 성격상 특정 이상의 연령에 근로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운 직종을 제외하고 고용주가 연령을 근거로 근로자의 퇴직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였다(유성호, 2005).

■ 아일랜드

아일랜드는 유럽연합국가 중 연령, 장애 등 아홉 가지 차별사유에 기한 고용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이고 방대한 내용(총105개조)을 담고 있는 고용평등법(Employment Equality Act)을 1998년에 제정하여 1999년 10월부터 선구적이고 모범적으로 시행하는 나라이다. 고용에 있어서의 연령차별 금지는 18세 이상(단, 직업훈련의 경우는 15세) 65세 미만의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되는데 노동력을 구성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연령대에 속하기 때문에 합리적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사용자에 의한 차별금지로서 채용, 근로조건, 고용관련 훈련내지 경험, 승진 또는 직급부여(promotion or re-grading), 직제분류(classification of posts)와 관련하여 사용자는 근로자 혹은 채용지원자를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들 수 있다(조용만, 2004). 예를 들면 구인광고에서 '젊고 역동적인(young and dynamic)' 같은 표현도 중년 혹은 노년 구직자를 배제하는 의도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연령차별이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

고용평등법의 행정적 시행을 담당하는 평등위원회(Equality Authority)와 준사법적 집행을 담당하는 평등심사국(Office of the Director of Equality Investigations)이 차별구제의 역할을 담당한다(조용만, 2004). 특히 평등심사국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구

제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나 영국의 차별구제기관과는 차별화된다(조용만, 2004).

2. 노인학대 관련 제도 및 프로그램

(1) 지역사회 내 노인학대 관련 제도 및 프로그램

■ 미국

○ Older Americans Act

미국은 1987년, 1991년 미국 노인법(Older Americans Act) 개정을 통해 노인학대의 예방 및 대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된 노인법은 강제성은 없으나 노인학대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를 제공하고 예방, 교육, 서비스제공 등 구체적인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예산지원조항을 포함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 준다 하겠다(우국희, 2001). 노인학대 예방 및 대처에 관한 구체적 활동으로 실태조사, 연구, 대중교육, 정보관리, 전문가 훈련 등을 시행하고 있다. 노인학대 관련 서비스로 정신건강 사정, 상담, 법률적 지원, 가정 폭력 프로그램, 학대 발굴 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노인학대 예방 및 대처에 관한 활동 내용과 제공 서비스는 주에 따라 다양하다.

○ Adult Protective Services Law

성인보호서비스법(Adult Protective Services Law) 또한 학대 의심 사례에 대한 의무 신고와 실태 조사 그리고 노인 학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서비스 예비 체계에 관한 규칙을 규정하고 있다(이연호, 2001). 그러나 학대 피해 노인의 보호 서비스 수혜를 위한 자격 조건, 학대의 정의, 학대의 유형, 형사 또는 민사의 적용, 조사 의무와 절차 등은 각 주마다 상이하다. 성인보호서비스법의 두드러진 특징은

학대, 방임, 또는 착취를 조사하기 위한 전문가 스태프를 둔다는 점이다. 전문가는 학대 피해 노인의 기능과 욕구를 평가하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American Bar Association Commission on Law and Aging, 2005).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할 수 있는 기관으로는 주정부산하의 성인보호서비스기관(APS), 혹은 인간서비스 기관, 지방 정부의 성인보호서비스기관 및 사회서비스 기관, 지방경찰국, 등이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성인보호서비스기관은 신고된 노인학대케이스를 조사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치료와 보호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우국희, 2001).

○ National Elder Abuse Policy Agenda(2001)

2001년 미국에서는 다양한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80명의 전문가가 모여 범국가적 노인 학대 정책 아젠다를 수립했다. 노인 학대 해결을 위한 자원과 통일된 전략 개발의 중요성에 기반하여 다음의 건의문을 제시했다.

- 노인학대에 대한 대중교육을 위한 전략적 의사소통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 대중의 인식 증진, 연구 지원, 서비스 재원 마련, 주별 자원 조정을 위한 전국적 체계 구축에 관한 근거법으로 'National Elder Abuse Act' 제정
- 노인 학대에 대응하는 사법 체계 개선
- 노인 학대 교육과 훈련 교과의 개발과 적용을 위한 재원 마련
- 피해 노인을 위한 연령-적합 정신 건강 서비스의 접근성 제고
-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현재 그리고 잠정적 지출 조사
- 범죄로써의 학대에 대한 사법 체계의 인식 증진
- 노인 학대의 연구, 자료 수집을 개선하기 위한 혁신적 프로그램과 정책을 탐색하고 개발하기 위한 조직 구성
- 노인 학대의 예방, 개입, 그리고 서비스의 보다 나은 조정을 위해 정책을 검토하는

정부의 집행 부서에 개입

■ 일본

일본은 노인학대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별도의 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노인학대 예방과 대처에 관한 관련 법안으로 「고령자 학대 방지·개호자 지원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노인학대에 대한 조치는 노인복지법 제10조와 제11조의 노인학대 조치에 관한 조항을 근거로 이루어진다. 관련 조항에 따르면 노인학대에 대한 조치의 주체는 기초자치단체이며, 학대 대응 조치는 상담창구 설치, 긴급 대응 일시 보호, 개호 보험 방문 조사와 상담, 생활 관리 지도 사업, 관계자 연수, 관계 기관 네트워크화, 시민계몽, 대응 매뉴얼 작성 등이 대표적이다(Yamada, 1999).

■ 캐나다

캐나다에는 노인학대 예방 및 대처에 관한 독립된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노인학대 관련법으로 「성인보호법(Adult Protective Law)」이 있으며 성인보호법은 노인학대 의심 사례에 대한 신고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노인학대와 관련된 프로그램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과 노인의 긍정적 이미지 구축을 위한 홍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캐나다의 Newfoundland와 Labrador의 노인 자원 협회는 노인 학대에 대한 전략적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본 계획은 노인 학대 예방과 지원을 위한 전략으로 노인학대 인식증진과 교육, 노인 학대 법 제정, 지역사회 참여, 서비스 제공자의 훈련과 선별, 가족 수발자 지원, 그리고 노인 학대 연구를 제시했다(Seniors Resource Centre Association of Newfoundland and Labrador, 2004).

■ 호주

호주 역시 노인학대 예방과 대처에 대한 독립된 법을 갖고 있지 않다. 노인학대 예방과 대처를 위한 제도적 접근은 주정부에 의해 마련된다. 노인학대 피해자 발굴은 고령자 케어 평가팀(The Aged Care Assessment Team)의 활동과 노인건강 평가 활동에 의존한다. 의사, 경찰관, 회계사 등의 전문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프로그램이 실행된다(박수천, 2005).

■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학대 노인의 적절한 보호를 위해 노인보호 서비스(Elder Protective Services)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노인보호 서비스 제도는 피학대 노인 및 가족과의 접촉을 통한 학대 재발생 방지, 학대에 대한 주민의식 제고, 학대에 관한 전문 지식·기술의 보급, 공공과 민간 기관간의 협력 강화, 학대에 대한 정보 수집 등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폭력예방 행동 프로그램을 통해 학대 조기발견과 예방을 목적으로 의료·요양·수발 종사자를 대상으로 학대관련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 스페인

스페인에서는 가족 의사가 노인 학대 사례 발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의사는 학대가 의심되는 사례를 경찰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스페인 사회 서비스 당국은 노인 지원에 관한 지역별 쟁점의 단일화와 통합을 위해 Plan Gerontologio를 발전시켰다. 학대 피해 노인이 필요한 원조를 받거나 적절한 시설에 의뢰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Hotline 서비스를 제공한다(Hurme, 2002).

■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에서 노인학대는 피해 노인의 법적 대리인, 사회 서비스 제공자, 공공 또는 민간 의료진에 의해 반드시 신고되어야 한다. 학대로 고통받는 당사자나 가족은 가정 법원 판사에게 구두 또는 서류상으로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노인학대에 관한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부에노스 아이레스 시에서 운영하는 Proteger(To Protect)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사회복지사, 심리학자, 의사, 변호사가 팀을 이루어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노인 학대 사례에 개입하거나 가정폭력 예방을 통해 학대 피해 노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다. 또한 동 프로그램은 학대 피해 노인을 위한 전화지원 서비스, 주간보호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Hurme, 2002).

■ 인도

인도에서는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 증진에 힘입어 두 개의 지역사회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하나는 젊은 자원 봉사자들이 범죄의 대상이 되기 쉬운 독거 또는 취약 노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이웃 관찰 프로그램(Neighborhood Watch Program)이다. 다른 하나는 봄베이에서 진행되는 Nana-Nani(조부모) Park Program으로 이는 노인들에게 사회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자 한다(Hurme, 2002).

(2) 시설 내 노인학대 관련 제도 및 프로그램

■ 미국

○ Long Term Care Ombudsman Program

장기보호 옴부즈맨 프로그램은 1972년 학대를 비롯한 노인보호시설의 서비스의 질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 보건 서비스 시범 프로젝트로부터 출발하였다. 1978년 미국 노인법(Older Americans Act) 개정을 통해 각 주마다 구체적인 장기 요

양 보호 옴부즈맨 프로그램을 계획하도록 의무화되었다. 미 노인청(Administration on Aging) 관할 하에 주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므로 조직구조나 접근, 직원구성, 신고 체계 등이 다양하나 옴부즈맨이 정기적으로 시설을 방문함으로써 노인학대의 사전 예방효과를 갖는다(우국희, 2001). 장기 요양 보호 옴부즈맨 프로그램의 임무는 미국 노인법의 Title VII에 명시되어 있으며 다음의 조항을 포함한다(Estes, Zulman, Goldberg, Ogawa, 2004).

- ° 입소자를 대리하여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한다.
- ° 입소자, 정책결정자, 그리고 대중의 욕구를 대표한다.
- ° 입소자를 대리하여 법과 체제의 변화를 추구하거나 옹호한다.
- ° 장기 요양 보호 서비스에 대한 교육적 자료와 정보를 제공한다.
- ° 장기 요양 보호 시설에 있는 입소 노인의 보건, 안전, 복지, 그리고 인권보호를 옹호한다.

2004년 현재 District of Columbia, Puerto Rico, 그리고 50개 주에서 옴부즈맨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1999년에는 587개의 지방 그리고 지역적 옴부즈맨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대부분의 주에서 옴부즈맨 프로그램은 유급 직원외에 자원봉사자에 의해 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다수의 프로그램은 주정부 기관의 하부 기관이거나 또는 독립기관인 주 정부 단위의 노인부서 내에서 작동된다. 일부 옴부즈맨 프로그램은 주 정부의 다른 부서, 비영리 기관, 또는 법적 서비스 기관에 의해 운영된다. 모든 장기 요양 보호 옴부즈맨 프로그램은 연방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으며 주 정부와 지방정부로부터 추가적인 재정적 지원을 받는다. 1999년 옴부즈맨 프로그램의 재정규모는 약 \$ 51밀리언에 달했다. 재정의 약 61.3%가 연방정부, 26.4%가 주 정부, 그리고 12.3%가 지방 정부로부터 출현되었다.

○ Institutional Abuse Law

시설학대 법(Institutional Abuse Law) 역시 시설 거주 노인의 학대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일부 주에서는 지역사회 노인과 시설 노인의 학대 모두를 성인 보호 서비스 법에 근거해 규제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주에서는 성인 보호 서비스 법에 의해 지역사회 노인의 학대를, 시설 학대 법에 의해 시설 노인의 학대를 조사하고 관리한다(American Bar Association Commission on Law and Aging, 2005).

3. 노인 의사결정권 침해 관련 제도 및 프로그램

노인은 노화로 인한 인지능력의 감소로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불가능한 존재로 조명된다. 이와 같은 차별적 시각에 의해 노인은 자신의 신변 보호나 재산권에 관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기 쉽다. 인지 능력에 제한이 있는 개인이 의사 결정 과정으로부터 소외되는 것을 막고 대리인을 통해 이들이 자신의 의사 결정권을 적절히 행사하도록 돕고자 생겨난 제도가 성년 후견인 제도이다. 성년 후견인 제도는 인지 능력에 제한이 있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제도이나 노인의 의사 결정권 보호에도 핵심적인 제도이므로 노인의 의사 결정권 보호를 각국의 성년 후견인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미국은 후견인 보호법에 근거하여 노인이 후견인을 세우고, 후견인이 노인을 대변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은 1985년 제정된 지속적 대리권법과 2004년 제정된 케어 기준법에 근거하여 노인 후견인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독일은 1992년 제정된 성년자 수발법에 의해 후견수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노인의 신청이나 수발 재판소의 직권에 의해 노인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노인 보호 서비스 내에 Green Telephone으로 명명된 전화상담 프로그램을 두어 노인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욕구를 지원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1983년 대변인법에 의한 민법 개정을 통해 성년 후견인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일본 또한 2000년 민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 성년 후견인 제도를 도입하였다. 노인 본인, 4촌 이내 친족,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후견인이 필요에 의해 노인 후견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후견인은 동의권, 취소권,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박수천, 2005).

<표 2-2> 국가별 노인학대 예방 체계 및 프로그램

국가	법적·지도적 지원체계	대처조직 및 기구	프로그램 및 서비스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법 • 노인복지법 • 성인보호 서비스법 • 시설학대법 • 장기음브즈맨 프로그램 • 형법 • 가정폭력방지법 • 후견인보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국 • 국립노인학대센터 • 전국노인학대 예방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보호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건강사정 서비스 - 상담 - 법적지원 - 원조서비스 - 가정폭력프로그램 - 가해자프로그램 - 비자발적 서비스 • 장기 음브즈맨 프로그램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법 • 권리장전 / 자유법 • 형법 • 성인보호 관련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ational Clearinghouse on Family Violence • The National Advisory Council on Aging • 노인학대예방기구 (Elder Abuse Preven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대변센터 • 지역보호접근센터 • 가족서비스 • 지역경찰 • 공공권리인 옹호사무소 • 장기요양보호소 • Echo / Elder Angel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법 • 노인복지법 • 개호보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학대예방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권리옹호센터 • 재산상담기관 • 노인학대예방센터의 서포트라인 • 원조라인 • 노인 성추행 방지 프로그램 • I & I Net • 생명의 전화
영국 (U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서비스 및 공공보건법 • 지역사회보호법 • 시설등록법 • 정신보건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ction on Elder Abu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ction on Elder Abuse • Aged Concern England • 보호자 국제연합 • Counsel and care • Help The aged • Help Line

제3장 조사결과

제1절 노인차별 실태 조사결과

1. 조사개요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시 및 수도권을 비롯하여 강원권, 충청권으로 각 권역별 도시지역 및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비노인층 및 노인층이다. 도시지역은 서울, 춘천, 대전 등에서 각각 비노인층 100명, 노인층 100명 등 총 6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농촌지역은 이천, 홍천 등에서 각각 비노인층 50명과 노인층 50명 등 총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배포된 총 설문지 900부 중 설문이 부실한 24부를 제외하고 총 876부에서 10대와 50대 대상자를 보완하여 최종 1,069부 (노인 495명, 일반인 574명)가 최종 분석에 활용되었다. 설문조사에 있어서 비노인층은 자기기입식 (self-administered)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나 노인층의 경우 일대일 면담 형태로 이루어졌다.

2) 조사도구의 구성과 내용

설문지는 선행연구 및 탐색조사 그리고 자문회의를 통해 검토되었고, 사전조사 (pre-test)를 통해 보완사항을 수정하여 최종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주요 설문 내용으

로는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10문항(성별, 교육정도, 결혼상태, 건강상태 등), 노인차별 경험 및 인지 20문항(개인적 차별 경험 및 인지 13문항, 제도적/규범적 차별 인지 7문항), 노인차별에 대한 의견 3문항(노인차별 존재유무, 노인차별의 원인, 노인차별의 해결방안에 관한 의견)으로 구성하였으며, 노인용과 일반인용 2가지로 분류하였다.

노인차별의 내용과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기존의 노인에 대한 태도 및 이의 관련 선행연구(김윤정·정선아, 2001; 김옥, 2002b; 김혜경, 1997; 박경란·이영숙, 2001; 서병숙·김수현, 1999; 이선자, 1989; 이시형외, 1999; 한정란, 2000; Hawkins, 1996; MacNeil et al., 1996; Palmore, 2001)에서 나타나는 내용 및 노인차별과 관련하여 사람들의 개인적 의견 및 경험을 참고하여 본 연구자들이 작성하였다.

노인차별은 크게 개인적 차별 경험과 인지 그리고 제도적/규범적 차별 인지 정도에 대한 것으로 구성하였다. 개인적 노인차별은 차별행위를 어느 정도 경험하였는지(또는 하였는지, 차별 경험도), 이러한 행위들을 노인차별로 어느 정도 인정하는지(차별 인지도)를 통하여 측정하였다. 노인차별 피해 내지 가해경험의 문항들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간관계 및 사회적 상황에서의 내용으로 언어적 차별, 신체적 차별, 성적 차별, 정서적 차별, 사회관계상 차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언어적 차별이란 언어적으로 노인을 무시하거나 심한 표현을 하는 것, 비하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신체적 차별이란 노인의 신체적 특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하거나 이를 약점으로 삼아 노인에게 부정적으로 대하거나 행동하는 것으로 노인의 외모에 대해 거부감을 표현하거나 싫어하는 느낌을 나타내는 것, 노인이기 때문에 잘 보지도, 잘 듣지도 못한다는 식의 대우를 하는 것을 말한다. 셋째, 성적 차별이란 노인의 이성 및 성에 대한 관심을 무시하거나 비하하는 것을 말한다. 즉 노인이 이성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 눈치를 주거나 노인이 성에 대해 관심을 갖거나 이야기를 하는 것에 무안을 주는 것 등을 의미한다. 넷째, 정서적 차별이란 노인의 특성이나 욕구를 이해

하지 못하고 정서적 측면에서 노인을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즉 노인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못미더워하거나, 노인이 궁금해 하는 것을 모른 척하거나, '몰라도 된다'며 대답해 주지 않은 것 등을 의미한다. 다섯째, 사회관계상 차별은 노인의 제반 측면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여 사회적 관계 측면에서 노인을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즉 노인이 제대로 하지 못할 것으로 여겨 부탁 내지 요청을 하지 않거나 노인이 카페, 다방, 식당 등에 들어오면 무관심하거나 불편해 하는 것 등을 말한다. 이의 문항은 예비조사 및 전문가 의견을 참고하여 노인차별 피해 내지 가해경험을 나타내는 총 1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제도적/규범적 노인차별은 노인층과 비노인층 모두 사회 전반적으로 각각의 영역이 어느 정도인지를 질문하여 측정하였다. 총 7문항으로 경제활동 배제(예: 노인이 할 수 있는 마땅한 일자리 찾기가 어렵다), 부당한 대우(예: 노인은 능력에 관계없이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 매스미디어 배제(예: 대중매체에서 노인을 위한 배려가 적다), 생활편의 부족(예: 일상에서 노인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생활용품이 적다), 문화향유권 배제(예: 노인이 즐길만한 문화, 여가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적다), 정보 격차(예: 노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거나, 이해하기 어렵다), 규범적 차별(예: 노인이 되어 이혼 또는 재혼을 하는 것보다 그냥 참거나, 혼자 사는게 떳떳하다)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이들 각 문항들은 경험 빈도 및 인지 정도로 구분하여 작성되었으며, 4점 Likert 척도(경험빈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가끔 그렇다, ③ 자주 그렇다, ④ 항상 그렇다/ 인지 정도: ① 차별이 아니다, ② 약한 차별이다, ③ 중간 차별이다, ④ 심한 차별이다)로 측정되었다.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차별 경험 빈도 및 차별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정리와 분석은 SPSS 10.0 for Windows를 사용했으며, 서술적 분석 방법으로는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을 구하였다. 또한, 지역별, 세대별 노인 차별 비교를 하기 위해 t-test를 하였다. 한편, 심도있는 조사분석을 위해 중요도-실행도 분석(Important Performance Analysis: IPA)을 실시하였다. IPA 방법은 두 개의 분석 차원을 각각 X축과 Y축에 위치시키고 각 요소들을 중요도에 따라 그래프 상에 위치시킴으로써 각 요소들의 위치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결과 나온 각 세대의 노인차별 유형들을 차별경험도, 차별인지도 등에 따라 노인층과 비노인층을 축으로 해서 그래프 상에 위치시킴으로써 각 유형별로 두 세대간의 인식차이를 살펴보고 노인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방안을 유형별로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조사결과 분석

1) 노인대상 노인차별 결과

(1)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 노인들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3-1> 참고).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두 배 정도 많은 63.2%이고, 연령별로는 70대가 약 47%로서 가장 많은 연령대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60대 초반이 14.3%, 60대 후반이 24.0%로 한국 사회의 노인연령비율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32.9%), 무학(27.1%)의 순으로 비교적 교육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결혼상태로는 현재 배우자가 있는 비율이 54.2%로써 배우자가 없는 비율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건강상태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40.4%)을 나타내고 있고, 나쁜 편이라고 응답

한 노인들도 전체 응답자의 30.4%를 보이고 있다. 경제상태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63.6%), 그 다음으로는 어려운 편(20.6%)으로 전반적으로 경제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표 3-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노인층

변수	N(%)	변수	N(%)
성별	남성 182(36.8)	경제상황	매우 어려운 편 18(3.6)
	여성 313(63.2)		어려운 편 102(20.6)
연령	60-64세 71(14.3)		보통인 편 315(63.6)
	65-69세 119(24.0)		좋은 편 55(11.1)
	70-74세 124(25.1)		매우 좋은 편 5(1.0)
	75-79세 108(21.8)	경제활동유무	한다 93(19.1)
	80세 이상 73(14.7)		안한다 394(80.9)
교육정도	무학 133(27.1)	사회활동참여	전혀 참여 안한다 171(35.0)
	초등졸 161(32.9)		별로 참여 안한다 108(22.1)
	중졸/중퇴 69(14.1)		보통이다 86(17.6)
	고졸/중퇴 65(13.3)		참여한다 97(19.8)
	전문대졸/중퇴 10(2.0)		적극 참여한다 27(5.5)
	대졸/중퇴 41(8.4)	종교	없다 134(27.5)
	대학원 이상 11(2.2)		개신교 141(29.0)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274(55.7)		천주교 80(16.4)
	미혼 6(1.2)		불교 123(25.3)
	사별 206(41.9)	기타 9(1.8)	
	이혼 6(1.2)	거주형태	혼자 산다 119(24.1)
건강상태	매우 나쁜 편 28(5.7)		부부만 산다 186(37.7)
	나쁜 편 150(30.4)		아들가족과 동거 141(28.5)
	보통인 편 199(40.4)		딸가족과 동거 12(2.4)
	좋은 편 91(18.5)		미혼자녀와 동거 25(5.1)
	매우 좋은 편 25(5.1)		손자녀와 동거 5(1.0)
			기타 6(1.2)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19.1%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활동에 대한 참여는 '전혀 하지 않는다'(35.0%), '별로 참여하지 않는다'(22.1%)로

60% 가까운 응답 노인들이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노인의 27.5%가 종교가 없으며, 개신교(29.0%)와 불교(25.3%)가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거주형태로는 부부만 사는 경우가 37.7%, 혼자 사는 경우가 24.1%로 60% 이상이 성인자녀 혹은 손자녀들과 같이 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노인차별 유형별 경험 및 인지

조사대상 노인들에게 '노인차별'이라는 의미를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71.1% (345명)의 노인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노인차별이라는 개념이 비교적 생소한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고령사회를 맞이하면서 한국사회에서도 노인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이와 더불어 노인차별이라는 개념이 사회적 차원에서 여론화되어 가는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설문과정에서 응답노인들의 자의적인 응답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설문을 하는 과정에서 조사원은 노인들에게 노인차별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도록 하였으며, 이후에 다음과 같이 노인차별의 유형별로 경험의 유무 및 빈도, 그리고 인식의 정도를 설문한 결과는 <표 3-2>와 같다.

우선 노인차별에 대한 경험을 살펴보면, 거의 60%의 노인들은 도표에서 제시된 노인차별의 상황을 경험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그 중에서도 '성에 대한 관심이나 이야기로 인해 무안을 당한 경험'은 83.2%의 노인들이 경험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아플 때 주변사람들로부터 대수롭지 않다'는 인상을 받아 본 적이 없는 경우는 48.1%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노인차별의 경험을 조사하는데 있어서, 해석상 주의해야 할 점은 그러한 반응에 대한 반대급부가 제공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몸이 아픈 경우는 노인들에게는 매우 일반적인 현상이고, 이에 대한 주변사람들의 반응을 경험할 빈도도 높지만, 노인들이 성(性)에 대해서

관심을 드러내거나 공공연하게 이야기 하는 경우는 다른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수치대로 노인의 성에 대해서 주변사람들이 관대하기 때문에 노인차별적인 경험을 하지 않았다고 해석되기에는 무리가 있다.

노인차별의 각 항목별로 노인차별로 인지하는가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항목에서 노인차별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몇 개의 항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항목에서 '전혀 노인차별이 아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0%에서 30%로 나타났다. 이는 70-80%의 노인들이 각 항목들에 대해 경중의 차이는 있으나 노인차별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성(性) 혹은 이성(異性)에 관련된 항목에 대해서는 노인들도 노인차별이 아니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노인 스스로가 성(性) 혹은 이성(異性)에 관한 것이 부담스러운 주제이고, 주변사람들의 반응에 민감한 사안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표 3-2> 노인차별 경험 및 인지도: 노인층

내 용		경험빈도 N(%)	인지정도 N(%)
1) 노인이라는 이유로 나를 무시하는 말이나 심한 표현을 들은 적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302(61.0)	105(22.1)
	가끔 그렇다	167(33.7)	167(35.2)
	자주 그렇다	19(3.8)	124(26.1)
	항상 그렇다	7(1.4)	79(16.6)
2) 노인을 비하하는 단어를 들은 적이 있다 (예: 노친네, 할망구...)	전혀 그렇지 않다	300(61.3)	139(29.1)
	가끔 그렇다	156(31.9)	149(31.2)
	자주 그렇다	28(5.7)	139(29.1)
	항상 그렇다	5(1.0)	51(10.7)
3) 나이는 외모에 대해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거나 싫어하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300(60.7)	137(28.8)
	가끔 그렇다	148(30.0)	175(36.8)
	자주 그렇다	38(7.7)	122(25.6)
	항상 그렇다	8(1.6)	42(8.8)
4) 내가 노인이기 때문에, 잘 보지도, 잘 듣지도 못한다는 식의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295(59.7)	144(30.3)
	가끔 그렇다	155(31.4)	166(34.9)
	자주 그렇다	37(7.5)	114(23.9)
	항상 그렇다	7(1.4)	52(10.9)

노인에 대한 사회차별 실태조사 보고서

5) 아플 때 의사나 주변 사람이 노환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적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237(48.1)	174(36.6)
	가끔 그렇다	191(38.7)	158(33.3)
	자주 그렇다	49(9.9)	101(21.3)
	항상 그렇다	16(3.2)	42(8.8)
6)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이성(異性)에 대해 관심이 없는 척 한 적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350(71.0)	266(55.9)
	가끔 그렇다	112(22.7)	124(26.1)
	자주 그렇다	24(4.9)	64(13.4)
	항상 그렇다	7(1.4)	22(4.6)
7) 성(性)에 대해 관심을 갖거나 이야기를 했다가 무안을 당한 적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411(83.2)	268(56.5)
	가끔 그렇다	71(14.4)	118(24.9)
	자주 그렇다	8(1.6)	69(14.6)
	항상 그렇다	4(0.8)	19(4.0)
8) 노인이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이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을 못미더워한 적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313(63.2)	123(25.9)
	가끔 그렇다	144(29.1)	170(35.8)
	자주 그렇다	34(6.9)	128(26.9)
	항상 그렇다	4(0.8)	54(11.4)
9) 노인이라는 이유로 내가 궁금해 하는 것을 모른 척하거나, '몰라도 된다'며 대답해 주지 않은 적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284(57.5)	128(26.9)
	가끔 그렇다	160(32.4)	169(35.6)
	자주 그렇다	41(8.3)	123(25.9)
	항상 그렇다	9(1.8)	55(11.6)
10)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노인이라 제대로 하지 못할 것으로 여겨져 부탁내지 요청받지 못한 적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263(53.1)	131(27.5)
	가끔 그렇다	167(33.7)	167(35.1)
	자주 그렇다	51(10.3)	103(21.6)
	항상 그렇다	14(2.8)	75(15.8)
11) 노인이라는 이유로 의사결정과정에서 내 의견이 무시당하거나 배제된 적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308(62.7)	127(26.7)
	가끔 그렇다	137(27.9)	149(31.4)
	자주 그렇다	36(7.3)	122(25.7)
	항상 그렇다	10(2.0)	77(16.2)
12) 노인이라는 이유로 내가 다방, 식당 등에 들어가면 주인이나 손님이 무관심하거나 불편해 한 적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362(73.4)	139(29.2)
	가끔 그렇다	97(19.7)	127(26.7)
	자주 그렇다	26(5.3)	140(29.4)
	항상 그렇다	8(1.6)	70(14.7)
13) 나이에 맞게 행동하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373(75.4)	198(41.6)
	가끔 그렇다	98(19.8)	130(27.3)
	자주 그렇다	19(3.8)	102(21.4)
	항상 그렇다	5(1.0)	46(9.7)

노인차별에 대한 경험빈도와 인지정도를 평균값으로 환산하여 각 항목별로 살펴본다 (<표 3-3> 참고). 경험빈도를 보면, 성(性) 혹은 이성(異性)에 관련된 항목들의

평균값은 각각 1.20, 1.36으로 가장 낮은 반면에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인 항목은 '아플 때 주변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적이 있다'(평균=1.68)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탁이나 요청을 받지 못했다'(평균=1.62)로 나타났다.

<표 3-3> 노인차별 경험 및 인지도(평균점수): 노인층

내 용	경험빈도 M(±SD)	인지정도 M(±SD)
1) 노인이라는 이유로 나를 무시하는 말이나 심한 표현을 들은 적이 있다	1.45(±0.64)	2.37(±1.00)
2) 노인을 비하하는 단어를 들은 적이 있다 (예: 노친네, 할망구...)	1.46(±0.65)	2.21(±0.98)
3) 나이든 외모에 대해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거나 싫어하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	1.50(±0.70)	2.14(±0.93)
4) 내가 노인이기 때문에, 잘 보지도, 잘 듣지도 못한다는 식의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1.50(±0.69)	2.15(±0.97)
5) 아플 때 의사나 주변 사람이 노환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적이 있다	1.68(±0.78)	2.02(±0.96)
6)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이성(異性)에 대해 관심이 없는 척 한 적이 있다	1.36(±0.64)	1.66(±0.87)
7) 성(性)에 대해 관심을 갖거나 이야기를 했다가 무안을 당한 적이 있다	1.20(±0.49)	1.66(±0.87)
8) 노인이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이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을 못미더워한 적이 있다	1.45(±0.65)	2.23(±0.96)
9) 노인이라는 이유로 내가 궁금해 하는 것을 모른 척하거나, '몰라도 된다'며 대답해 주지 않은 적이 있다	1.54(±0.72)	2.22(±0.97)
10)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노인이라 제대로 하지 못할 것으로 여겨져 부탁내지 요청받지 못한 적이 있다	1.62(±0.78)	2.25(±1.02)
11) 노인이라는 이유로 의사결정과정에서 내 의견이 무시당하거나 배제된 적이 있다	1.48(±0.72)	2.31(±1.03)
12) 노인이라는 이유로 내가 다방, 식당 등에 들어가면 주인이나 손님이 무관심하거나 불편해 한 적이 있다	1.35(±0.65)	2.29(±1.04)
13) 나이에 맞게 행동하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1.30(±0.59)	1.99(±1.00)

한편, 인지정도에서는 '노인이라는 이유로 무시하는 말이나 심한 표현을 듣게 되는

상황'을 상대적으로 가장 심한 노인차별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반면에 '성(性) 혹은 이성(異性)에 관련된 주변 반응'들에 대해서는 노인차별로 인식하는 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3) 제도적/규범적 노인차별에 대한 견해

제도적인 차원에서 노인차별에 대한 노인들의 생각을 살펴보면,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는 상황(평균=3.09)을 가장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일상 생활에서의 생활용품 사용하는데 있어서의 불편함(평균=2.55)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포용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노인문화의 부족(평균=2.82)하다는 의견이 강했으며, 노후에 재혼이나 이혼보다는 혼자 살거나, 참고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높게 나타났다.

<표 3-4> 제도적/규범적 노인차별에 대한 생각: 노인층

내 용	M(±SD)
1) 노인이 할 수 있는 마땅한 일자리 찾기가 어렵다	3.09(±0.72)
2) 노인은 능력에 상관없이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	2.71(±0.76)
3) 대중매체에서 노인을 위한 배려가 적다(예: 무시하고 소외되는 모습이 빈번하다, 노인등장 인물이 적게 나온다 등)	2.72(±0.79)
4) 일상에서 노인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생활용품(예: 전자제품, 핸드폰 등)이 적다	2.55(±0.82)
5) 노인이 즐길만한 문화, 여가시설이나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2.82(±0.82)
6) 노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거나, 이해하기 어렵다	2.79(±0.77)
7) 노인이 되어 이혼 또는 재혼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참거나, 혼자 사는 게 떳떳하다	2.83(±0.87)

(4) 노인차별상황에 대한 대처방안

언어적, 신체적 폭력 유형의 노인차별뿐 아니라, 태도적인 측면과 경제적 및 제도적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인차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겠는지에 대해 중복응답으로 설문한 결과는 <표 3-5>와 같다.

언어적으로나 태도적인 측면에서의 노인차별의 경우 ‘그냥 참는다’가 50%를 넘어서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당사자에게 직접 말한다’가 30%를 상회하고 있다. 반면에, 경제적인 측면이나 신체적 폭력에 대해서는 그냥 참기보다는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처방안으로 당사자에게 말하거나, 국가관련 기관에 신고하겠다는 비율이 높았다. 한편,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 그냥 참는다가 52.5%로 높게 나타났으며, ‘관련기관에서 상담’과 같은 적극적인 대처방안에는 18.9%만이 응답하였다.

<표 3-5> 노인차별 상황 대처 방안: 노인층

내 용	그냥 참는다 N(%)	당사자에게 직접 말한다 N(%)	가까운 사람에게 하소연 한다 N(%)	관련기관 에 가서 상담한다 N(%)	국가관련 기관에 신고한다 N(%)	기타 N(%)	Total N(%)
1) 노인이라는 이유로 무시하는 말이나 우롱하는 농담, 폭언을 듣는다	233(48.9)	175(36.8)	40(8.4)	7(1.5)	5(1.1)	16(3.4)	476(100)
2) 노인이기 때문에, 잘 보지도, 잘 듣지도 못한다는 식의 대우를 받는다	254(53.6)	152(32.1)	36(7.6)	6(1.3)	4(0.8)	22(4.6)	474(100)
3) 본인이나 다른 노인이 할 수 있는 마땅한 일자리 찾기가 어렵다	248(52.5)	32(6.8)	62(13.1)	89(18.9)	10(2.1)	31(6.6)	472(100)
4) 다른 사람이 노인의 소유물(예: 물건, 돈, 가재도구 등)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가로챈다	82(17.3)	179(37.8)	54(11.4)	21(4.4)	109(23.0)	28(5.9)	473(100)
5) 가족이나 친척이 노인을 때린다	93(19.8)	115(24.5)	37(7.9)	31(6.6)	164(34.9)	30(6.4)	470(100)

(5) 노인차별에 대한 원인과 해결방안

한국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차별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응답노인들에게 설문한 결과, '있는 편이다'라고 응답한 노인들이 52.3%이며, '매우 있다'는 17.9%로, 전체 노인의 70%이상이 한국사회에 노인차별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3-6> 노인차별에 대한 의견: 노인층

내 용		N(%)
	전혀 없다	10(2.0)
우리사회의	없는 편이다	92(18.7)
노인차별에	있는 편이다	257(52.3)
대한 정도	매우 있다	88(17.9)
	잘 모르겠다	44(9.0)

한국사회에서 노인차별이 일어나는 이유로 '노인의 낮은 사회적 지위'(38.4%), '노인에 대한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28.7%), '노인복지의 미비'(23.2%) 등으로 응답하였다. 노인차별을 없애기 위한 노력으로는 '일자리 마련, 노후소득 지원' (45.7%)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노인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개선'(31.1%), 그리고 '허약노인들의 위한 지원서비스'(26.6%)로 응답하였다. 전반적으로, 노인들은 노인차별의 원인과 해결방안으로 노인복지 서비스와 인식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표 3-7> 노인차별이 일어나는 이유와 해결방안: 노인층

내 용	N(%)	
차별이 일어나는 이유	노인들 자신의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	78(15.9)
	노인의 낮은 사회적 지위(역할상실 등)	189(38.4)
	노인에 대한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	141(28.7)
	노인복지의 미비	114(23.2)
	세대간 단절	90(18.3)
	노인에 관한 정보나 지식의 부족	67(13.6)
	대중매체의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28(5.7)
	기타	32(6.5)
	노인차별을 없애기 위한 노력	일자리 마련, 노후소득지원
허약 노인을 위한 지원서비스		131(26.6)
노인에 대한 사회적 역할 부여		116(23.6)
노인을 변화시키기 위한 교육		108(22.0)
노인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		153(31.1)
경로효친 사상의 확대		112(22.8)
기타		21(4.3)

2) 비노인층 대상 노인차별 결과

(1) 일반적 특성

비노인층 조사대상자의 경우, 남녀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20대가 30.2%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40대(18.2%), 30대(18.0%)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 상태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47.7%이며, 대부분의 응답자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차별과 관련하여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지는 노인과의 동거여부에 있어서는 현재 같이 살고 있는 경우가 16.9%, 같이 산 경험이 없는 경우가 38.0%로 높게 나타났다.

<표 3-8>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비노인층

변수	N(%)	변수	N(%)
성별	남성 298(51.9)	건강상태	매우 나쁜 편 6(1.0)
	여성 276(48.1)		나쁜 편 19(3.3)
연령	10대 91(15.8)		보통인 편 249(43.3)
	20대 174(30.2)		좋은 편 230(40.0)
	30대 104(18.0)		매우 좋은 편 71(12.3)
	40대 105(18.2)	경제상황	매우 어려운 편 6(1.0)
	50대 103(17.9)		어려운 편 65(11.3)
교육정도	무학 1(0.2)		보통인 편 405(70.3)
	초등졸 42(7.4)	좋은 편 85(14.8)	
	중졸/중퇴 62(10.9)	매우 좋은 편 15(2.6)	
	고졸/중퇴 167(29.3)	경제활동유무	한다 341(61.1)
	전문대졸/중퇴 54(9.5)		안한다 217(38.9)
	대졸/중퇴 193(33.9)	종교	없다 202(35.8)
	대학원 이상 50(8.8)		개신교 175(31.0)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275(47.7)		천주교 65(11.5)
	미혼 285(49.4)		불교 78(13.8)
	사별 12(2.1)		기타 44(7.8)
	이혼 3(0.5)	노인과의 동거	현재 같이 산다 96(16.9)
	기타 2(0.3)		현재 같이 살지 않지만 257(45.2)
	과거에 경험이 있다 216(38.0)		
		같이 산 경험이 없다	

(2) 노인차별 유형별 경험 및 인지

노인차별에 대한 경험을 살펴보면, ‘노인이 제대로 하지 못할 것 같아서 부탁이나 요청을 하지 않았다’에서 60% 이상이 그런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으며, 비슷한 비율로 ‘노인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못미더워 한 적이 있다’라는 항목을 지적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노인이 아플 때 노환이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적이 있다’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성(性)이나 이성(異性)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경험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에게 나이에 걸맞게 행동하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에 대해서도 이러한 경험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차별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모든 항목에 대해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노인차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조사대상자의 80% 정도는 제시된 모든 항목들이 ‘노인차별’로서 인식하고 있었다.

<표 3-9> 노인차별 경험 및 인지도: 비노인층

내 용		경험빈도 N(%)	인지정도 N(%)
1) 노인을 무시하는 말이나 심한 표현을 한 적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380(66.0)	135(24.5)
	가끔 그렇다	186(32.3)	176(31.9)
	자주 그렇다	10(1.7)	103(18.7)
	항상 그렇다	-	137(24.9)
2) 노인을 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한 적이 있다 (예: 노친네, 할망구...)	전혀 그렇지 않다	314(54.5)	161(29.4)
	가끔 그렇다	239(41.5)	165(30.1)
	자주 그렇다	23(4.0)	121(22.1)
	항상 그렇다	-	101(18.4)
3) 노인의 외모에 대해 거부감을 표현하거나 싫어하는 느낌을 나타낸 적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354(61.7)	149(27.3)
	가끔 그렇다	208(36.2)	157(28.8)
	자주 그렇다	10(1.7)	129(23.6)
	항상 그렇다	2(0.3)	111(20.3)
4) 노인이기 때문에, 잘 보지도, 잘 듣지도 못한다는 식의 대우를 한 적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327(56.7)	151(27.5)
	가끔 그렇다	225(39.0)	180(32.7)
	자주 그렇다	20(3.5)	128(23.3)
	항상 그렇다	5(0.9)	91(16.5)
5) 노인이 아플 때 노환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적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246(42.9)	145(26.3)
	가끔 그렇다	288(50.2)	201(36.4)
	자주 그렇다	36(6.3)	145(26.3)
	항상 그렇다	4(0.7)	61(11.1)
6) 노인이 이성(異性)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 눈치를 준적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464(80.8)	193(35.5)
	가끔 그렇다	97(16.9)	159(29.2)
	자주 그렇다	11(1.9)	122(22.4)
	항상 그렇다	2(0.3)	70(12.9)

7) 노인이 성(性)에 대해 관심을 갖거나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 무안을 준 적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500(87.0)	202(37.3)
	가끔 그렇다	68(11.8)	150(27.7)
	자주 그렇다	7(1.2)	114(21.0)
	항상 그렇다	-	76(14.0)
8) 노인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못미더워한 적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203(35.2)	142(25.8)
	가끔 그렇다	335(58.1)	213(38.7)
	자주 그렇다	37(6.4)	139(25.3)
	항상 그렇다	2(0.3)	56(10.2)
9) 노인이 궁금해 하는 것을 모른 척하거나, '몰라도 된다'며 대답해 주지 않은 적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309(53.6)	130(23.7)
	가끔 그렇다	240(41.6)	172(31.4)
	자주 그렇다	27(4.7)	145(26.5)
	항상 그렇다	1(0.2)	101(18.4)
10) 노인이 제대로 하지 못할 것으로 여겨져 부탁내지 요청을 하지 않은 적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221(38.4)	156(28.4)
	가끔 그렇다	283(49.2)	198(36.1)
	자주 그렇다	63(11.0)	140(25.5)
	항상 그렇다	8(1.4)	55(10.0)
11) 의사결정과정에서 노인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배제한 적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355(61.6)	152(27.8)
	가끔 그렇다	194(33.7)	145(26.6)
	자주 그렇다	27(4.7)	145(26.6)
	항상 그렇다	-	104(19.0)
12) 노인이 카페, 다방, 식당 등에 들어오면 무관심하거나 불편해 한 적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388(67.4)	159(29.2)
	가끔 그렇다	163(28.3)	158(29.0)
	자주 그렇다	21(3.6)	128(23.5)
	항상 그렇다	4(0.7)	100(18.3)
13) 노인에게 나이에 걸맞게 행동하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468(81.3)	192(35.2)
	가끔 그렇다	95(16.5)	116(21.3)
	자주 그렇다	11(1.9)	99(18.2)
	항상 그렇다	2(0.3)	138(25.3)

노인차별에 대한 경험빈도와 인식정도를 평균값으로 살펴보았을 경우, 경험빈도로 가장 높게 나타난 항목은 '노인에게 부탁이나 요청을 하지 않은 것'(평균=1.75)과 '노인을 못미더워하는 것'(평균=1.71), 그리고 '노인이 아플 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평균=1.64)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가장 낮은 평균값을 보이는 항목은 '노인이 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무안을 준 적이 있다'(평균=1.14), '노인이 이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에 눈치를 준 적이 있다'(평균=1.21)였으며, '노인에게 나이에 걸맞게 행동하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평균=1.21)라는 항목 역시 매우 낮은 평균값을 보임으로써 이리

한 경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표 3-10> 노인차별 경험 및 인지도(평균점수): 비노인층

내 용	경험빈도 M(±SD)	인지정도 M(±SD)
1) 노인을 무시하는 말이나 심한 표현을 한 적이 있다	1.35(±0.51)	2.43(±1.11)
2) 노인을 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한 적이 있다	1.49(±0.57)	2.29(±1.08)
3) 노인의 외모에 대해 거부감을 표현하거나 싫어하는 느낌을 나타낸 적이 있다	1.40(±0.54)	2.37(±1.08)
4) 노인이기 때문에, 잘 보지도, 잘 듣지도 못한다는 식의 대우를 한 적이 있다	1.48(±0.60)	2.28(±1.04)
5) 노인이 아플 때 노환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적이 있다	1.64(±0.62)	2.22(±0.95)
6) 노인이 이성(異性)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 눈치를 준 적이 있다	1.21(±0.47)	2.14(±1.12)
7) 노인이 성(性)에 대해 관심을 갖거나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 무안을 준 적이 있다	1.14(±0.38)	2.11(±1.06)
8) 노인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못미더워한 적이 있다	1.71(±0.59)	2.19(±0.93)
9) 노인이 궁금해 하는 것을 모른 척하거나, '몰라도 된다'며 대답해 주지 않은 적이 있다	1.51(±0.59)	2.39(±1.04)
10) 노인이 제대로 하지 못할 것으로 여겨져 부탁내지 요청을 하지 않은 적이 있다	1.75(±0.69)	2.17(±0.95)
11) 의사결정과정에서 노인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배제한 적이 있다	1.43(±0.58)	2.36(±1.08)
12) 노인이 카페, 다방, 식당 등에 들어오면 무관심하거나 불편해 한 적이 있다	1.37(±0.59)	2.31(±1.08)
13) 노인에게 나이에 걸맞게 행동하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1.21(±0.47)	2.33(±1.19)

한편, 인지정도에 있어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노인이 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무안을 준 적이 있다'(평균값=2.11), '노인이 이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에 눈치를 준 적이 있다'(평균값=2.14)라는 항목이 낮게 나타났다. 반면에, '노인을 무시

하거나 심한 표현을 하는 것'(평균값=2.43), '노인외모에 대해 거부감을 표현하는 것'(평균값=2.37)을 가장 높게 노인차별로 인식하고 있었다.

(3) 제도적/규범적 노인차별에 대한 견해

<표 3-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제도적 노인차별의 모든 항목에 대해 긍정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었지만, 노년기의 이혼이나 재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1> 제도적/규범적 노인차별에 대한 생각: 비노인층

내 용	M(±SD)
1) 노인이 할 수 있는 마땅한 일자리 찾기가 어렵다	3.14(±0.69)
2) 노인은 능력에 상관없이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	2.96(±0.67)
3) 대중매체에서 노인을 위한 배려가 적다(예: 무시하고 소외되는 모습이 빈번하다, 노인등장 인물이 적게 나온다 등)	2.92(±0.68)
4) 일상에서 노인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생활용품(예: 전자제품, 핸드폰 등)이 적다	2.90(±0.73)
5) 노인이 즐길만한 문화, 여가시설이나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3.08(±0.72)
6) 노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거나, 이해하기 어렵다	3.11(±0.67)
7) 노인이 되어 이혼 또는 재혼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참거나, 혼자 사는게 떳떳하다	2.03(±0.81)

(4) 노인차별에 대한 원인과 해결방안

비노인층의 조사대상자들은 한국사회에 노인차별에 대한 의견이 <표 3-12>에 제시되어 있다. 비노인층들의 59.1%가 노인차별이 '있는 편'이라고 응답했으며, '매우 있

다라고 응답한 대상자도 31.3%나 되었다.

<표 3-12> 노인차별에 대한 의견 및 이유와 해결방안: 비노인층

내 용		N(%)
우리사회의 노인차별에 대한 정도	전혀 없다	3(0.5)
	없는 편이다	34(5.9)
	있는 편이다	340(59.1)
	매우 있다	180(31.3)
	잘 모르겠다	18(3.1)
차별이 일어나는 이유	노인들 자신의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	105(18.3)
	노인의 낮은 사회적 지위(역할상실 등)	250(43.6)
	노인에 대한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	177(30.9)
	노인복지의 미비	176(30.7)
	세대간 단절	200(34.9)
	노인에 관한 정보나 지식의 부족	108(18.8)
	대중매체의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65(11.3)
	기타	22(3.8)
노인차별을 없애기 위한 노력	일자리 마련, 노후소득지원	312(54.4)
	허약 노인을 위한 지원서비스	95(16.6)
	노인에 대한 사회적 역할 부여	234(40.8)
	노인을 변화시키기 위한 교육	108(18.8)
	노인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	252(43.9)
	경로효친 사상의 확대	99(17.2)
	기타	8(1.4)

노인차별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노인의 낮은 사회적 지위’(43.6%)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세대간 단절’(34.9%), ‘노인에 대한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30.9%), 그리고 ‘노인복지의 미비’(30.7%) 등의 순으로 노인차별의 원인을 꼽고 있다. 노인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노후 일자리마련 및 소득지원’(54.4%), ‘노인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개선’(43.9%), ‘노인에 대한 사회적 역할부여’(40.8%)의 순으로 제시하고 있다.

3) 지역별 노인차별의 실태와 인식

본 연구는 노인을 대상으로 도시지역에서 352명(노인조사자의 71%), 농어촌지역에서 143명(29%), 비노인층을 대상으로 도시지역에서 432명(비노인층 조사자의 75%), 농어촌지역에서 145명(25%)을 설문조사하였다. 지금부터는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별로 비교하여 노인차별에 대한 경험, 인지, 그리고 제도적 노인차별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지역별 노인차별에 대한 경험 비교

노인을 대상으로 지역별 노인차별에 대한 경험을 비교한 결과가 <표 3-13>에 제시되어 있다. 노인의 성(性)과 이성(異性)문제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도시지역 노인보다 농어촌지역의 노인들이 노인차별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노인차별 실태가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역별 차이를 많이 보이는 노인차별 항목으로는 '나이에 맞게 행동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아플 때 주변사람들이 노환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의사결정에서 배제되었다', '다방이나 식당 등에서 주인이나 손님들의 무관심이나 부담감을 경험하였다' 등으로 나타났다.

<표 3-13> 지역별 노인차별에 대한 경험 비교: 노인층

내 용	도시 M(±SD)	농어촌 M(±SD)	t값
1) 노인이란 이유로 나를 무시하는 말이나 심한 표현을 들은 적이 있다	1.40(±0.61)	1.58(±0.67)	-2.75**
2) 노인을 비하하는 단어를 들은 적이 있다 (예: 노친네, 할망구...)	1.39(±0.60)	1.64(±0.71)	-3.88**
3) 나이든 외모에 대해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거나 싫어하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	1.41(±0.63)	1.71(±0.83)	-4.30**
4) 내가 노인이기 때문에, 잘 보지도, 잘 듣지도 못한다는 식의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1.42(±0.61)	1.71(±0.83)	-4.29**
5) 아플 때 의사나 주변 사람이 노환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적이 있다	1.56(±0.69)	1.97(±0.89)	-5.52**
6)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이성(異性)에 대해 관심이 없는 척 한 적이 있다	1.36(±0.63)	1.37(±0.66)	0.07
7) 성(性)에 대해 관심을 갖거나 이야기를 했다가 무안을 당한 적이 있다	1.21(±0.51)	1.17(±0.43)	0.69
8) 노인이란 이유로 다른 사람이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을 못미더워한 적이 있다	1.38(±0.62)	1.62(±0.71)	-3.85**
9) 노인이란 이유로 내가 궁금해 하는 것을 모른 척하거나, '몰라도 된다'며 대답해 주지 않은 적이 있다	1.49(±0.70)	1.65(±0.75)	-2.21*
10)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노인이라 제대로 하지 못할 것으로 여겨져 부탁내지 요청받지 못한 적이 있다	1.54(±0.71)	1.83(±0.89)	-3.88**
11) 노인이란 이유로 의사결정과정에서 내 의견이 무시당하거나 배제된 적이 있다	1.38(±0.63)	1.73(±0.85)	-5.01**
12) 노인이란 이유로 내가 다방, 식당 등에 들어가면 주인이나 손님이 무관심하거나 불편해 한 적이 있다	1.26(±0.53)	1.57(±0.84)	-4.92**
13) 나이에 맞게 행동하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1.19(±0.46)	1.57(±0.75)	-6.71**

노인차별에 대한 비노인층의 경험을 지역별로 비교한 결과가 <표 3-14>에 제시되었다. 재미있는 현상으로는 <표 3-13>에서는 노인의 입장에서 지역별로 노인차별의 경험이 매우 뚜렷하게 거의 모든 항목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노인차별의 주요 가해자일 수 있는 비노인층들에게는 지역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노인이기 때문에, 잘 보지도, 잘 듣지도 못한다는 식의 대우를 한 적이 있다'와

‘나이에 맞게 행동하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의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역별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노인들의 경험과 비교해 볼 때 그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다. 더구나, ‘노인이기 때문에, 잘 보지도, 잘 듣지도 못한다는 식의 대우를 한 적이 있다’의 경우에는 도시지역의 비노인층이 농어촌지역 보다 더 많이 경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4> 지역별 노인차별에 대한 경험 비교: 비노인층

내 용	도시 M(±SD)	농어촌 M(±SD)	t값
1) 노인이라는 이유로 무시하는 말이나 심한 표현을 한 적이 있다	1.33(±0.49)	1.42(±0.56)	-1.89
2) 노인을 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한 적이 있다 (예: 노친네, 할망구...)	1.48(±0.56)	1.53(±0.60)	-0.87
3) 나이든 외모에 대해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거나 싫어하는 느낌을 나타낸 적이 있다	1.43(±0.54)	1.32(±0.55)	2.07*
4) 노인이기 때문에, 잘 보지도, 잘 듣지도 못한다는 식의 대우를 한 적이 있다	1.51(±0.62)	1.39(±0.56)	2.11*
5) 노인이 아플 때 노환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적이 있다	1.63(±0.60)	1.69(±0.70)	-0.97
6) 노인이 이성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 눈치를 준 적이 있다	1.22(±0.48)	1.20(±0.45)	0.27
7) 노인이 성(性)에 대해 관심을 갖거나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 무안을 준 적이 있다	1.14(±0.39)	1.13(±0.35)	0.38
8) 노인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못미더워한 적이 있다	1.73(±0.58)	1.66(±0.62)	1.18
9) 노인이라는 이유로 내가 궁금해 하는 것을 모른 척하거나, ‘몰라도 된다’며 대답해 주지 않은 적이 있다	1.49(±0.58)	1.56(±0.61)	-1.18
10) 노인이라 제대로 하지 못할 것으로 여겨져 부탁내지 요청하지 않은 적이 있다	1.77(±0.68)	1.69(±0.74)	1.12
11) 노인이라는 이유로 의사결정과정에서 무시하거나 배제시킨 적이 있다	1.42(±0.56)	1.45(±0.62)	-0.49
12) 노인이 다방, 식당 등에 들어오면 무관심하거나 불편해 한 적이 있다	1.38(±0.59)	1.34(±0.58)	0.85
13) 나이에 맞게 행동하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1.18(±0.44)	1.30(±0.55)	-2.63**

(2) 지역별 노인차별에 대한 인지정도 비교

지역별로 노인차별에 대한 인지정도를 노인과 비노인층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표 3-15>은 노인을 대상으로 지역별 노인차별에 대한 인지정도의 차이를 비교한 것이다. 노인들의 경우는 노인차별 경험의 지역별 차이를 보여준 <표 3-13>에서와 같이 농어촌지역의 노인들이 도시지역 노인들에 비해 거의 모든 항목을 노인차별로 인지하고 있었다.

<표 3-15> 지역별 노인차별에 대한 인지정도 비교: 노인층

내 용	도시 M(±SD)	농어촌 M(±SD)	t값
1) 노인이라는 이유로 나를 무시하는 말이나 심한 표현을 들은 적이 있다	2.34(±1.03)	2.45(±0.91)	-1.12
2) 노인을 비하하는 단어를 들은 적이 있다 (예: 노친네, 할망구...)	2.08(±0.98)	2.55(±0.90)	-4.77**
3) 나이든 외모에 대해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거나 싫어하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	2.06(±0.90)	2.35(±1.00)	-3.05**
4) 내가 노인이기 때문에, 잘 보지도, 잘 듣지도 못한다는 식의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2.05(±0.92)	2.43(±1.05)	-3.84**
5) 아플 때 의사나 주변 사람이 노환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적이 있다	1.94(±0.93)	2.24(±1.01)	-3.03**
6)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이성(異性)에 대해 관심이 없는 척 한 적이 있다	1.56(±0.78)	1.95(±1.03)	-4.38**
7) 성(性)에 대해 관심을 갖거나 이야기를 했다가 무안을 당한 적이 있다	1.54(±0.78)	1.96(±1.01)	-4.67**
8) 노인이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이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을 못미더워한 적이 있다	2.14(±0.93)	2.49(±0.98)	-3.53**
9) 노인이라는 이유로 내가 궁금해 하는 것을 모른 척하거나, '몰라도 된다'며 대답해 주지 않은 적이 있다	2.15(±0.96)	2.39(±0.96)	-2.32*
10)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노인이라 제대로 하지 못할 것으로 여겨져 부탁내지 요청받지 못한 적이 있다	2.19(±0.98)	2.43(±1.13)	-2.31*
11) 노인이라는 이유로 의사결정과정에서 내 의견이 무시당하거나 배제된 적이 있다	2.21(±1.02)	2.57(±1.03)	-3.34**
12) 노인이라는 이유로 내가 다방, 식당 등에 들어가면 주인이나 손님이 무관심하거나 불편해 한 적이 있다	2.23(±0.01)	2.46(±1.10)	-2.16*
13) 나이에 맞게 행동하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1.87(±0.95)	2.31(±1.08)	-4.27**

유일하게 ‘노인이라는 이유로 나를 무시하는 말이나 심한 표현을 들은 적이 있다’의 항목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지역별 노인차별 인식차이를 많이 나타내는 항목으로는 ‘노인을 비하하는 단어를 들은 적이 있다(예: 노친네, 할망구...)',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이성(異性)에 대해 관심이 없는 척 한 적이 있다’, ‘성(性)에 대해 관심을 갖거나 이야기를 했다가 무안을 당한 적이 있다’ 등 노인차별의 경험에서는 지역별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던 항목들이 인지정도에서는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경험과 인지적인 측면 모두 지역별 차이를 보인 항목으로는 ‘노인이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이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을 못미더워한 적이 있다’, ‘노인이라는 이유로 의사결정과정에서 내 의견이 무시당하거나 배제된 적이 있다’, ‘나이에 맞게 행동하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등이다.

비노인층의 노인차별에 대한 인지정도의 지역별 차이를 살펴보면, 지역별 경험차이를 비교한 <표 3-16>에서와 유사한 성향을 보이고 있다. 즉, 대부분의 항목에서 지역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노인이 성(性)에 대해 관심을 갖거나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 무안을 준 적이 있다’, ‘노인이라는 이유로 의사결정과정에서 무시하거나 배제시킨 적이 있다’, ‘노인이 다방, 식당 등에 들어오면 무관심하거나 불편해 한 적이 있다’ 등의 항목에서 유의미한 지역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노인차별 경험에서 유의미한 지역별 차이를 보였던 항목들과는 다른 노인차별 항목들이다.

<표 3-16> 지역별 노인차별에 대한 인지정도 비교: 비노인층

내 용	도시 M(±SD)	농어촌 M(±SD)	t값
1) 노인이라는 이유로 무시하는 말이나 심한 표현을 한 적이 있다	2.47(±1.13)	2.32(±1.03)	1.39
2) 노인을 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한 적이 있다 (예: 노친네, 할망구...)	2.31(±1.10)	2.22(±1.01)	0.81
3) 나이든 외모에 대해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거나 싫어하는 느낌을 준 적이 있다	2.39(±1.08)	2.30(±1.09)	0.75
4) 노인이기 때문에, 잘 보지도, 잘 듣지도 못한다는 식의 대우를 한 적이 있다	2.28(±1.04)	2.30(±1.04)	-0.15
5) 노인이 아플 때 노환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적이 있다	2.21(±0.95)	2.25(±0.97)	-0.40
6) 노인이 여성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 눈치를 준 적이 있다	2.17(±1.16)	2.06(±0.98)	0.95
7) 노인이 성(性)에 대해 관심을 갖거나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 무안을 준 적이 있다	2.15(±1.07)	2.01(±1.01)	1.29
8) 노인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못미더워한 적이 있다	2.23(±0.93)	2.07(±0.94)	1.78
9) 노인이라는 이유로 모른 척하거나, '몰라도 된다'며 대답해 주지 않은 적이 있다	2.42(±1.04)	2.30(±1.03)	1.12
10) 노인이라 제대로 하지 못할 것으로 여겨져 부탁내지 요청하지 않은 적이 있다	2.20(±0.96)	2.07(±0.92)	1.37
11) 노인이라는 이유로 의사결정과정에서 무시하거나 배제시킨 적이 있다	2.42(±1.10)	2.20(±1.01)	2.08*
12) 노인이 다방, 식당 등에 들어오면 무관심하거나 불편해 한 적이 있다	2.35(±1.08)	2.16(±1.04)	1.82
13) 나이에 맞게 행동하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2.38(±1.21)	2.20(±1.13)	1.51

(3) 제도적/규범적 노인차별에 대한 지역별 비교

제도적인 노인차별에 대한 지역별 차이를 노인대상과 비노인대상으로 <표 3-17>과 <표 3-18>에서 각각 살펴보았다. 노인이나 비노인층 모두 '대중매체에서 노인을 위한 배려가 적다(예: 무시하고 소외되는 모습이 빈번하다, 노인등장 인물이 적게 나온다

등), ‘노인이 즐길만한 문화, 여가시설이나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노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거나, 이해하기 어렵다’ 등에서 지역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하지만, 노인들의 경우, 이 항목들에 대해 농어촌 노인들이 도시노인들보다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에, 비노인층들의 경우 반대로 도시지역 비노인층들이 농어촌지역 비노인층보다 동일한 항목에서 더욱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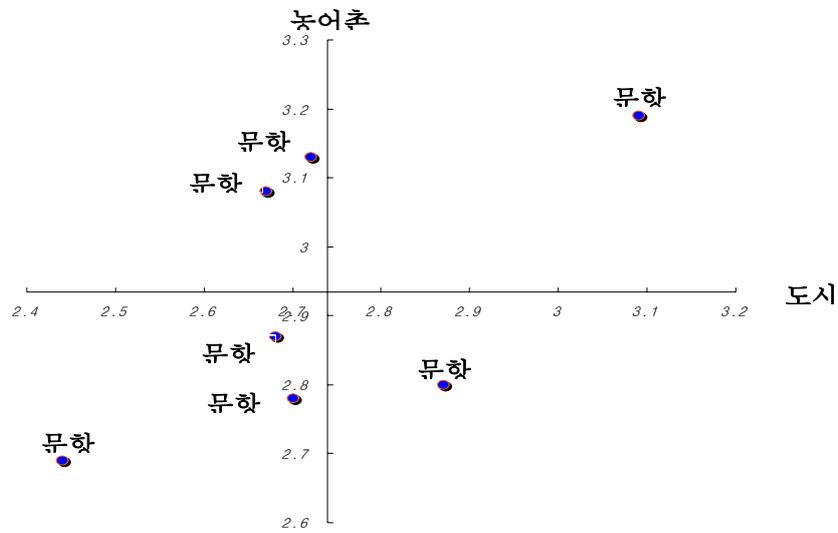
<표 3-17> 지역별 제도적/규범적 노인차별 관점 비교: 노인층

내 용	도시 M(±SD)	농어촌 M(±SD)	t값
1) 노인이 할 수 있는 마땅한 일자리 찾기가 어렵다	3.05(±0.73)	3.19(±0.69)	-1.81
2) 노인은 능력에 상관없이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	2.69(±0.72)	2.78(±0.84)	-1.14
3) 대중매체에서 노인을 위한 배려가 적다(예: 무시하고 소외되는 모습이 빈번하다, 노인등장 인물이 적게 나온다 등)	2.66(±0.76)	2.86(±0.83)	-2.60**
4) 일상에서 노인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생활용품(예: 전자제품, 핸드폰 등)이 적다	2.50(±0.80)	2.68(±0.86)	-2.25*
5) 노인이 즐길만한 문화, 여가시설이나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2.70(±0.81)	3.13(±0.78)	-5.39**
6) 노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거나, 이해하기 어렵다	2.68(±0.75)	3.07(±0.73)	-5.30**
7) 노인이 되어 이혼 또는 재혼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참거나, 혼자 사는게 땀땀하다	2.85(±0.81)	2.80(±0.99)	0.54

<그림 3-1>은 제도적/규범적 관점에서 도농 지역별 노인차별에 대한 비교를 노인층을 대상으로 비교한 것이다. 도시노인이나 농어촌 노인 모두 노인일자리 어려움을 노인차별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문항 2(노인은 능력에 상관없이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 문항 3(대중매체에서 노인을 위한 배려가 적다), 그리고 문항 4(일상에서 노인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생활용품이 적다) 등에서는 노인차별적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문항 5(노인이 즐길만한 문화, 여가시설이나 프로그램이 부족하다)와 문항 6(노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거나, 이해하기 어렵다)에서는 농촌노인

들이 도시노인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노인차별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문항 7(노년기 이혼 및 재혼문제)에 대해서는 도시 노인들이 농촌노인보다 더 차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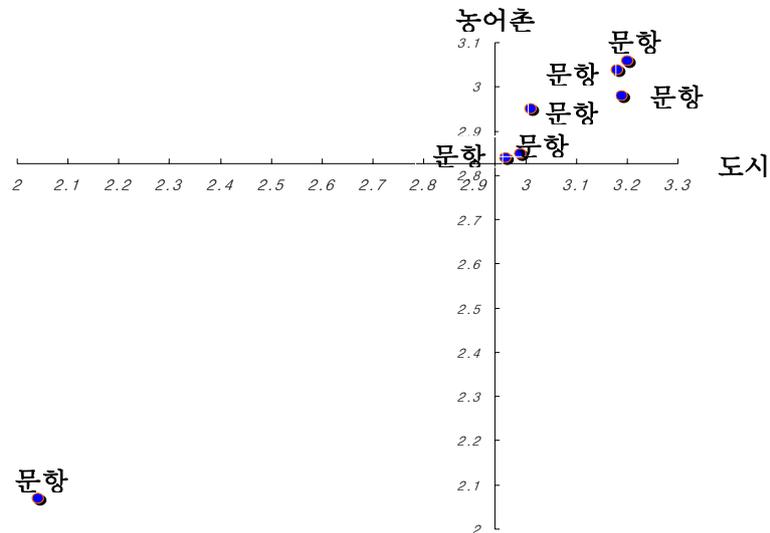
<그림 3-1> 지역별 제도적/규범적 노인차별 관점 IPA모형: 노인층 대상

<표 3-18> 지역별 제도적/규범적 노인차별 관점 비교: 비노인층

내 용	도시 M(±SD)	농어촌 M(±SD)	t값
1) 노인이 할 수 있는 마땅한 일자리 찾기가 어렵다	3.16(±0.67)	3.06(±0.73)	1.58
2) 노인은 능력에 상관없이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	2.97(±0.65)	2.95(±0.72)	0.36
3) 대중매체에서 노인을 위한 배려가 적다(예: 무시하고 소외되는 모습이 빈번하다, 노인등장 인물이 적게 나온다 등)	2.94(±0.67)	2.84(±0.69)	1.57
4) 일상에서 노인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생활용품(예: 전자제품, 핸드폰 등)이 적다	2.92(±0.73)	2.83(±0.75)	1.26
5) 노인이 즐길만한 문화, 여가시설이나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3.11(±0.71)	2.97(±0.75)	1.96
6) 노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거나, 이해하기 어렵다	3.13(±0.66)	3.04(±0.68)	1.37
7) 노인이 되어 이혼 또는 재혼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참거나, 혼자 사는게 땀땀하다	2.02(±0.81)	2.07(±0.79)	-0.54

비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지역별 비교에 있어서는 문항 7(노년기 이혼과 재혼)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에 있어서 지역과는 무관하게 모두 노인차별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문항 1(노인일자리), 문항 5(노인문화 및 여가시설), 그리고 문항 6(노인 정보화) 등의 항목에서는 도시와 농어촌 비노인층 모두가 상대적으로 높은 노인차별적 인지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림 3-2> 지역별 제도적/규범적 노인차별 관점 IPA모형: 비노인층 대상

결론적으로 농어촌의 노인들은 도시 노인들보다 노인차별 행위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으며, 인식의 정도도 더 높게 나타났다. 제도적/규범적 노인차별 항목들에서 농어촌 노인들이 노인차별적 제도에 대해 도시지역 노인들보다 더욱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특히 ‘노인여가문화’와 ‘정보화’ 영역에서 도시노인층보다 상대적으로 더 차별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편, 비노인층의 경우에는 농어촌 지역과 도시지역이 노인차별행위나 인식의 정도가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나타냈으며, 제도적/규범적 노인차별 항목에서는 노년기의 이혼과 재혼과 관련된 규범을 제외하고는 모든 항목에서 도시와 농어촌 비노인층은 상대적으로 노인차별적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세대간 노인차별의 인식비교

(1) 노인차별에 대한 이해에 대한 세대간 비교

노인차별에 대한 이해와 한국사회에 노인차별의 정도를 노인층과 비노인층간의 견해를 비교한 것이 <표 3-19>에 제시되어 있다. 노인차별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노인층의 71.1%, 비노인층의 89.1%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교차분석을 통해 세대간과 노인차별의 이해 정도의 관련성을 검토한 결과, 비노인층일수록 노인차별에 대한 의미를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의 노인차별 정도에 대한 질문에서는 노인층의 경우, ‘있는 편이다’(52.3%), ‘매우 있다’(17.9%)로 응답한 반면에 비노인층의 경우 각각의 항목에 대해 59.1%, 31.3%로 응답하였다. 특히 노인차별이 매우 있는 편이라는 응답의 비율에서 비노인층이 매우 높은 비율을 보여줌으로써 노인차별에 대한 세대간의 견해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9> 노인층과 비노인층간의 노인차별에 대한 이해

내 용	노인층 N(%)	비노인층 N(%)	χ^2 값
노인차별 의미			
모른다	140 (28.9)	63 (10.9)	54.9**
알고 있다	345 (71.1)	514 (89.1)	
노인차별 정도			
전혀없다	10 (2.0)	3 (0.5)	78.4**
없는 편이다	92 (18.7)	34 (5.9)	
있는 편이다	257 (52.3)	340 (59.1)	
매우 있다	88 (17.9)	180 (31.3)	
잘 모르겠다	44 (9.0)	18 (3.1)	
전체 N	485 (100.0)	577 (100.0)	

(2) 세대간 노인차별 경험 비교

노인차별 경험에 대한 세대간 비교를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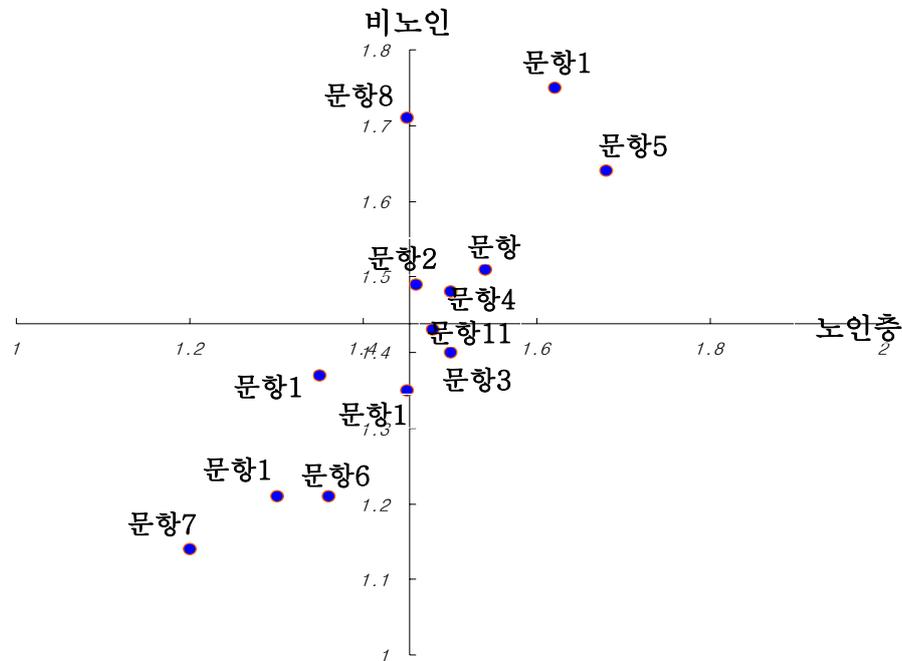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항목을 살펴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느 쪽이 더 경험을 많이 했느냐를 살펴보는 것이다. 우선 세대간 차이를 가장 많이 보이는 노인차별 항목으로는 '노인이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이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을 못미더워한 적이 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이성(異性)에 대해 관심이 없는 척 한 적이 있다', '나이든 외모에 대해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거나 싫어하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0> 세대간 노인차별에 대한 경험 비교

내 용	노인층 M(±SD)	비노인층 M(±SD)	t값
1) 노인이라는 이유로 나를 무시하는 말이나 심한 표현을 들은 적이 있다	1.45(±0.64)	1.35(±0.51)	2.80**
2) 노인을 비하하는 단어를 들은 적이 있다 (예: 노친네, 할망구...)	1.46(±0.65)	1.49(±0.57)	-0.81
3) 나이든 외모에 대해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거나 싫어하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	1.50(±0.70)	1.40(±0.54)	2.45*
4) 내가 노인이기 때문에, 잘 보지도, 잘 듣지도 못한다는 식의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1.50(±0.69)	1.48(±0.60)	0.52
5) 아플 때 의사나 주변 사람이 노환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적이 있다	1.68(±0.78)	1.64(±0.62)	0.82
6)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이성(異性)에 대해 관심이 없는 척 한 적이 있다	1.36(±0.64)	1.21(±0.47)	4.32**
7) 성(性)에 대해 관심을 갖거나 이야기를 했다가 무안을 당한 적이 있다	1.20(±0.49)	1.14(±0.38)	2.15*
8) 노인이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이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을 못미더워한 적이 있다	1.45(±0.65)	1.71(±0.59)	-6.97**
9) 노인이라는 이유로 내가 궁금해 하는 것을 모른 척하거나, '몰라도 된다'며 대답해 주지 않은 적이 있다	1.54(±0.72)	1.51(±0.59)	0.73
10)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노인이라 제대로 하지 못할 것으로 여겨져 부탁내지 요청받지 못한 적이 있다	1.62(±0.78)	1.75(±0.69)	-2.75**
11) 노인이라는 이유로 의사결정과정에서 내 의견이 무시당하거나 배제된 적이 있다	1.48(±0.72)	1.43(±0.58)	1.40
12) 노인이라는 이유로 내가 다방, 식당 등에 들어가면 주인이나 손님이 무관심하거나 불편해 한 적이 있다	1.35(±0.65)	1.37(±0.59)	-0.67
13) 나이에 맞게 행동하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1.30(±0.59)	1.21(±0.47)	2.80**

이 중에서 '노인이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못미더워한 적이 있다'의 경우는 비노인층이 노인층보다 훨씬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두 항목은 노인층이 비노인층보다 경험을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은 비노인층과 노인층에서 본 보고서에서 제시된 13항목의 노인차별 유형들을 어떻게 경험하였는지를 전체 평균값을 기준으로 하여 살펴본 것이다. 문항 10, 5, 9, 4, 그리고 2번의 경우는 비노인층과 노인층 모두가 다른 노인차별유형들과 비교했을 때 평균이상으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항 10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노인이라 제대로 하지 못할 것으로 여겨져 부탁내지 요청받지 못한 적이 있다 또는 요청하지 않은 일이 있다)과 문항 5(아플 때 의사나 주변 사람이 노환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적이 있다 또는 노인의 병환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은 적이 있다)가 상대적으로 노인층과 비노인층 모두 경험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문항 7, 13, 6, 12, 1에서는 두 세대 모두가 상대적으로 경험빈도가 낮은 노인차별 유형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항 7(성에 관심을 갖거나 이야기를 했다가 무안을 당한 적이 있다 또는 무안을 준 적이 있다)와 문항 13(나이에 맞게 행동하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또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는 상대적으로 경험빈도가 두 세대 모두 매우 낮은 노인차별 유형으로 나타났다. 한편, 문항 3과 11은 노인층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경험빈도를 보이고 있으나, 비노인층에서는 다른 노인차별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경험빈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문항 3(나이든 외모에 대해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거나 싫어하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 또는 싫은 느낌을 나타낸 적이 있다)에서 더욱 명확하게 이러한 성향이 보여진다.



<그림 3-3> 세대간 노인차별 경험빈도에 대한 IPA 모형

(3) 세대간 노인차별 인식 비교

세대간 노인차별에 대한 인식비교에 있어서도 경험에 대한 비교와 같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항목과 어느 쪽이 더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세대간에 노인차별의 인식정도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순으로는 '성(性)에 대해 관심을 갖거나 이야기를 했다가 무안을 당한 적이 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이성(異性)에 대해 관심이 없는 척 한 적이 있다', '나이에 맞게 행동하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아플 때 의사나 주변 사람이 노환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적이 있다', '나이든 외모에 대해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거나 싫어하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 등이다. <표 3-21>의 세대간의 노인차별 경험에서는 항목에 따

라 세대간의 차이가 다르게 나타났지만, 인지정도에 있어서는 비노인층이 노인층에 비해 이 항목들 모두에게서 노인차별로 인식하는 정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노인차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비노인층들이 노인층들보다 그 의미를 이해하는 정도가 높았고, 본 연구에서 제시된 13개 노인차별 항목들 중에 8개 항목에서 비노인층들이 노인들보다 노인차별로 인지하는 정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3-21> 노인차별에 대한 인지도

내 용	노인층 M(±SD)	비노인층 M(±SD)	t값
1) 노인이라는 이유로 나를 무시하는 말이나 심한 표현을 들은 적이 있다	2.37(±1.00)	2.43(±1.11)	-0.99
2) 노인을 비하하는 단어를 들은 적이 있다 (예: 노친네, 할망구...)	2.21(±0.98)	2.29(±1.08)	-1.26
3) 나이든 외모에 대해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거나 싫어하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	2.14(±0.93)	2.37(±1.08)	-3.51**
4) 내가 노인이기 때문에, 잘 보지도, 잘 듣지도 못한다는 식의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2.15(±0.97)	2.28(±1.04)	-2.10*
5) 아플 때 의사나 주변 사람이 노환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적이 있다	2.02(±0.96)	2.22(±0.95)	-3.28**
6)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이성(異性)에 대해 관심이 없는 척 한 적이 있다	1.66(±0.87)	2.14(±1.12)	-7.52**
7) 성(性)에 대해 관심을 갖거나 이야기를 했다가 무안을 당한 적이 있다	1.66(±0.87)	2.11(±1.06)	-7.43**
8) 노인이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이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을 못미더워한 적이 있다	2.23(±0.96)	2.19(±0.93)	0.66
9) 노인이라는 이유로 내가 궁금해 하는 것을 모른 척하거나, '몰라도 된다'며 대답해 주지 않은 적이 있다	2.22(±0.97)	2.39(±1.04)	-2.76**
10)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노인이라 제대로 하지 못할 것으로 여겨져 부탁내지 요청받지 못한 적이 있다	2.25(±1.02)	2.17(±0.95)	1.37
11) 노인이라는 이유로 의사결정과정에서 내 의견이 무시당하거나 배제된 적이 있다	2.31(±1.03)	2.36(±1.08)	-0.81
12) 노인이라는 이유로 내가 다방, 식당 등에 들어가면 주인이나 손님이 무관심하거나 불편해 한 적이 있다	2.29(±1.04)	2.31(±1.08)	-0.20
13) 나이에 맞게 행동하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1.99(±1.00)	2.33(±1.19)	-4.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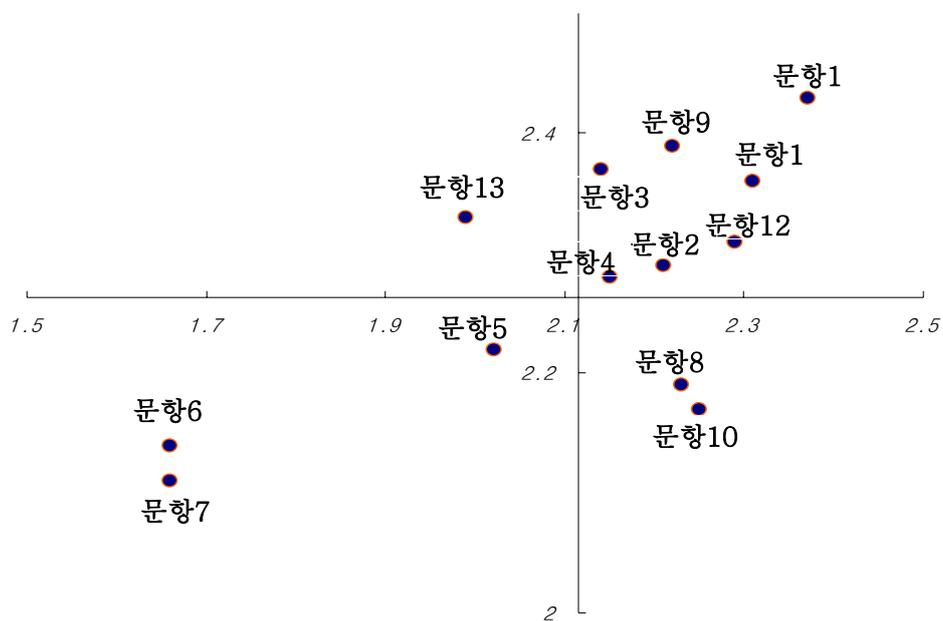
<그림 3-4>는 세대간 노인차별 항목에 대한 상대적인 인식차이를 비교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문항 1, 9, 11, 12, 3, 2, 그리고 4의 경우에는 두 세대 모두가 다른 항목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노인차별로 인식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문항 6, 7, 그리고 5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노인차별로 인식하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항 1(노인이라는 이유로 나를 무시하는 말이나 심한 표현을 들은 적이 있다)의 경우에는 노인층과 비노인층 모두 노인차별로 인식하는 정도가 매우 높은 반면에 <그림 3-3>에서 보여지듯이 실제로 경험빈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반대로 문항 5(아플 때 의사나 주변사람이 노환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적이 있다)는 두 세대 모두 노인차별로 인식하는 정도가 낮은 반면에 경험빈도는 높은 노인차별 유형으로 밝혀졌다.

노년기 성(性)과 이성(異性) 문제에 관련된 문항 6과 7은 경험빈도에서도 두 세대 모두 낮게 나타났으며, 인식의 정도에서도 낮게 나타남으로써 우리사회에서는 노년기의 성이나 이성문제를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노인차별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차별행위를 당할 정도로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문항 13(나이에 맞게 행동하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또는 한 적이 있다)은 두 세대 모두 경험빈도가 낮게 나타났지만, 인식에 있어서는 비노인층이 상대적으로 노인차별로 인식하는 반면에 노인층은 다른 노인차별 항목들에 비해 노인차별이라고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문항 10(할 수 있는 일인데도 노인이라는 이유로 부탁내지 요청받지 못했다 또는 요청하지 않았다)과 문항 8(노인이라는 이유로 못미더워 했다)은 노인층에서는 상대적으로 노인차별이라고 인지하는 정도가 높았으나, 비노인층에서는 다른 노인차별 항목들에 비해 노인차별로 인지하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항 10

의 경우에는 경험빈도에서 비노인층과 노인층 모두에게서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경험하는 노인차별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인식에 있어서는 노인층에서는 노인차별로 인식하는 반면에 비노인층에서는 상대적으로 노인차별로 인식하는 정도가 낮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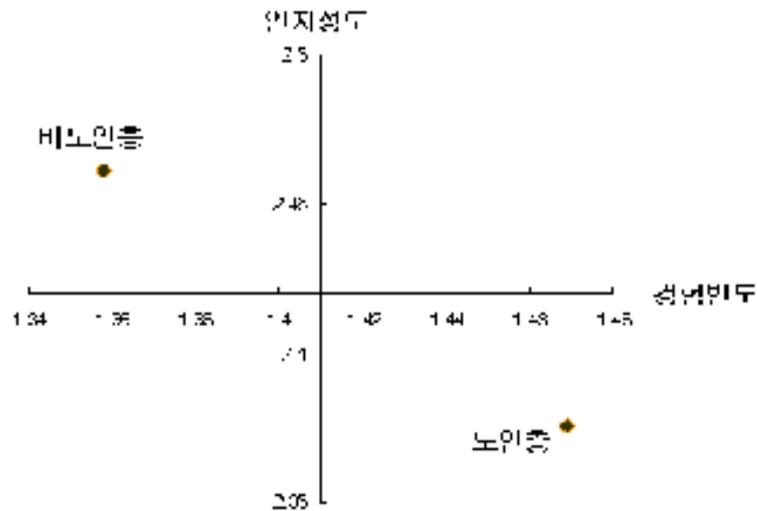


<그림 3-4> 세대간 노인차별 인식에 대한 IPA 모형

(4) 세대간 노인차별 경험과 인식에 대한 중요도-실행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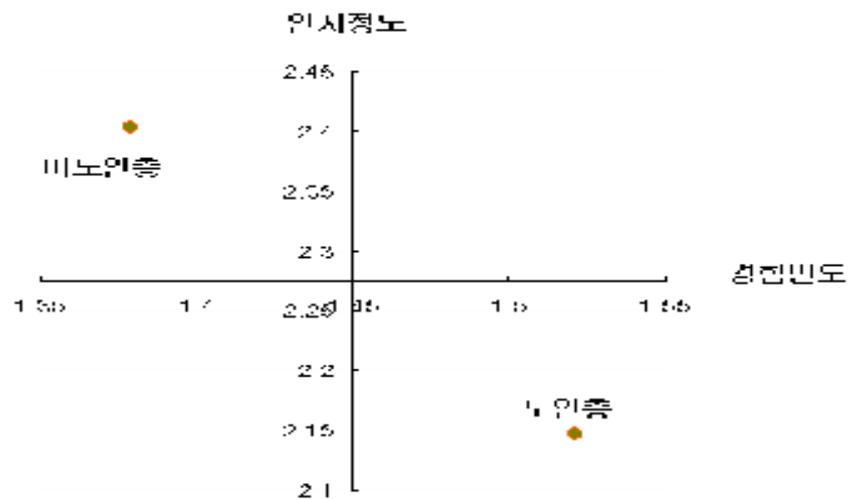
세대간 노인차별 경험과 인식을 상대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해 중요도-실행도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개별 항목별로 분석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 중요도-실행도 분석은 인지정도를 Y축으로 하고, 경험빈도를 X축으로 했을 때, 노인차별 개별 항목별로 인지정도와 경험빈도에 대한 노인층과 비노인층의 평균값을 X축과 Y축의 교차점으로 해서 세대간의 비교를 실시하는 것이다.

노인차별 유형 1의 경우, 비노인층들은 인지하는 정도가 노인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 경험빈도는 노인층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경험을 한 경우이다. 즉, '노인이라는 이유로 무시하거나 심한 표현을 하는 경우'는 노인층보다는 오히려 비노인층이 상대적으로 노인차별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이러한 노인차별 행위는 노인층이 비노인층보다 더 많이 경험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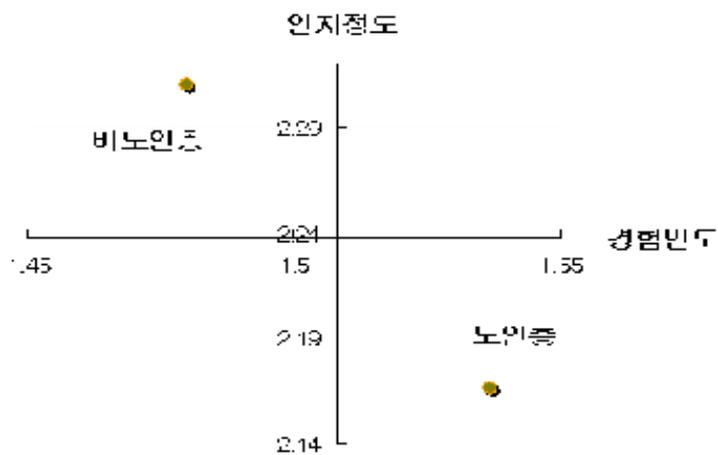


<그림 3-5> 노인이라는 이유로 무시하거나 심한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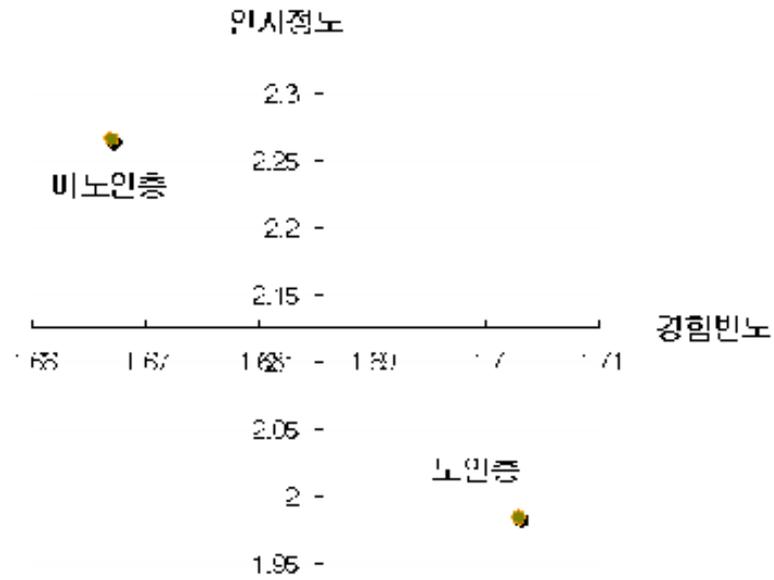
이러한 유형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유형 3(나이든 외모에 대한 거부감 및 싫은 느낌), 유형 4(노인이기에 잘 보지도 듣지도 못할 거라는 대우), 유형 5(아플 때 노환으로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 유형 6(이성에 대해 관심이 없는 존재로 대우), 유형 7(성에 대한 관심이나 이야기로 인한 무안), 유형 11(노인이기에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 혹은 무시), 유형 12(다방이나 식당 등에서 무관심 혹은 불편함), 유형 13(나이에 맞게 행동하라고 이야기하거나 들음)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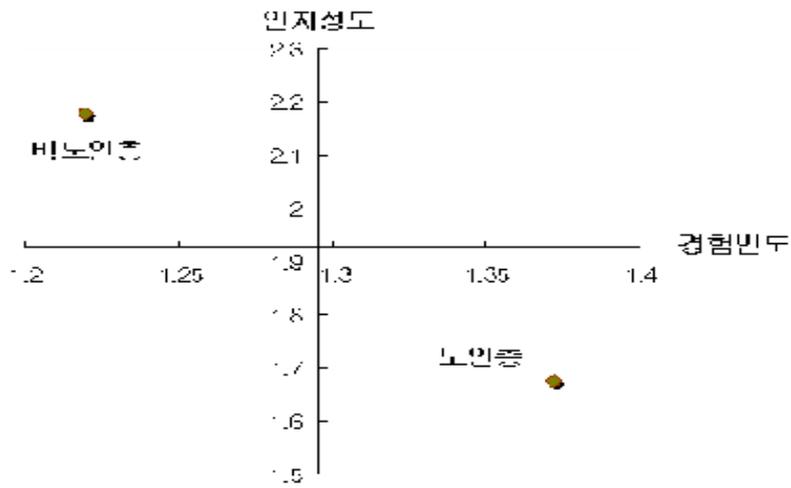
<그림 3-6> 나이든 외모에 대한 거부감 및 싫은 느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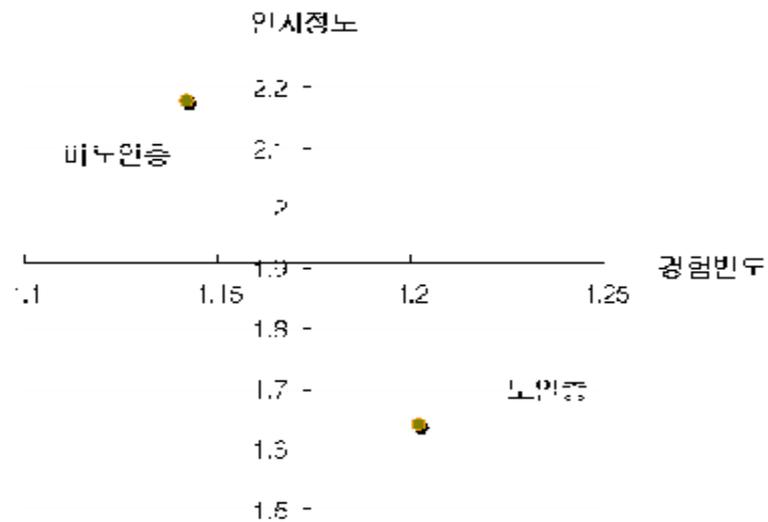
<그림 3-7> 노인이기에 잘 보지도 듣지도 못할 거라는 대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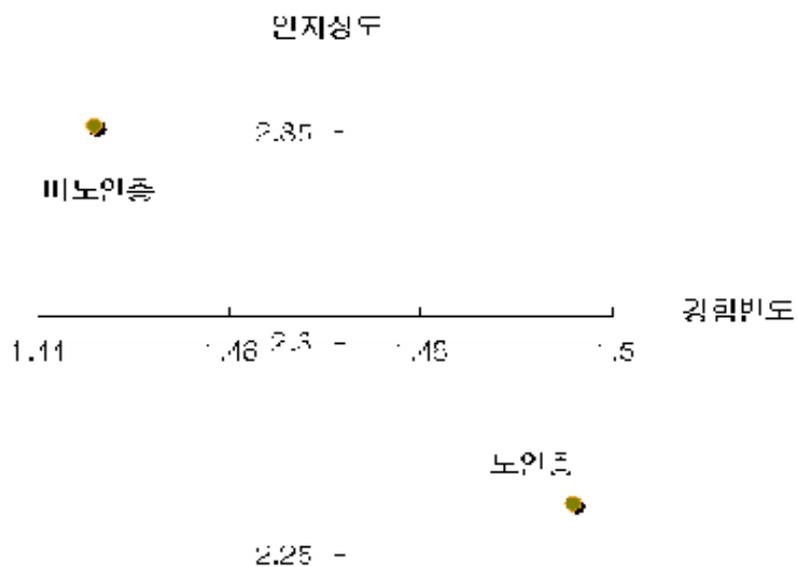
<그림 3-8> 아플 때 노환으로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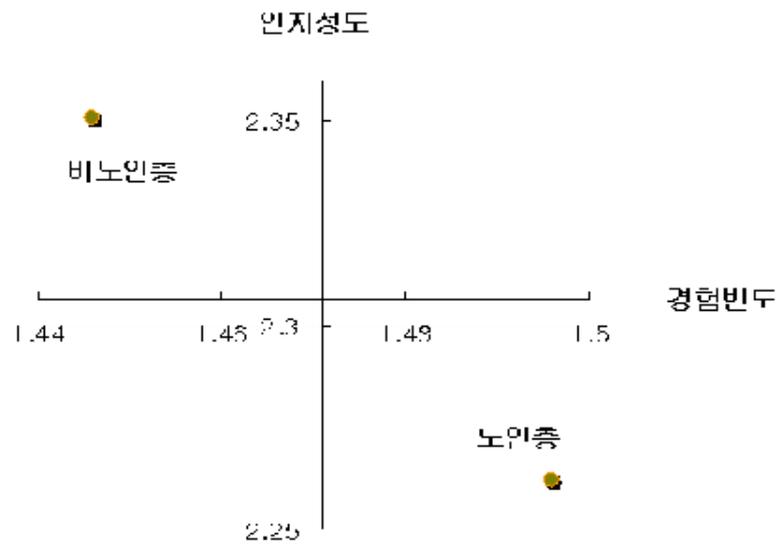
<그림 3-9> 이성예 대해 관심이 없는 존재로 대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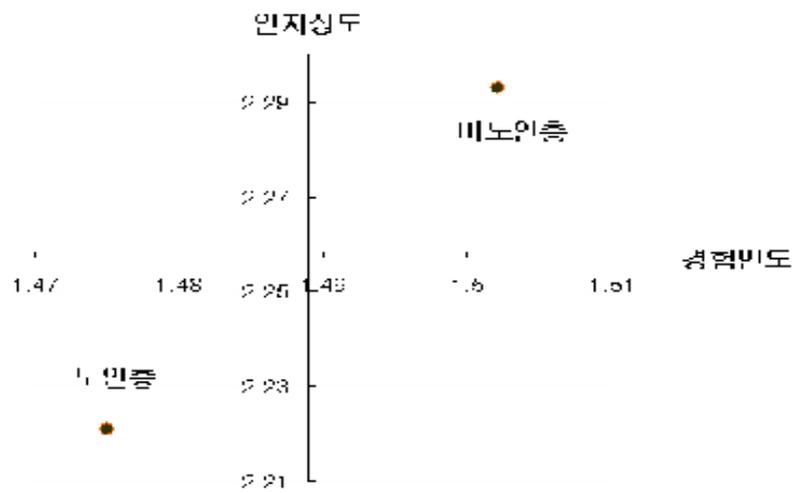
<그림 3-10> 성에 대한 관심이나 이야기로 인한 무안



<그림 3-11> 노인에게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 혹은 무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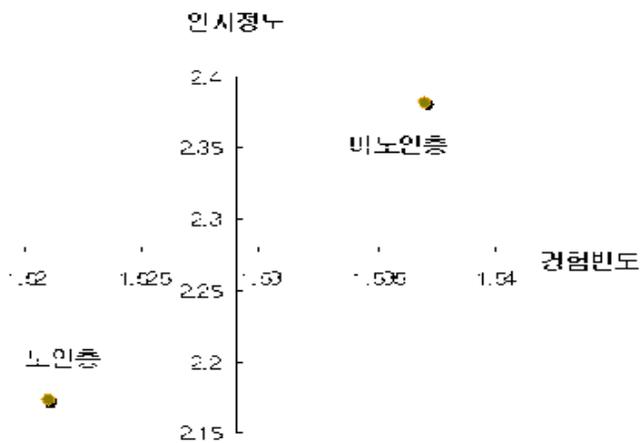


<그림 3-12> 다방이나 식당에서의 무관심 혹은 불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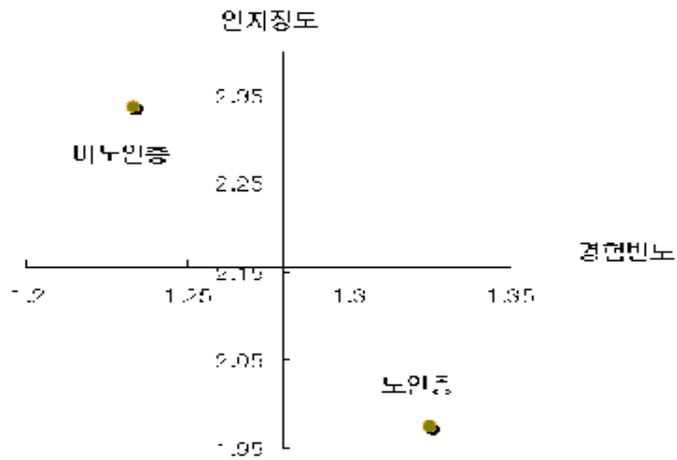


<그림 3-13> 나이에 맞게 행동하라고 이야기하거나 들음

노인차별유형 2(노인을 비하하는 단어구사)의 경우, 노인차별로 인지하는 정도는 비노인층이 노인층보다 상대적으로 높지만, 실제로는 노인들이 경험하는 것보다 비노인층들이 더 많이 이러한 노인차별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유형의 노인차별은 유형 9(노인이기에 몰라도 된다는 식의 태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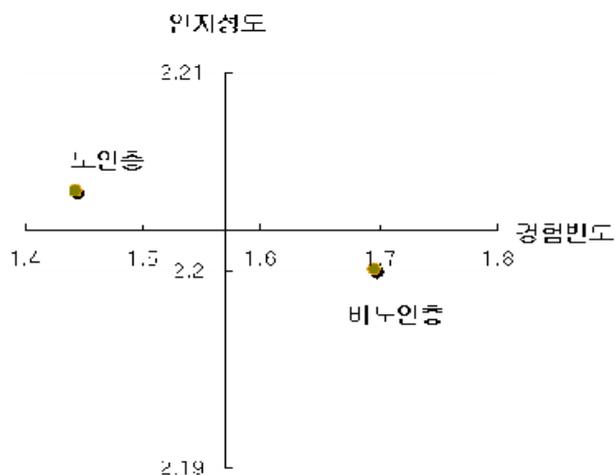


<그림 3-14> 노인을 비하하는 단어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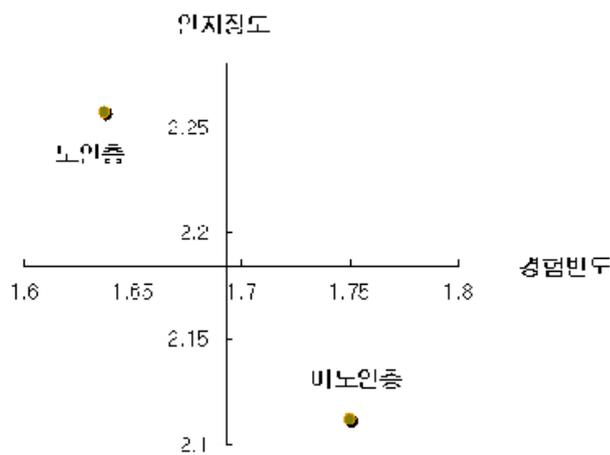


<그림 3-15> 노인이기에 몰라도 된다는 식의 태도

노인차별의 또 다른 유형으로는 노인층이 비노인층보다 노인차별로 더 인지하고 있으나, 경험은 실제로 비노인층과 비교할 때 덜 하고 있는 경우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형 8(노인이라는 이유로 못미더워 함)과 유형 10(노인이기에 부탁이나 요청하지 않거나 받지 못함)이 이러한 성향의 노인차별로 분석되었다.



<그림 3-16> 노인이라는 이유로 못미더워함



<그림 3-17> 노인이기에 부탁이나 요청하지 않거나 받지 못함

(5) 세대간 제도적 노인차별에 대한 견해 비교

제도적 측면의 노인차별의 현상에 대해 거의 모든 항목에서 비노인층이 노인층에 비해 높은 평균값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각 항목에 대한 설명을 수긍하는 정도가 높다는 의미이며, 결국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제도 및 통념들이 노인차별적이라는 점을 비노인층이 노인층보다 더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3-22> 세대간 제도적/규범적 관점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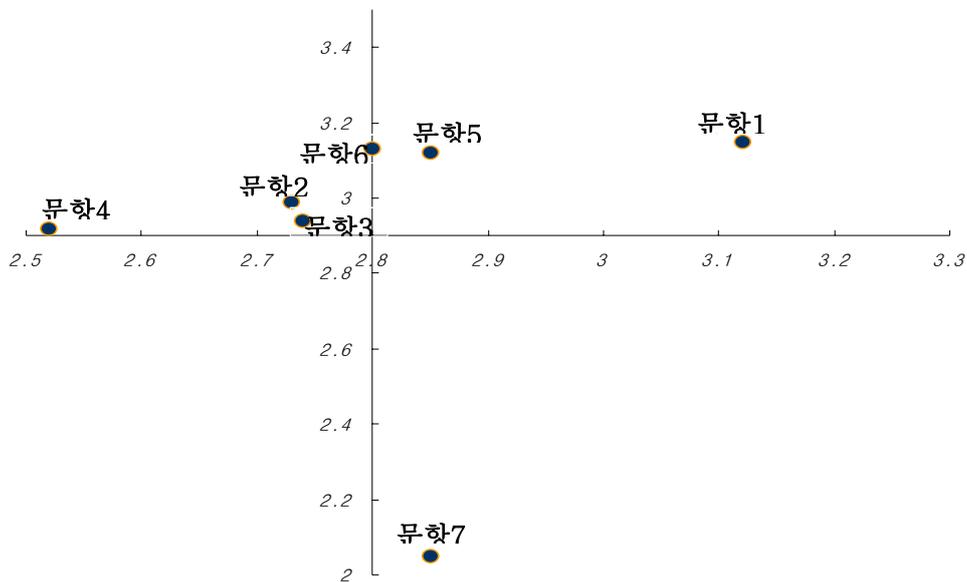
내 용	노인층 M(±SD)	비노인층 M(±SD)	t값
1) 노인이 할 수 있는 마땅한 일자리 찾기가 어렵다	3.12(±0.71)	3.15(±0.69)	-0.70
2) 노인은 능력에 상관없이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	2.73(±0.76)	2.99(±0.66)	-5.43**
3) 대중매체에서 노인을 위한 배려가 적다(예: 무시하고 소외되는 모습이 빈번하다, 노인등장 인물이 적게 나온다 등)	2.74(±0.79)	2.94(±0.68)	-4.04**
4) 일상에서 노인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생활용품(예: 전자제품, 핸드폰 등)이 적다	2.52(±0.82)	2.92(±0.74)	-7.65**
5) 노인이 즐길만한 문화, 여가시설이나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2.85(±0.82)	3.12(±0.71)	-5.27**
6) 노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거나, 이해하기 어렵다	2.80(±0.77)	3.13(±0.65)	-6.88**
7) 노인이 되어 이혼 또는 재혼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참거나, 혼자 사는게 땃땃하다	2.85(±0.88)	2.05(±0.82)	13.92**

특히, '노인이 되어 이혼 또는 재혼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참거나, 혼자 사는게 땃땃하다'라는 항목에서 가장 큰 세대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비노인층은 노년기의 재혼과 이혼에 대해 노인층보다 훨씬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외에도 정보화 시대에서의 노인소외 현상으로 IT 상품이나 정보채널에 대한 노인차별적 환경에 대해서 노인보다 비노인층들이 훨씬 더 수긍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림 3-18>은 노인층과 비노인층간에 제도적/규범적으로 노인차별과 관련된 사항

에 대한 인식차이를 각 세대의 평균값을 기초로 비교한 것이다. 우선 문항 1(노인일 자리의 부족)과 문항 5(노인문화부재와 여가시설이 부족)는 노인층과 비노인층 모두 노인차별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향후 노인차별에 대한 제도적/규범적 해결방안으로 세대를 불문하고 동의를 얻을 수 있는 항목으로 주목해야 할 것이다.

반면에 문항 2, 3, 4, 6은 비노인층에서는 다른 사항들에 비해 노인차별적이라고 인식하는 정도가 높은 반면에 노인층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문항 7(노인이 되어 이혼 또는 재혼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참거나, 혼자 사는 것이 떳떳하다)은 노인차별적 사회적 규범항목으로써 비노인층에서는 노인차별적 인식이 다른 항목들에 비해 매우 낮은 반면에 노인층에서는 평균이상의 비교적 높은 노인차별적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3-18> 세대간 제도적 관점에 대한 IPA 모형

제2절 전문가 델파이(Delphi) 조사결과

1. 조사개요

본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 노인차별 현황 및 관련 정책 방안에 대한 현실성 있는 전문가 의견을 취합하여 이의 시사점을 얻고자 Delphi 기법³⁾을 활용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노인차별에 대한 델파이 조사는 노인관련 시설이나 기관, 대학교수 및 연구원, 노인관련 단체 및 협회 관계자,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의 공무원 등 총 30명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10월 25일부터 11월13일 동안 1차와 2차의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에 응답한 전문가는 총 30명 중 28명으로 응답율이 93.3%였으며, 2차 조사에서는 전체의 80%인 24명이 응답하였다. 설문에 응한 전문가들은 복지기관 및 시설에서 13명, 대학교수 및 연구원이 5명, 노인관련단체 및 협회에서 2명, 그리고 정부 및 지자체 공무원 3명, 그리고 기타 직업군이 4명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델파이 조사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표 3-23> 참고).

- 3) 델파이기법은 위원회나 전문가 토론, 또는 다른 형태의 집단토론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왜곡된 의사전달의 원천을 제거하기 위하여 고안되었다. 즉 소수인사에 의하여 토론 과정이 지배되는 현상, 동료집단의 견해에 따라야 한다는 압력, 개성 차이와 참여자간의 갈등, 권위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에 공공연하게 반대하는데 따르는 어려움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설계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기본원칙이 강조된다. ① 익명성(anonymity): 전문가와 참여자들은 익명성이 엄격하게 보장된 개인으로서 답변한다. ② 반복(iteration): 개개인의 판단은 집계하여 몇 회에 걸쳐 참가한 모든 전문가들에게 다시 알려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사회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전의 판단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한다. ③ 통제된 환류(controlled feedback): 질문지에 대한 응답을 요약수치로 나타내어 종합된 판단을 전문가와 참여자들에게 전달한다. ④ 응답의 통계처리(statistical group response): 개인의 응답을 요약하여 최빈수, 중위수, 또는 평균 등 중앙 경향 값, 사분편차 등 산포도, 막대그림표, 도수다각형 등 도수분포의 형태로 제시된다. ⑤ 전문가 합의(expert consensus): 예외는 아니지만 이 기법의 주요목표는 전문가들 사이의 합의가 도출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여 합의된 의견을 찾아내는 것이다 (남궁 근, 1998; 179-180).

<표 3-23> 델파이 조사 과정 설명도

	Process	Outcome	N=30 (%)	Validity Analysis
Round 1	노인관련 시설 및 기관, 단체 및 협회, 대학교수 또는 연구원,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참여자 모집	총30명의 전문가들이 참여에 동의		
	노인차별 발생원인, 개인적 측면과 제도적 측면에서의 노인차별 현황, 노인차별에 대한 해결방안과 예방책 등 5개의 주제를 대상으로 질문지 구성	참석자 30명중 28명이 응답하였고, 5개 주제별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	N=28 (93.3%)	
	5명의 연구진들이 각 주제별 항목들을 빈도와 중요성 등을 토대로 검토	노인차별원인 10개, 개인적 측면의 노인차별 7개, 제도적 측면의 노인차별 14개, 노인차별 해결방안 15개, 예방책 14개 항목으로 정리		2명의 연구자가 수렴된 주제들을 개념화
Round 2	전문가들에게 세부주제별 항목들에 대해 5점 척도로 우선순위와 중요도를 매기도록 요청	28명의 전문가 중 24명이 응답	N=24 (80%)	항목별로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는 t값으로 검증.
	전문가들이 표시한 각 주제들에 대해 평균값을 중심으로 중요도 및 시급성(우선순위) 등을 분석			항목별 순위는 평균값으로 결정.

2. 조사결과 분석

1) 노인차별 인지도

전체 조사 대상자 28명 중에서 '노인차별이 있는 편'이라고 응답한 전문가는 13명이었고, 53.6%인 15명은 '노인차별이 매우 있는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노인관련 전문가들의 대부분이 한국 사회의 노인차별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나타냈다.

2) 노인차별에 대한 원인

노인차별에 대한 원인으로 모두 10개의 항목들이 제시되었으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항목은 '생산성과 젊음이 중시되는 사회적 가치'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노인(노화)에 대한 이해부족', '노인에 대한 대중매체의 부정적 이미지 강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원인으로 제시된 항목은 '노인 스스로의 권위의식 혹은 의존적 태도에 대한 반감'이었고, 그 다음으로 '경로사상의 약화' 등으로 나타났다.

<표 3-24> 노인차별 발생원인

내 용	M(±SD)	순위
1) 노년기 역할상실과 소외	4.00(±0.88)	4
2) 경로사상의 약화	3.37(±1.20)	9
3) 노인(노화)에 대한 이해 부족	4.25(±0.60)	2
4) 노후보장의 미비	3.87(±0.99)	5
5) 세대차이로 인한 갈등	3.79(±0.72)	6
6) 노인의 (열악한) 신체적, 정신적 조건	3.54(±0.83)	8
7) 노인에 대한 대중매체의 부정적 이미지 강조	4.08(±0.71)	3
8) 노인의 사회참여 부족	3.73(±0.91)	7
9) 노인 스스로의 권위의식 혹은 의존적 태도에 대한 반감	3.37(±0.82)	10
10) 생산성과 젊음이 중시되는 사회적 가치	4.29(±0.75)	1

3) 개인적 측면에서의 노인차별 발생빈도 및 심각성

개인적인 측면에서 발생하는 노인차별에 대해 발생빈도와 그 심각성에 대한 설문에서는 '노인고용기피'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동시에 가장 심각한 사안이라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자녀들의 노인부양기피'를 꼽고 있었다. 하지만, 세 번째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항으로는 '노인들의 문화프로그램 및 공간부족'이라고 응답한 반면에 심각성에 있어서 세 번째 사항으로는 '노인학대(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학대)'라고 응답하였다.

한편, '대중장소에서 노인과의 접촉기피'나 '노인의 성(性)에 대한 차별적 인식' 등은 발생빈도에서나 심각성에서 모두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들 항목 역시 7점 척도에서 평균점수(보통이다)인 4점보다는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발생빈도와 심각성을 비교해 보았을 때, '연령제한(이용시설 등)' 항목은 발생빈도는 비교적 높은 반면에 그 심각성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나머지 항목들은 발생빈도와 심각성의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25> 개인적 측면에서의 노인차별 발생빈도 및 심각성

내 용	발생빈도 M(±SD)	심각성 M(±SD)	t값
1) 대중장소에서 노인과의 접촉기피	4.25(±1.59)	4.25(±1.56)	0.13
2) 노인고용 기피	6.12(±1.11)	6.20(±1.06)	-0.69
3) 연령제한(이용시설 등)	5.20(±1.50)	4.75(±1.25)	2.08*
4) 노인학대(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학대)	5.00(±1.14)	5.45(±1.02)	-1.93
5) 자녀들의 노인부양 기피	5.62(±0.96)	5.62(±1.01)	0.00
6) 노인들의 문화프로그램 및 공간 부족	5.33(±1.09)	5.45(±0.93)	-0.56
7) 노인의 성(性)에 대한 차별적 인식	4.95(±1.42)	4.79(±0.88)	0.89
전체평균	5.21(±0.85)	5.22(±0.66)	-0.05

*P<.05; **P<.01

4) 제도적 측면에서의 노인차별 발생빈도 및 심각성

제도적 측면에서 발생하는 노인차별의 유형으로 모두 14개 항목들이 제시되었는데, 발생빈도에 있어서는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항목으로는 '정년퇴직제도', '취업시 저임금(임금차별)', '대중매체의 젊은 층 위주의 편성', 그리고 '노인취업알선에 대한 법적 지원 미비'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노인의 의료지원 미비'나 '정책형성과정에서 노인참여의 배제 혹은 소극적인 의견수렴' 항목은 발생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심각성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역시 '정년퇴직제도'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노인취업알선에 대한 법적 지원 미비', 그리고 '취업시 저임금(임금차별)' 등으로 나타남으로써 전문가들은 노인취업과 관련된 영역에서 가장 심각한 노인차별 현상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심각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항목으로는 '대중 사회/문화 시설의 이용제한(또는 이용불편)', '노인의 의료지원 미비' 등이라고 응답하였다.

발생빈도와 심각성의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노인학대신고 의무화 미비', '연령차별 금지법의 부재', '노인취업알선에 대한 법적 지원 미비' 등은 상대적으로 발생빈도에 비해 그 심각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반면에 '확실적인 경로우대 규정'은 그 심각성은 높지 않으나 발생빈도가 높다고 응답하였다.

<표 3-26> 제도적 측면에서의 노인차별 발생빈도 및 심각성

내 용	발생빈도 M(±SD)	심각성 M(±SD)	t값
1) 정년퇴직제도	6.08(±1.10)	6.20(±1.10)	-1.81
2) 노인복지시설의 부족	5.37(±1.05)	5.54(±1.14)	-1.44
3) 취업시 저임금(임금차별)	5.70(±1.16)	5.75(±1.15)	-0.27
4) 대중 사회/문화시설의 이용 제한(또는 이용불편)	5.12(±1.11)	4.83(±1.20)	1.66
5) 대중매체의 젊은층 위주의 편성	5.66(±1.09)	5.45(±1.14)	0.96
6) 각종 보험 가입 제한	5.37(±1.37)	5.41(±1.21)	-0.29
7) 노인학대신고 의무화 미비	5.29(±1.33)	5.70(±1.19)	-2.63*
8) 연령차별금지법 부재	5.12(±1.32)	5.58(±1.17)	-2.20*
9) 노인취업알선에 대한 법적 지원 미비	5.58(±1.34)	5.87(±1.39)	-2.59*
10) 노인의 의료지원 미비	4.87(±1.42)	4.87(±1.45)	0.00
11) 정책형성과정에서 노인참여 배제 혹은 소극적 의견수렴	4.91(±1.13)	5.00(±1.10)	-0.81
12) 여성노인에 대한 이중차별(연금제도 등)	5.12(±1.22)	5.29(±1.33)	-1.44
13) 확실적인 경로우대 규정	5.41(±1.13)	5.12(±1.39)	2.59*
14) 노인을 위한 사회·문화·건강 프로그램 부족	5.25(±1.07)	5.16(±0.91)	0.70
전체평균	5.35(±0.81)	5.41(±0.82)	-0.94

* $P<.05$; ** $P<.01$

5) 노인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노인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모두 15개 항목들이 제시되었으며, 이에 대해 중요성과 시급성으로 구분하여 응답된 전문가들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중요한 해결방안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항목은 '노인취업 및 일자리 지원'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노인과 노년기에 대한 조기교육 실시', '정년제도 철폐 또는 정년연령의 조정', '광고 및 대중매체에 활동적인 노인 이미지 제시' 등으로 나타난 반면에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해결방안 항목들은 '경로효친 사상 고양', '노인권익을 위한

기구 또는 부서 신설, '노인정책을 전담하는 정부기구(예, 노인청) 신설', 그리고 '노인차별(인권)과 관련한 학자들의 연구지원'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급하게 실행되어야 할 해결방안으로는 중요성과 마찬가지로 '노인취업 및 일자리 지원'이 가장 시급한 해결방안으로 제시되었으며, 두 번째 역시 '노인과 노년기에 대한 조기교육실시'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시급한 해결방안으로 제시된 사안은 '노인차별 및 학대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의 강화'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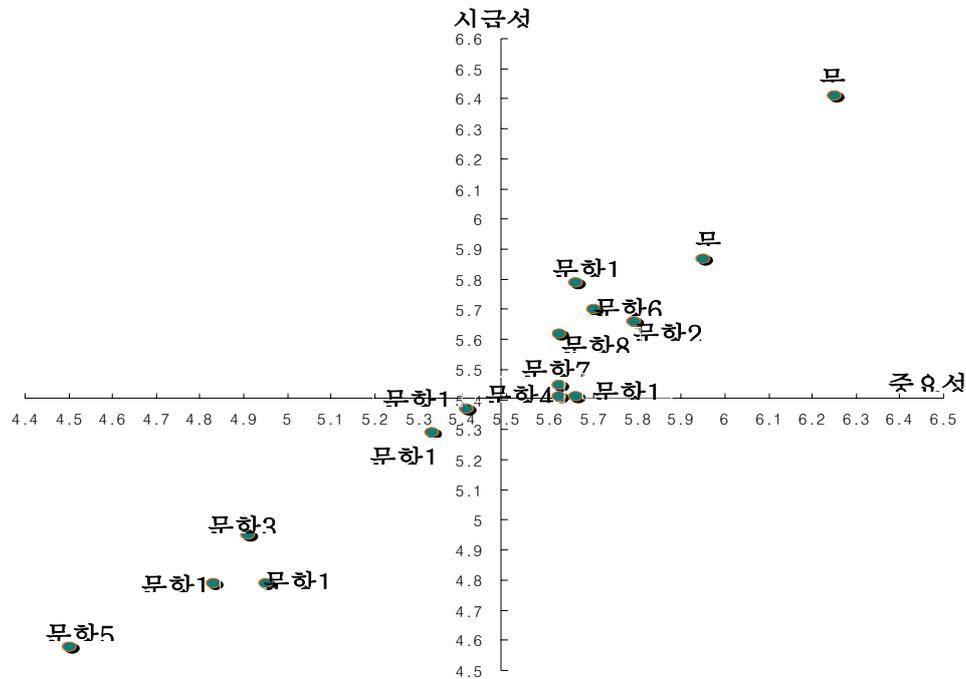
<그림 3-19>은 노인차별 해결방안에 대하여 중요성과 시급성으로 구분하여 IPA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따르면, '노인취업 및 일자리지원'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해결방안이며, 그 다음으로 '노인가 노년기에 대한 조기교육실시', 그리고 '노인차별 및 학대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도 중요성과 시급성에서 평균이상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광고 및 대중매체에 활동적인 노인이미지 제시'와 '정년제도 철폐 또는 정년연령의 조정'이 중요성과 시급성 모두가 상대적으로 평균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경로효친사상의 고양'은 중요성과 시급성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고, '노인권익을 위한 기구 신설', '노인정책 전담의 정부기구 신설', 그리고 '노인차별과 관련한 학자들의 지원강화' 등은 노인차별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시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7> 노인차별 해결 방안: 중요성 및 시급성

내 용	중요성 M(±SD)	시급성 M(±SD)	t값
1) 노인취업 및 일자리 지원	6.25(±1.11)	6.41(±0.97)	-2.14*
2) 정년제도 철폐 또는 정년연령의 조정	5.79(±1.06)	5.66(±1.09)	0.90
3) 노인정책 전담의 정부기구(예, 노인청) 신설	4.91(±1.52)	4.95(±1.68)	-0.32
4) 노인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정책 강화	5.62(±1.27)	5.41(±1.31)	1.41
5) 경로효친 사상 고양	4.50(±1.56)	4.58(±1.71)	-0.41
6) 광고 및 대중매체에 활동적 노인 이미지 제시	5.70(±0.80)	5.70(±0.95)	0.00
7) 노인들에게 노인차별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5.62(±1.17)	5.45(±1.31)	1.28
8) 세대간 교류 강화를 통한 이해 증진	5.62(±1.05)	5.62(±1.01)	0.00
9) 노인과 노년기에 대한 조기교육 실시 (근거없는 편견 제거)	5.95(±1.12)	5.87(±0.99)	0.70
10) 노인복지시설 및 서비스의 확대	5.41(±1.28)	5.37(±1.20)	0.44
11) 노인권익을 위한 기구 또는 부서 신설	4.83(±1.34)	4.79(±1.06)	0.27
12) 노인차별 및 학대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	5.66(±1.12)	5.79(±1.17)	-1.00
13) 연령차별금지법 제정	5.66(±1.37)	5.41(±1.38)	2.30*
14) 노인부양가족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5.33(±1.46)	5.29(±1.39)	0.56
15) 노인차별(인권)과 관련해 학자들의 연구 지원 강화	4.95(±1.36)	4.79(±1.31)	1.28
전체평균	5.45(±0.86)	5.41(±0.83)	1.14

* $P < .05$; ** $P < .01$



<그림 3-19> 노인차별 해결방안: 중요성과 시급성에 따른 IPA 모형

6) 노인차별에 대한 예방책

노인차별에 대한 예방책으로는 총 14개 항목이 제시되었는데,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하게 실행되어야 할 시급성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중요한 예방책으로는 '노인취업 및 일자리 강화'로 응답했으며, '언론매체를 통한 긍정적인 노인 이미지 홍보'가 그 다음으로 중요한 예방책으로 제시되었고, '노후준비의 중요성을 인식 시키고, 노후생애준비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세 번째로 중요한 예방책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원봉사 등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의 확대' 또한 상대적으로 중요한 예방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시급하게 실행되어야 할 예방책으로 중요성과 마찬가지로 '노인취업 및 일자리 지원 강화'로 나타났으며, 두 번째 시급한 사항 역시 '언론매체를 통한 긍정적 노인 이미지 홍보'로 응답하였다. 반면에 시급한 예방책의 세 번째 순위로는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제도의 구축'이었고, 그 다음으로 '자원봉사 등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라고 응답하였다. '노후준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노후생애 준비교육을 실시' 한다는 항목에서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 시급성의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응답하였고, 나머지 모든 항목들은 중요성과 시급성에 있어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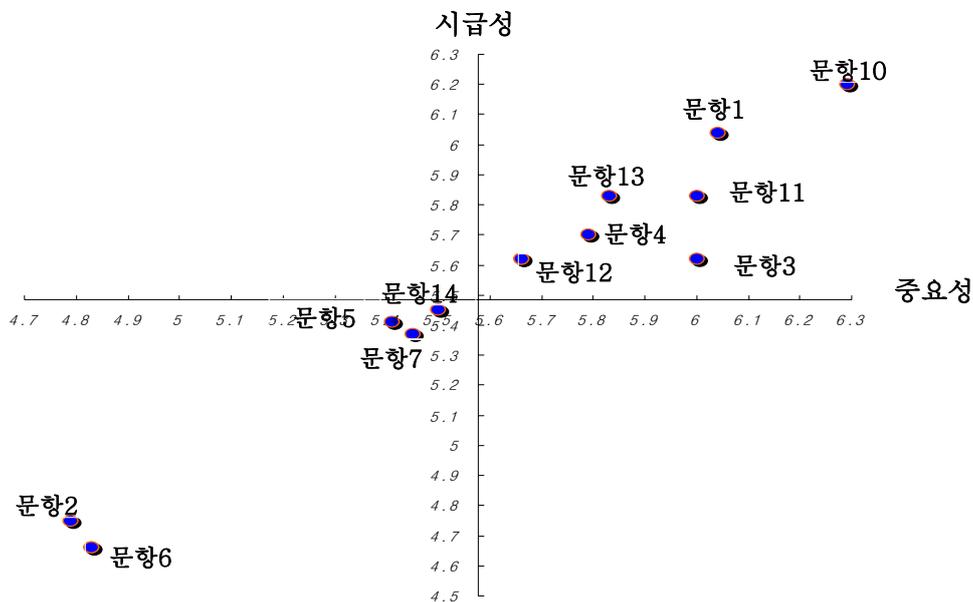
<표 3-28> 노인차별 예방책: 중요성 및 시급성

내 용	중요성 M(±SD)	시급성 M(±SD)	t값
1) 언론매체를 통한 긍정적 노인 이미지 홍보	6.04(±0.95)	6.04(±1.04)	0.00
2) 경로효친교육 강화 (학교, 직장 등)	4.79(±1.50)	4.75(±1.48)	0.56
3) 노후준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노후생애준비 교육실시	6.00(±1.02)	5.62(±1.20)	2.84**
4) 노인인권과 차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예방 교육실시	5.79(±1.02)	5.70(±1.08)	0.81
5) 세대간 교류 강화를 통한 이해 증진	5.41(±0.92)	5.41(±1.17)	0.00
6) 노인체험프로그램(교육) 강화 또는 의무화	4.83(±1.40)	4.66(±1.34)	1.69
7) 노인들에게 노인차별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5.45(±1.14)	5.37(±1.09)	0.70
8) 노인차별 및 학대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	5.66(±0.91)	5.62(±1.24)	0.23
9) 노인권익을 위한 기구 또는 부서 신설	4.83(±1.23)	4.66(±1.46)	1.00
10) 노인취업 및 일자리 지원 강화	6.29(±1.08)	6.20(±0.97)	1.00
11) 자원봉사 등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6.00(±1.06)	5.83(±0.96)	1.44
12) 기능성 장애인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구축	5.66(±1.09)	5.62(±1.20)	0.56
13)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제도의 구축	5.83(±1.16)	5.83(±1.27)	0.00
14) 노인관련 현장실무자 및 전문가에게 인권교육실시	5.50(±1.17)	5.45(±1.10)	0.32
전체평균	5.58(±0.76)	5.48(±0.75)	1.77

*P<.05; **P<.01

<그림 3-20>은 노인차별 예방책을 중요성과 시급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노인차별 해결방안에서도 제시되었지만, 예방책 역시 노인취업 및 일자리 지원강화(문항 10)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예방책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언론매체를 통한 긍정적인 노인이미지 홍보(문항 1),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제도의 구축(문항 13), 자원봉사 등 노인의 사회참여기여의 확대(문항 11) 등 중요성과 시급성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지적된 예방책들이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중요성과 시급성이 떨어지는 예방책으로는 노인체험프로그램 강화(문항 6), 경로효친사상교육 강화(문항 2), 노인에게 노인차별에 관한 교육(문항 7), 세대간 교류를 통한 이해증진(문항 5), 그리고 노인관련 현장 실무자 및 전문가에게 인권교육실시(문항14) 등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림 3-20> 노인차별 예방책: 중요성과 시급성에 따른 IPA 모형

노인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1차와 2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노인 차별의 근본적인 원인을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된 사회적 가치의 변화, 즉 '생산성과 젊음을 중시하는 사회적 가치'로 지적하고 있으며, 세대간의 이해부족과 노인 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대중매체의 역기능을 강조하고 있었다.

개인적 측면이나 제도적 측면에서 노인차별이 발생하는 유형으로는 노인 취업과 관련한 항목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개인적 측면에선 '노인고용의 기회'이었고, 제도적 측면에서는 '정년퇴직제도', '취업시 임금차별', '노인취업알선에 대한 법적 지원 미비' 등이 발생빈도에서나 심각성에 있어서 높게 평가되었다. 노인차별과 관련한 노인취업은 해결방안과 예방책에서도 가장 높은 항목으로 지적되었다. 해결방안에서는 '노인취업 및 일자리 지원'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시급한 해결방안이라고 전문가들은 생각하고 있으며, 예방책에서도 '노인취업 및 일자리 강화'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노인 전문가들은 우리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노인차별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그 원인을 우리 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가치와 이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대중매체의 역할, 그리고 세대간의 몰이해 등으로 지적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노인의 취업과 일자리를 통한 사회 참여의 확대를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사항으로 지적하였다.

제4장 노인차별 대응을 위한 정책방안

제1절 노인차별 대응을 위한 기본전제

1. 노인의 인권존중 및 국가의 인권보장 의무

본 연구결과 우리 사회 노인층을 비롯, 비노인층, 전문가 집단 대부분이 우리 사회에 노인차별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즉 노인층의 70.0%, 비노인층의 90.4%, 전문가 집단 모두가 노인차별이 편재(偏在)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 우리 사회의 노인차별과 이에 따른 노인인권 보장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노인차별금지법’과 같은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헌법 및 노인복지 관련법들을 근거로 노인차별 대응 관련 내용을 부분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므로 기본권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4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생존권 보장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34조 3항에서는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고 복지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제1조에서는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는 노인의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의 강구 및 추진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명시

하고 있다. 이외에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제39조의 5),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제39조의 6) 등을 비롯한 노인학대 관련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의 여가와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하며(제13조), 세대간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장비 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제15조)고 명시하고 있다. 고령자고용촉진법 제4조에서 고령자가 그 능력에 적합한 직업에 취업하는 것을 지원·촉진하며,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채용 또는 해고를 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고령자임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건강가정기본법 제25조에서는 노인 등 부양지원이 필요한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에 부양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강구할 것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는 노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 마련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다.

한편, 노인복지 현장에 있어서 노인인권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은 미흡한 편이었다. 최근 시설 생활노인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어 점차 노인인권에 대한 사회적 대처가 조금씩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2006년 5월 노인복지시설의 대폭 확충으로 급격하게 늘어나는 시설 생활노인의 인권에 대한 인식 제고와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생활시설 최초로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을 신설하였다. 즉 현행 노인복지법에는 노인에 대한 학대예방 및 조치 등에 대하여는 규정되어 있으나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에 관한 구체적인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에 대한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미비된 법규정을 보완하고 생활노인 가족, 시설 종사자, 지역사회 등 관련자들의 노인인권에 대한 인식제고와 학대 사례 발생시 체계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침이 제정된 것

이다. 시설 생활노인 인권보호지침은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와 국가 및 시설의 노인보호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학대받지 않을 권리,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 보장 권리, 통신의 권리, 정치·문화·종교적 신념의 자유, 개인 재산의 자율적 관리,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등 총 11가지의 권리를 선언하고, 권리선언에 따른 총 43개 항목의 '윤리강령'을 제정하였다. 또한 시설 생활노인 학대예방 및 개입 지침을 통해 노인학대 유형과 관련 기관의 역할 및 학대사례 발생시 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시설생활노인에 대한 학대예방 및 개입지침을 최초로 규정하고 신체제한을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노인학대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설 안전관리지침은 치매 등 독립적으로 거동이 어려운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출·외박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실종, 사망, 응급상황시 조치사항과 단체생활에 필요한 화재예방 및 위생관리 규정을 신설하였다(보건복지부, 2006). 이와 같은 권리선언과 윤리강령은 시설관계자의 노인인권에 대한 인식을 크게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직접적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성을 지니므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및 강제적 집행이 필요하다.

2. 노인차별의 정책적 개입을 위한 기본 패러다임 및 원칙:

제도적 환경-사회 인식의 균형적 패러다임

(Institutional Environment-Societal Awareness Balanced Paradigm : IESAB)

1) 기본 패러다임

우리 사회에서 '노인차별 없는 사회의 구현'은 노인인권 보장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의 하나이다. 노인차별 예방 및 이의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접근이 모색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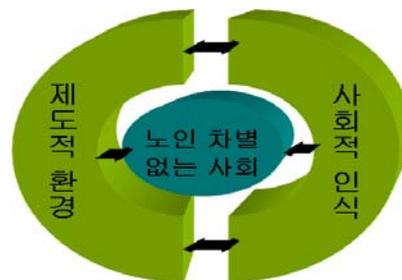
야 하며, 정책적 접근의 모색은 노인차별 정책에 대한 기본 패러다임의 정립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차별 정책에 대한 기본 패러다임으로 '제도적 환경-사회 인식의 균형적 패러다임(Institutional Environment-Societal Awareness Balanced Paradigm: IESAB)'을 제안하고자 한다.

노인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패러다임의 모색은 노인차별의 원인을 살펴봄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노인차별의 원인에 대한 본 연구의 실태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노인차별 정책에 대한 '제도적 환경-사회 인식의 균형적 패러다임'이 발전되었다. 노인차별의 원인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노인 당사자들은 노인차별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을 역할 상실로 인한 노인의 낮은 사회적 지위로 지적하였다. 두 번째 원인으로 노인에 대한 일반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들고 있으며, 세 번째 원인으로 노인복지 제도의 미비를 지목하였다<표 3-7 참고>. 비노인층이 생각하는 노인차별의 원인 역시 노인들의 생각하는 노인차별의 원인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12 참고>. 비노인층 역시 노인의 낮은 사회적 지위가 노인차별을 야기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이어, 세대간 단절과 노인 복지 제도의 미비를 들고 있다. 노인차별의 원인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도 유사한 측면이 많은데, 노인에 대한 이해 부족과 대중 매체의 부정적 이미지 강조, 생산성과 젊음이 중시되는 사회적 가치를 노인차별의 원인으로 지목하였다<표 3-24 참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인차별의 원인에 대한 노인, 비노인, 전문가의 의견은 매우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노인차별의 원인을 두 개의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노인, 비노인, 전문가 모두 노인의 낮은 사회적 지위와 노인복지 제도의 미비를 노인차별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는 노인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부족이 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하락시켜 노인이 사회적으로 부당한 처우를 받게 되는 노인차별의 근본적인 원인

이라고 생각하는 노인, 비노인, 전문가 집단의 견해를 반영하는 것이다. 결국 노인, 비노인, 전문가 모두 노인차별의 근본 원인을 노인을 위한 제도적 미성숙에서 찾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노인을 위한 제도의 미비와 함께 노인, 비노인, 전문가가 지목하는 노인차별의 또 다른 원인은 사회적 인식을 주제로 한다. 노화와 노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사회적 으로 노인에 대한 부정적 견해로 일반화되어, 노인과의 관계 형성과 노인에 대한 사회적 처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노인차별이 발생한다는 견해이다. 이는 노인차별이 발생하는 원인의 일부는 사회 구성원의 인지적인 내적 과정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노인차별의 원인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는 노인, 비노인, 전문가 모두 노인차별이 발생하는 원인을 노인을 위한 제도적 환경의 미비와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라는 두 개의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결국 노인차별이란 노인을 포함한 사회 구성원이 속한 제도적 환경과 사회 구성원의 인식 유형 즉 사회 구성원의 외적·환경적 체계와 내적·인식적 체계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한다는 것이다. 노인차별이 두 체계의 상호작용에 의해 야기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노인차별에 대한 정책적 접근 역시 제도적 환경의 외적 체계와 사회적 인식의 내적 체계 모두를 균형 있게 다루어야 함을 시사한다.



<그림 4-1> 제도적 환경-사회 인식의 균형적 패러다임
(Institutional Environment-Societal Awareness Balanced Paradigm: IESAB)

이와 같은 배경에서 제시된, 노인차별의 정책적 개입에 관한 제도적 환경-사회 인식의 균형적 패러다임이란 노인차별이 노인을 위한 제도적 환경의 미비와 사회적으로 부여된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의해 발생하는 사회적 현상임을 이해하고 노인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역시 노인을 위한 제도적 환경을 확대하고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균형 잡힌 시각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개념적 접근법으로 정의될 수 있다.

2) 노인차별의 정책적 개입을 위한 기본 원칙

노인차별의 정책적 개입을 위한 기본 원칙이란 노인차별을 예방 또는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 방안들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의미한다. 노인차별의 정책적 개입을 위한 기본 원칙은 <그림 4-2>의 하위목표 아래, 기본권 보장의 제도적 환경 고려의 원칙 및 사회적 인식 개선 병행의 원칙을 제안하고자 한다. 노인차별을 예방 또는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의 기본 원칙은 노인차별 근절을 위한 대책에 관한 본 연구의 실태조사를 근거로 발전되었다.

(1) 기본권 보장의 제도적 환경 고려의 원칙

노인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사회적 노력으로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노인의 안전과 사회 참여권의 확대 등이 제안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 노인층은 일자리 마련 등의 노후 소득 지원이 가장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있다<표 3-7 참조>. 비노인층 역시 노인 일자리 마련을 통한 노후소득 지원을 노인차별 근절의 최우선 과제로 밝히고 있다<표 3-12 참고>. 전문가 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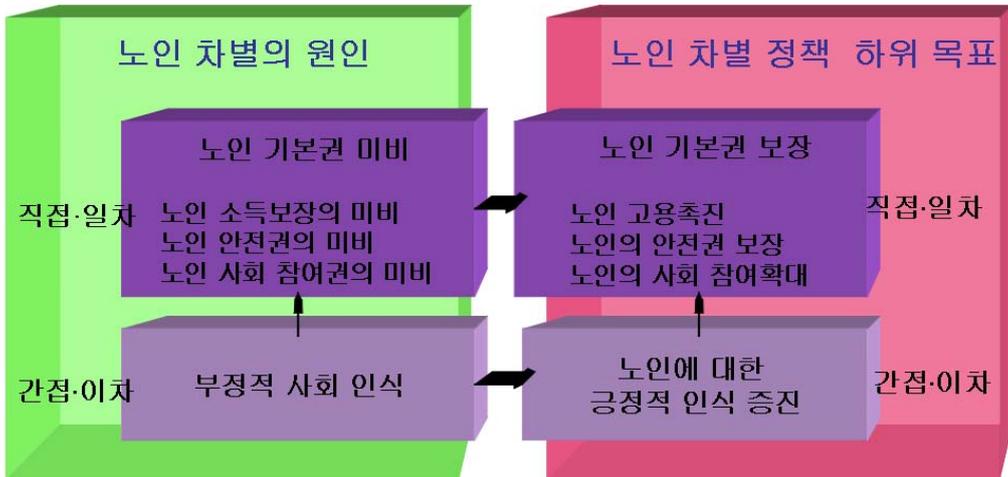
역시 노인 취업과 노인일자리 지원을 노인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일차적인 방안으로 주목하고 있다<표 3-27 참고>.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노인차별의 대책에 관하여와 같은 결과는, 노인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 노인 일자리 지원과 고용촉진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을 주축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이는 노인, 비노인, 그리고 전문가 집단 모두 노인의 일자리 마련과 고용촉진 정책을 통해 노인의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노인차별을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근거하여 노인차별 근절을 위한 정책적 개입은 노후의 소득 지원과 노인의 경제적 안정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환경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고려하여 이를 중심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본 연구는 노인차별의 정책적 개입을 위한 원칙으로 소득지원을 위한 제도적 환경 우선 고려의 원칙을 제시한다. 소득지원을 위한 제도적 환경 우선 고려의 원칙이란 노인차별 근절을 위한 정책적 개입은 노인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야기한 소득지원을 위한 제도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의미의 원칙이다.

노인차별 근절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노인은 허약한 노인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3순위로 밝히고 있다. 비노인층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역할의 부여를 노인차별 근절을 위해 세 번째로 중요한 정책으로 지목하고 있다. 전문가 집단은 노인차별 및 학대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의 강화를 들고 있다.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일반적으로 노인의 신체·심리·사회·경제적 의존성에서 비롯된다. 신체·심리·사회·경제·안전에 대한 욕구를 적절히 충족하지 못한 노인이 인간적 품위를 유지하고 타인과 사회로부터 존중받기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노인차별에 대한 정책적 개입은 노인의 신체·심리·사회·경제·안전에 대한 욕구의 충족을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즉 노인차별을 위한 정책적 개입은 노인의 욕구 충족에 대한 사회적

적 기본권을 인정하고 이를 충실히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차별 근절을 위한 정책적 개입이 지향해야 할 세 번째 원칙으로 기본권 충실의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사회적 인식 개선 병행의 원칙

<표 3-7>에 나타난 바와 같이, 노인은 노인차별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노력으로 노인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개선을 2순위로 지적하고 있다. 비노인층 역시 노인차별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노력으로 노인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개선을 노인의 일자리 마련에 이어 두 번째로 중요한 대책으로 밝히고 있다<표 3-12 참고>. 전문가 집단 또한 노인차별의 해결방안으로 노인과 노년기에 대한 조기교육을 노인 일자리 지원에 이어 두 번째로 중요하고 또 시급한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표 3-27 참고>. 이는 노인, 비노인, 전문가 집단이 일반인의 노인과 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을 노인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이차적이고 간접적인 해결방안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인, 비노인, 그리고 전문가 집단 모두 노인의 일자리 마련과 같이 노인의 소득지원을 위한 제도적 환경의 개선이 노인차별을 없애기 위한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개입으로 생각하며,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 역시 노인차별을 없애기 위해 요구되는 간접적이고 이차적인 개입으로 제도적 환경의 개선과 함께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노인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은 제도적 환경 개선만을 표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이라는 이차적 개입 전략이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뜻한다.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노인차별 근절을 위한 정책적 개입 방안의 두 번째 기본 원칙으로 사회적 인식 개선 병행의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4-2> 노인차별 정책의 하위 목표

제2절 노인차별 대응을 위한 정책방안

한국 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차별이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한 결과, 노인층의 70% 이상, 비노인층의 90% 이상이 한국 사회에 노인차별이 있다고 응답하였다<표 3-19 참고>. 그러나 이러한 노인차별에 대한 대처방안이 어떠한지에 관한 조사결과 신체적 폭력의 경우를 제외하고, 언어적, 태도적 유형에 있어서의 차별을 경험한 경우 그리고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그냥 참는다'가 50% 이상으로 각 영역별 노인차별 상황에 있어서 매우 소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5 참고>. 따라서 현재 우리 사회에 편재하고 있는 노인차별 문제를 이슈화하고 이에 따른 노인의 인권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인권보호 강화가 절실하며, 노인차별 대응을 보다

실제적 접근을 통해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음에서 노인차별 대응을 위한 개선 방안을 노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환경 구축 및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 증진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노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환경 구축

1) 노인 고용촉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

본 조사결과 노인층과 일반인 모두 제도적/규범적 차별 정도에 있어서 '노인이 할 수 있는 마땅한 일자리 찾기가 어렵다'는 항목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표 3-4와 표 3-11 참고>. 노인차별의 해결 방안 및 예방책에 있어서 노인층, 일반인 모두 '노인 일자리 마련, 노후소득 지원' 등 노인 경제활동 참여를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또한 전문가 역시 노인차별의 발생빈도에 있어서 개인적 차원에서는 '노인고용 기피', 제도적 측면에서는 '정년퇴직제도와 노인취업시 저임금'이 가장 많은 것으로 꼽았다. 노인차별 해결방안에 있어서 전문가 집단 역시 '노인취업 및 일자리 지원 강화'를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따라서 노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제도적 환경 구축은 노인차별 해결방안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행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평균수명으로 경제활동을 하려는 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불구하고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는 제한적이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근거로 노인의 고용촉진을 도모하고 있으나 주로 50대 전반 노인이 실질적인 대상이므로 정작 60대 이후 노인취업에는 실효성이 별로 없다. 또한 임의 규정이 많아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항이 실제로 운영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정년제 연장에 대한 논의가 있으나 이에 대한 근거법이 명확하지 않다. 최근 노인일자리 사업의 확산이 이

루어지곤 있지만 실행에 있어서 여러 제한점들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노인의 경제참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노인의 고용촉진에 저해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제도적 환경 구축을 위해 현재의 노인고용 저해 요소를 해소하고 보다 현실적인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노인고용 차별 금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령자 고용촉진제도의 확대, 정년제 연장, 노인일자리 사업의 활성화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1) 노인고용 차별 금지의 법적 근거 마련

정부는 2002년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을 통해 고령자 등 고용 차별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동 법 제 4조의 2에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채용 또는 해고를 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임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로 명기되어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을 위반시 사업주에 대한 법적 처벌의 수위는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 미국의 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연령에 근거하여 근로자를 차별한 사업주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등 보다 명확하고 적극적인 처벌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연령차별 금지 법제화를 통해 모집·채용, 훈련, 그리고 승진과 해고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일랜드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평등위원회(Equality Authority)와 평등심사국(Office of the Director of Equality Investigations)같은 구속력 있는 차별구제전문 담당기관을 통하여 차별구제를 집행할 필요가 있다. 고용차별사건에 대한 개별구제는 노동위원회 같은 기관이 준사법적 기능을 통해 담당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거시적 차원에서 차별시정정책과 방향제시, 차별시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작성, 홍보 및 법률적 지원서비스 체계구축 등 정책적 집행기능을 담당해 이원적이면서도 상호보완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

다(조용만, 2004). 그리고 고용에 있어서의 연령차별 금지를 고용상 노동력을 구성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속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부터, 65세 미만, 그리고 전 연령층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고령자 고용촉진제도 확대

현행법상 고령자 고용을 위한 고령자 고용촉진법이 있다. 이의 법 제12조에서 사업주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수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사업주 고령자 고용의무 조항이 있다. 구체적으로 고령자 고용촉진법의 기준고용률을 강화하여 노인고용 의무를 확대하여야 한다. 고령자 기준 고용률 제도는 3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법에서 정한 기준 고용률에 따라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2004년 12월 현재, 고령자 고용률이 기준 고용률에 미달한 사업장은 1660개 기업 중 928개로 55.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노동연구원, 2002). 그러나 고령자 기준 고용률 적용이 강제화 되고 있지 않아 노인고용 촉진에 실질적 제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 기준 고용률에 미달한 기업에 대해 보다 엄격한 규제를 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기준 고용률 적용이 엄격히 준수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준 고용률 이행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고도 특정 회수 이상 계획 이행에 실패한 기업에 대해 일정액의 벌금을 부과한다 등의 벌칙이 규정되어야 한다. 고령근로자의 고용확대를 위하여 권고사항으로 되어있는 고령근로자 고용률을 장애인고용촉진법과 같이 강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조차 법정 고용률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정부나 공공기관은 특히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므로 제도시행을 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이의 법에서는 고령자인재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지정기준·절차·취소의 요건에 관한 사항(법 제11조 및 제11조의2) 및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기금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법 제14조제2항). 이러한 조치는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고령자인재은행은 실제적 활동이 미흡하며, 고용촉진을 위한 기금도 사업주에게는 유인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조직의 강화 및 노인고용 장려금 등 인센티브의 현실화 등 고용촉진을 위한 제반 사회적 환경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선택적 근로시간제, 작업시간 단축, 임금피크제의 도입, 점진적 퇴직제도의 도입, 업무조정에 따른 일자리 나누기(work-sharing)의 확대, 직무순환(중노동에서 경작업으로 전환), 파트타임제 등 고령자를 위한 고용연장형 근무형태 등이 제안될 수 있다(장지연, 2002). 또한, 직무급제, 연봉제 등 성과주의 임금체계를 도입해 기업의 고령인력 수요를 높이고, 근로자 개인이 주도적으로 직업능력 향상을 통해 계속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의 유연화와 장기간 휴가를 통한 직업훈련 및 교육 기회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개인별 보충소득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기업에서 고령자에 적합한 고용·근무형태를 도입시 정부가 개인에게 임금 감소분의 일정액을 보전해 주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기업들은 이 제도로 탄력적인 고용형태를 유지할 수 있고, 고령 근로자는 소득감소 부담 없이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고령자에 대해서 기간의 제한 없이 기간제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령자 관련 고용연장 규제도 완화되어야 한다. 고령자 전담 기술전문학교 설립과 전직 지원장려금 요건 완화,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확대, 고령자고용촉진 장려금 인상 등의 다양한 대책들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3) 정년제 연장

퇴직제도에 의한 노동 시장으로부터의 소외는 구조화된 노인차별의 대표적 유형이라 할 수 있다. 2004년 12월 말 현재 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 1,660개소중 정년제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은 95.4%에 해당한다. 정년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 중, 정년을 55세로 정하고 있는 기업이 43.6%, 58세가 21.8%, 60세 이상을 정년으로 정하고 있는 기업은 15.2%에 불과했다. 이들 기업의 평균정년은 56.8세이나 체감 정년은 49세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노동연구원, 2002). 현행 「고령자 고용 촉진법」 제19조에 정년 연령을 60세로 정하고 있는데, 현실에 있어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이는 임의조항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였을 뿐이다. 한편 법상 60세의 정년 연령도 정년제 규정을 갖고 있는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 낮은 연령이라 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 2006년 말부터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연장하고 있다. 핀란드는 정년을 68세로 정하고 있으며 독일은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일본은 98년부터 60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2013년까지 65세로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노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에 의해 60세로 규정된 정년을 과학적 근거와 외국 국가 사례에 기초하여 상향 조정해야 한다. 그러나 정년 보장이 법적 강제성을 갖지 못하는 상태에서의 정년 연장은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려운 만큼, 현행 권고 또는 장려 조항을 규제가 가능한 의무 조항으로 전환하여 정년 연장의 실질적 의미를 살릴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60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하도록 하기 위해 지원제도를 확대하여야 할 것으로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 후 재고용하는 하는 사업주에 대해 차등 장려금을 제공하는 한편, 정년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등 실제적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

(4) 노인일자리 사업의 활성화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의 진전으로 노인의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러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이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다른 정부 부서에서도 부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노인 일자리사업은 생계유지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통한 사회참여의 한 통로로서 노후소득의 보충적 의미를 갖는 노인일자리와 관련된 사업을 의미한다. 그동안 정부지원 노인 일자리사업은 양적 접근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질적 접근에 대한 고려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일자리를 늘리는 수적 증가에 급급하기보다는 일자리의 질적 향상에 보다 역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체계적인 재교육 프로그램과 취업·고용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한편, 성공사례의 보급을 통해 노인일자리 사업이 진척되고 이의 적용 및 응용을 통해 노인일자리사업이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한편,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부처간 업무의 중복성이 두드러짐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조정과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이 많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담당하는 부처 사이의 명확한 업무 분장과 협조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2) 노인의 안전과 사회적 참여의 권리 확대

(1) 노인학대 예방 및 대처

본 조사 결과, 노인차별 인지 영역에 있어서 노인집단은 언어적 차별인 '노인이라는 이유로 나를 무시하는 말이나 심한 표현을 들은 적이 있다'라는 항목이 노인차별

로 인지하는 점수가 가장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비노인집단 역시 같은 항목에서 가장 높은 인지 수준을 보여 주었다. 또한 비노인집단의 경우 신체적 차별 항목인 '노인의 외모에 대해 거부감을 표현하거나 싫어하는 느낌을 준 적이 있다' 역시 노인차별로 인지하는 수준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내용은 개인적으로 노인을 무시하거나 노인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개연성과 함께 노인차별에 대한 규정 마련 및 처벌적 요소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대처가 중요한 이슈로 제기된다.

노인학대는 개인적 차원에서 행해지는 노인차별로 가장 극단적 인권 침해 유형에 속한다. 노인학대의 예방과 대처에 관한 정책적 개입은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의 우선 과제라 할 수 있다. 노인학대는 그동안 가정 내 문제로 인식하는 한편, 외부에 노출도 되지 않아 국가개입이 늦어졌다⁴⁾. 2004년 노인복지법의 개정 시행으로 노인학대의 정의가 규정되었고, 긴급전화 및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신고의무, 응급조치, 보조인선임, 금지행위, 학대조사 등에 관한 내용을 법제화함으로써 정부 개입의지가 분명해 졌다. 이에 따라 2006년 현재 노인복지법(제39조의 4)에 따라 각 시·도별로 1개소씩(부산·경기 각 2개소) 총 18개의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학대예방센터)이 운영 중(2006년)이며, 2007년도에는 23개소로 확대·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긴급전화(1389, 2006년 7월 이후 129번으로 통합 운영)를 설치·운영하고 있어서 노인학대 피해자가 즉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2006년 노인학대 예방교육과 홍보, 관련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였다.

4) 1997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가족 내 구성원의 학대와 폭력을 처벌, 예방하도록 했음에도 아동과 여성 위주로 법이 운영됨으로서 노인은 정책 대상에서 소외되어져 왔다. 2000년대 들어서 민간기관이 노인학대 상담을 시작했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업지원으로 운영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노인복지법(제39조의 6)에 노인학대에 대한 신고의무를 의료인, 시설종사자, 상담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노인관련 자에게 부여한 것이나 모든 국민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고 노인학대 심리·심문시 법정대리인, 가족이 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한 점도 노인인권 보호에 기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으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인식 부족으로 노인학대 신고율(8.3%)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비율(27.5%)보다 매우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운영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24시간 긴급전화 운영, 노인학대 현장 조사 및 지속적 사례관리 등의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6).

다음은 실효성 있는 노인학대 예방과 대처를 위한 제도적 개선점으로 '지방 노인학대 예방센터의 증소,' '노인학대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시행,' '잠재적 노인학대가족 지원,' '피학대 노인을 위한 서비스의 전문화와 다양화,' 그리고 '가해자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이 제안된다.

① 지방 노인학대 예방센터의 증소

현재 16개 광역자치구별로 1개소에 불과한 지방 노인학대예방센터를 광역자치구당 2개소로 증소해야 한다. 지리적 접근성 측면에서 지방 노인학대예방센터의 추가 설치가 시급한 서울과 경기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확대하고, 여타 지역의 경우 지리적 접근성 및 노인학대 사례의 발생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단계적으로 확대·추진하여야 한다.

5) '상해'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제55조의 2), '폭행, 성폭력 등 유기·방임, 구걸'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제55조의 3), '노인 증여 물품 목적 외 사용'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제55조의 4)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형법에는 '학대'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법제 273조), '존속학대'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다.

② 노인학대 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시행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은 각 센터별로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어 교육의 질적 우수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노인학대예방 교육의 질적 제고와 교육적 효과의 확대를 위해, 전문가에 의한 노인학대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우선되어야 한다. 특히, 노인학대의 특성상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 '지역사회주민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 등 대상자에 따라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한다.

③ 잠재적 노인학대가족 지원

노인학대의 발생 가능성은 노인부양자의 부양부담과 높은 상관성을 보이는 만큼 노인부양자의 부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일시보호(respite care), '단기보호, 주간보호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노인 부양자를 위한 일시보호 서비스는 노인부양을 일정 기간 동안 대리인이나 대리기관에 의뢰함으로써 노인부양자의 신체·정신적 부담을 완화하여 학대 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④ 피학대 노인을 위한 서비스의 전문화와 다양화

현재까지 가족으로부터 격리가 필요한 피학대 노인은 지역사회 노인주거복지시설이나 임시쉼터에서 보호되어 왔다. 쉼터에 입소한 피학대 노인에 대한 보호와 서비스는 시설 담당자와 노인학대예방센터의 연대 책임으로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노인주거복지시설이나 일반 쉼터의 경우 피학대 노인에게 요구되는 전문적 서비스 제공은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피학대 노인의 복합적 욕구에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전문상담터의 설립이 요구된다.

⑤ 가해자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

피해 노인을 위한 보호 및 서비스의 제공과 함께 가해자에 대한 개입 역시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노인학대 가해자의 상담 및 치료서비스 참여를 의무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가해자에 대한 개입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가해자의 학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2) 성년 후견인 제도의 도입

노인 관련 전문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문가와의 자문회의를 통해 제안된 내용에 따르면, 중풍이나 뇌출혈 등으로 인해 언어장애, 기능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노인 역시 기본적인 수치심을 가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고려가 매우 미약할 때 차별이라는 개념을 고려하게 된다고 하였다. 즉 노인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경제적 결정은 본인의 자기결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노화로 인해 인지능력이 제한적인 노인은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특히 노인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할 가족이나 친지가 없을 경우, 노인의 자기 결정권은 공적 지원체계를 통해 보호되어야 한다. 노인이 미래의 인지력 저하에 대비하여 미리 후견인을 정하고 계약함으로써 자기 결정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성년 후견인 제도를 통해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성년 후견인 제도의 대상을 '정신상의 이유로 판단 능력이 부족한 경우'로 제한하여 경직적인 제도로 운용하기보다 일반 노인이 미리 후견인을 정하는 전문 후원인(임의 후견인) 제도와 같은 유연하고 포괄적인 제도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3) 민간 음부즈맨 제도의 도입

노인수발보험 제도의 도입과 함께 시설 거주 노인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설 거주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민간 옴부즈맨 프로그램의 도입을 제안한다. 노인관련 시설에서 겪는 문제, 학대, 인권침해의 사례를 발견하고 이를 고발조치할 수 있도록 옴부즈맨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들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옴부즈맨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그리고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기구의 설립, 인권침해의 통보 의무 규정의 마련, 통보 태만이나 인권 침해자에 대한 벌칙, 인권 침해 사건의 조사기구등 다각적인 지원체제가 필요하다.

(4) 노인 범죄 피해 예방

노인은 신체·심리적 취약성(frailty)으로 인해 종종 범죄의 피해자가 된다. 노인의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의 범죄에 대한 자각과 범죄 예방법에 관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자원이 박탈된 취약 노인의 안전 지원을 위한 사회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경찰의 노인 범죄 예방 교육과 노인 집중 거주 지역의 순찰 활동 강화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SAFE Project(Seniors Against a Fearful Environment)와 같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⁶⁾

(5) 정보 접근성 확대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수위를 다투는 정보화 사회와 고령화 현상을 동시에

6) L. Norton and M. Courlander, "Fear of Crime among the elderly: The Role of Crime Prevention Programs," *The Gerontologist*, Vol.22, No.4, 1982, p.389.

경험하고 있다. 사회는 정보 전달 매체의 다양화로 일반인들이 정보 홍수의 시대를 풍미하는 것과 달리 아날로그 세대로 새로운 정보 전달 매체에 익숙하지 못한 노인들은 정보로부터 소외되고 있다. 노인들이 정보 접근을 위해 주로 의존해 온 활자 매체가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대체됨에 따라 노인들의 정보 접근성 역시 축소되고 있다. 한 가지 예로 2006년 6월 기준 우리나라의 20대 이하의 인터넷 이용률이 98.1%인 반면 60대 이상은 15.2%에 머물고 있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06). 이와 같은 현상은 양세대간 정보 접근성에 많은 차이가 없는 서구사회에 비해 매우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3), 정보화의 능력 정도가 노년기의 삶의 질과 사회생활 및 가족관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다. 정보격차를 통한 노인차별의 예방 및 완화를 위한 노인의 정보 접근성을 확보를 위해서는 다음의 대책들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① 노인 친화적 정보 전달 매체의 다양화

전형적으로 노인은 활자 매체를 통해 정보에 접근해 온 편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정보 전달 매체로서 컴퓨터와 인터넷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활자 매체는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다. 따라서 노인의 정보 접근도를 높이기 위해 노인의 주된 정보 획득 수단인 활자 매체가 다양화되고 확대되어야 한다. 노인 신문, 노인 잡지, 노인 소설, 노인 만화 등 다양한 유형의 활자 매체가 개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활자 매체에 부과된 세제의 감면 등 제도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 노인이 TV 시청에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점을 고려하여, TV를 노인의 정보 전달 매체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② 노인 인터넷 교육 확대

우리나라 노인의 70%가 컴퓨터를 사용해 본 경험이 없다는 통계가 보여주듯 대부분의 노인들은 컴퓨터와 인터넷 이용에 익숙하지 못한 편이다. 인터넷이 주된 정보 전달 매체로 기능하고 있으며 또 그 기능이 확대될 것으로 예견되는 만큼 컴퓨터와 인터넷 교육은 노인의 정보 접근도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노인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컴퓨터와 인터넷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기 확보의 어려움으로 교육 수요에 비해 교육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노인 교육의 기회가 제한적인 농·어촌 노인을 대상으로 한 컴퓨터 교육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다. 노인 인터넷 교육의 확대를 위해, 지역 학교의 컴퓨터실을 개방하고 컴퓨터에 익숙한 청소년을 자원봉사 교사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③ 노인 대상 인터넷 사이트 개발

노인과 노인 가족을 대상으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독립 인터넷 사이트가 개발·확대되어야 한다. 사이트의 주 방문 대상자가 노인임을 고려하여 활자의 크기, 사이트 디자인과 구성 등이 노인 친화적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미국의 시니어넷과 일본의 멜로우넷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6) 물리적 접근성 확대

물리적 접근성은 노인의 재화 및 서비스의 이용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강조된다. 물리적 접근성 확대 방안을 시설 이용의 편의성 증진, 지리적 이동의 편의성 증진을 중심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① Barrier Free 시설 확대

대부분의 주거 시설과 이용 시설은 신체적 기능에 장애가 없는 비노인 인구를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따라서 신체적 기능이 제한적인 노인이 사용하기에 여러 면에서 불편하다. 시설의 비노인 중심적 설계는 단순한 불편의 수준을 넘어 시설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편의의 접근성 제한이라는 문제를 야기시킨다.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상 시설 이용에 장애를 가져올 수 있는 모든 물리적 환경을 수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효가 별로 크지 않은 편으로 판단된다. 공관서, 공공주택 등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계단 높이 낮추기, 문턱 단차 제거, 승강기 설치, 보행용 손잡이 설치 등 노인이 이용하는데 장애가 없는 Barrier free 시설을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③ 고령자 가구의 주거기준 설정 및 주택개조 지원

고령자 가구(65세 이상 부부 또는 독신)의 50%가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이고, 노인 주거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다. 특히 열악한 주거환경 때문에 주택 내에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고령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고령자 가구가 타인의 도움 없이 안전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 2005년 12월 고령자 가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주택 기준을 마련하였으나, 고령자 가구의 안전성, 편의성 제고를 위한 주택개조 지원 정책은 미비한 편이다. 기존 고령자 주택의 쾌적성, 안전성 및 편의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고령자가구 주택개조 기준’을 토대로 고령자가구 특성에 맞는 최소 주거공간 규모⁷⁾ 및 안전기준⁸⁾ 등을 마련하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이

7)

가구원수	표준 가구구성	실(방) 구성	총면적(m ²)
1인(고령자)	고령자 1인 가구	1 DK	18-25 (5.5-7.6평)
6인(고령자 포함)	고령자부모+부부+ 자녀 2	4 DK + 18m ²	67(20.3평)

에 따라 「고령자 주거지원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고, 고령자의 특성(거주지역, 주택소유여부, 건강상태)에 따라 선호하는 주거공간에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이 추진되어야 한다(선우덕, 2006).

② 교통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

노인 관련 현장에서 근무하는 전문가들과의 회의 결과, 노인복지시설 기준이 다른 연령층이 이용하는 시설과 비교해서 과연 근거가 있는 것인지, 즉 도시설계(횡단보도의 보행시간, 육교 등)에 있어서 젊은 층 위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한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되었다.

현 도로 및 교통 상황은 노인의 이동권 보장에 취약한 편이다. 도로·교통분야 정책 수립시, 고령친화적 요소의 반영이 미흡하다. 65세 이상 노인의 68.9%가 교통수단으로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지만, 횡단보도나 계단 오르내리기 등과 같은 불편

1) K: 부엌, DK: 식사실 겸 부엌

2) 숫자는 침실 또는 침실 활용이 가능한 방의 수(예: 4DK는 침실 등 방 4개, 식사실 겸 부엌)

*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06).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 2010) 시안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p. 32. <표> 고령자가구의 최소 주거공간 규모(안).

8)

안전성 확보	단차 제거	출입구, 문턱 등 바닥의 단차 제거
	바닥 미끄럼 방지	현관, 욕실, 거실 등 바닥재 교체
	안전손잡이 설치	현관, 욕실, 화장실에 손잡이 설치
독립성 지원	출입구 폭 확보	현관, 방, 화장실 등의 폭은 80cm 이상 수준
	설비개조 (욕실, 화장실, 부엌)	양변기로 교체, 싱크대 교체 등

*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06).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 2010) 시안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p. 32. <표> 고령자가구의 최소 안전기준(안).

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령’에 따라 고령친화적 도로, 교통시설 설치기준을 적용·시행해야 한다(선우덕, 2006). 우선 노인의 신체적 제한성을 고려한 교통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예를 들어 장애인 콜택시와 장애인 셔틀버스와 같이 이용자의 기능적 욕구를 고려한 교통 체계가 노인을 대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기능적 욕구가 유사하다는 점에서 장애인을 위한 교통 체계를 생활 기능상의 장애가 있는 노인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방안이 고려된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저상 버스 도입이 확대되어야 한다. 도로의 평탄도(evenness)를 높여 노인이 휠체어 또는 보행 보조기를 사용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해야 한다.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 기간도 연장하여 노인이 뛰지 않고 편안한 걸음으로 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스쿨존(School Zone)와 같이, 노인 출입이 잦은 노인 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실버존(Silver Zone)을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또한 고령운전자가 증가함에 따라 전반적인 교통정책의 재검토가 반드시 행해져야 하며, 고령자 운전 면허제도를 개선하여 5년마다 적성검사를 통해 신체능력 측정, 위험 고령운전자에 대한 무료 교통안전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2.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 증진

본 연구결과 노인차별의 원인으로 노인층과 비노인층, 전문가 집단 모두 비슷하게 ‘노인의 낮은 사회적 지위’, ‘노인에 대한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 ‘노인(노화)에 대한 이해부족’ 등을 지적하였다<표 3-7, 표 3-12, 표 3-24 참고>.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노인차별의 원인이며 동시에 노인이 경제·사회적으로 차별 받은 결과이기도 하다.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노인을 고용의 기회로부터 소외시키거나 사회적 참여의 기회를 제한한다. 결국 사회참여 기회로부터 소외된 노인은 의존적이고 수동적 존재

로 남게 된다. 노인의 의존성과 수동성은 노인의 발달적 특성으로 강조되고 노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으로 발전되어 노인차별의 근거를 제공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노인차별의 이차적이고 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증진함으로써 노인의 고용과 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여 노인차별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한 정책방안으로 전문가 집단은 ‘언론매체를 통한 긍정적인 노인 이미지 홍보’ 또는 ‘노후준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노후생애준비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표 3-27 참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1) 노인차별과 인권에 대한 사회적 교육

노인차별과 인권에 대한 교육은 노인집단, 비노인집단, 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전 사회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① 노인 세대 내 교육 (노인 대상 교육)

개인적, 제도적/규범적 차별 항목에 있어서 노인 집단과 비노인 집단간에 차별 인지 정도가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본 결과, 대다수의 항목에 있어서 노인보다 일반인이 더 ‘노인차별이다’라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노인차별의 예방과 해소책을 찾는 데 있어서 노인차별과 인권에 대한 노인 자신의 의식 증진이 우선적으로 시작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노인차별과 인권에 대한 의식 부족으로 대부분의 노인들은 차별적 사회 환경을 수용하거나 이에 적응해 왔다. 차별의 피해자인 노인 자신이 노인차별의 부당함을 인식하고, 노인차별을 사회·구조적 문제로 이해하며, 연령으

로 인해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자신에게 있음을 의식할 때 노인차별 없는 사회를 기대할 수 있다. 노인차별과 인권에 대한 의식 증진을 위해, 이를 주제로 한 노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노인 교육시설과 노인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보급해야 한다. 노인 스스로 교육과 그 경험을 통하여 변화를 추구하고 사회일반의 고정관념이나 편견 등에 대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노인차별의 완화를 추구하는 기본전제이다. 또한 이를 통하여 노인들을 역량강화 할 수 있도록 도와 스스로 권익신장운동을 벌이는 등 사회의 의식의 변화를 이끌어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고쳐나갈 수 있게 하고 사회는 이러한 노력을 지지하여야 할 것이다.

② 타 세대 교육 (비노인 대상 교육)

본 연구결과 노인층 집단은 노인차별 문제 해결방안에 있어서 31.1%(153명)가 '노인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이 행해져야 한다고 하였다<표 3-7 참고>. 마찬가지로 <표 3-12>에 따르면, 비노인층 역시 43.9%(252명)가 같은 의견을 보여 비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노인 이해 교육이 일반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사회적 규범 습득과 가치관 형성의 초기 단계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필요성이 크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노인차별과 노인인권 교육은 동 주제에 관한 초·중·고등 교과 개발과 단회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아동과 청소년이 노인과 노화에 대한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도서를 소개하고 이를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필수 도서로 선정하는 것도 효과적인 전략일 수 있다. 최근 노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고령자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과과정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매우 바람직한 일로 더욱 이러한 노력이

9)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06)는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통하여 고령사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현행 사회, 실과(기술·가정), 도덕 교과서 등을 수정·보완하고 2007년도부터 사용할 계획으로 발표하였다. 현재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 바른생활에 '노인정 앞에 노인이 앉아있는 삽화'는 노인의 비활동적 모습의 고착을 우려하며, 초등학교 5학년 도덕 교과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노인차별과 인권에 대한 일반인 대상의 교육은 사회 교육의 형태로 평생 교육 체계 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노인차별 금지와 노인인권 존중을 주제로 한 사회적 캠페인을 통해 비노인 세대에 대한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비노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학교에서의 정규교육은 물론 사회나 복지단체, 공공기관, 기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

③ 전문가 교육

실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자문회의 결과, 노인복지시설(생활시설)에서 노인들을 유아화하거나, 탈성적(脫性的), 무시하는 태도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 변화를 위한 교육이 매우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즉 노인의 인권에 관한 인식을 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차별적인 태도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은 노인과 접촉이 빈번한 만큼 노인차별과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이 요구된다. 즉,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대표적 전문·준전문가들인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가정봉사원, 간병인,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인차별

서에 있는 ‘노인이 누워있는 모습’은 노령자를 병약한 모습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또한 중학교 3학년 사회 교과서에 ‘고령화 사회에서는 노인의 질병과 고통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늙고 병든 인구만 늘어나, 사회적으로 큰 짐이 될 뿐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노인에 대한 편견 의식의 고착이 우려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차기 교육과정 개정 및 교과서 개편 방향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 노인에 대한 태도, 노인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하여 노인을 부담스러운 부양 대상으로만 보는 태도를 극복하고, 노령화 사회에서의 노인의 적극적인 역할변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초·중·고 2, 3학년 과정에 연령차별, 연령 평등과 노인 존중, 세대 차이와 세대 갈등 그리고 세대공동체의 구현을 명시하여 단순한 연령차이에 따른 부당한 차별을 비판하며, 세대간의 가치관이나 생활방식의 차이에 따른 갈등을 적절히 해결함으로써 세대공동체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윤인경 외, 2006).

또는 인권 침해적 요소들은 무엇이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처방안은 어떤 것인지에 관한 전문적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는 현재 노인의 특정한 성향이나 조건을 다룰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노인을 위해 일하는 전문가들조차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매자, 1978; 송미순, 1984; 이해원, 1999에서 재인용). 따라서 노인과 함께 일할 지식, 기술, 가치를 소유한 전문인력 양성은 물론 현재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의식 변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재교육 등이 요청된다.

2) 전문교육 기회의 확대

노인 관련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노인차별 방지 및 근절을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평생교육을 꼽았다. 즉 평생교육 체계 속에서 일반시민의 의식교육을 통해 집단 또는 지역 이기주의가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의 교육권 확보는 전문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노인교육은 전적으로 사회교육에 의존해 왔다. 일부 대학에서 '만학도 특별 전형'을 두어 고령자 입학할 장려하고 있으나 노인이 대학에 입학한 사례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노인은 학위 취득의 필요성이 크지 않고 대학 과정 수행에 요구되는 신체·인지 능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정식 입학을 통해서만 대학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현 제도 내에서 노인이 전문교육에 대한 권리를 보장 받기란 쉽지 않다. 노인의 전문교육 접근 기회를 높이기 위해, 수업 참여자의 15% 내에서 지역사회 노인이 대학에 정식 등록 없이 관심 있는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한 독일식 노인 교육 제도(한정란 외, 2006)의 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평생교육은 노인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발전시키는데 자신감을 부여하고 자신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변화시키는데 기여함은 물론 노인세대간 그리고 노인과 다른 세대간 경험 및 교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차별적 시각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노인 대상 소비자 교육

노인의 소비자 의식을 증진하고 합리적인 소비행동을 강화하기 위해 노인 대상 소비자 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 2006년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소비자 피해를 위한 리플렛과 교육자료를 발간하여 관련 단체에 배포¹⁰⁾하였는데, 이는 간단한 홍보 수준에 머물고 있다. 노인교육 기관을 중심으로 노인대상 소비자 교육이 지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교육기관에 따라 교육의 내용과 강사의 수준이 다양하다. 교육의 질을 일정선 이상 담보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원과 같은 전문성 있는 기관이 주관하여 노인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과 강사 교육·재교육 체계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노인 상대 사기의 표적이 되기 쉬운 반면 노인 교육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농·어촌 지역 노인을 위해 방문 교육 프로그램이 시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서도 도시노인과 농촌노인들의 제도적/규범적 노인차별에 관한 관점비교에 있어서 '노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거나,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항목에서 도시노인들보다 농촌 노인들이 상대적으로 더 노인차별적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그림 3-1 참고>.

4) 세대통합 프로그램의 확대

10) 보건복지부는 판단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이 사기꾼의 과잉친절 및 유희제공 등의 미끼에 피해를 당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의 노인피해 신고사례를 파악하여 사기방지 홍보 리플렛과 교육자료를 발간하였다. 리플렛은 10가지 피해유형과 피해예방을 위한 요령, 피해발생시의 신고기관을 담았으며, 전국 53,000개 경로당 및 읍·면·동, 보건지소, 노인단체 등에 배포하여 항상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노인단체 행사 및 활동 시에 사기예방을 위한 교육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인상대 사기 피해사례 및 대응' 책자를 발간 전국 시·군·구, 노인복지관 및 노인단체에 배부하였다(보건복지부, 2006).

제도적 측면의 노인차별의 현상에 대한 세대 간의 조사결과, 거의 모든 항목에서 비노인층이 노인층에 비해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표 3-22 참고>. 즉 각 항목에 대한 설명을 수긍하는 정도가 높다는 의미이며, 결국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제도 및 통념들이 노인차별적이라는 점을 비노인층이 노인층보다 더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노인이 되어 이혼 또는 재혼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참거나, 혼자 사는게 땀땀하다'라는 항목에서 가장 큰 세대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비노인층은 노년기의 재혼과 이혼에 대해 노인층보다 훨씬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정보화 시대에서의 노인소의 현상으로 IT 상품이나 정보채널에 대한 노인차별적 환경에 대해서 노인보다 비노인층들이 훨씬 더 수긍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노인 일자리의 부족'과 '노인문화 부재와 여가시설의 부족'은 노인층과 비노인층 모두 노인차별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세대간의 노인차별 인지의 차이를 고려하여 세대간 이해 증진과 통합을 위해 노인 세대와 비노인 세대가 함께 하는 세대 통합형 서비스, 프로그램, 시설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청소년, 청장년, 노인의 삼 세대가 한 팀을 이루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삼세대 자원봉사 프로그램, 청소년이 노인에게 핸드폰과 컴퓨터 사용을 지도하고 노인이 청소년에게 붓글씨를 지도하는 사제동행 프로그램, 특정 분야에 전문적 경험이 있는 노인이 동일 분야에 진출하고자 하는 청소년의 진로를 지도하는 Mentor 프로그램 등이 제안된다. 세대간 교류 프로그램은 젊은층과 노년층이 다양한 활동을 함께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접촉할 수 있게 하고 상호 이해를 높일 수 있으며, 노인과 노인문화를 젊은 층에게 올바르게 이해시키고 노인차별주의를 예방하거나 성향을 줄이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난 바(김수현, 1999; 이영숙 · 박영란, 2002; Aday, 1993) 이의 프로그램이 적극 권장되고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5) 대중매체로부터의 노인소외 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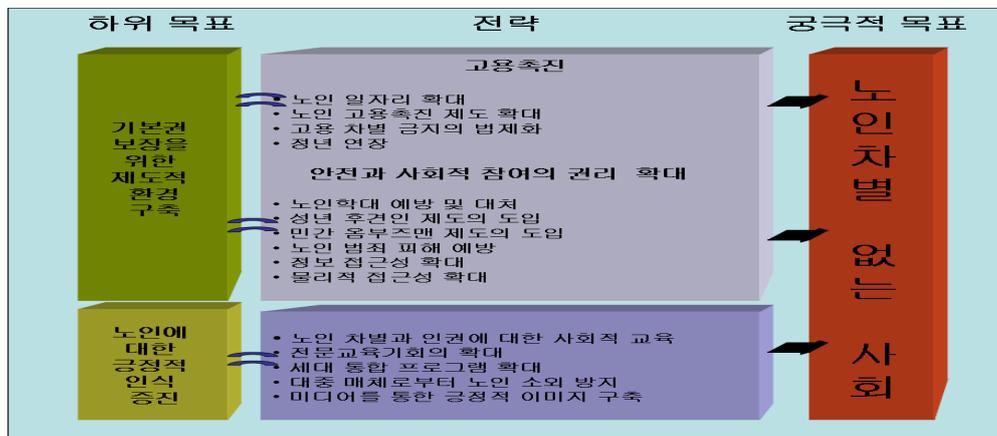
노인이나 비노인층 모두 '대중매체에서 노인을 위한 배려가 적다(예: 무시하고 소외되는 모습이 빈번하다, 노인등장 인물이 적게 나온다 등)'에 동의하고 있었다. 이는 노인층의 경우 지역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데, 즉 농어촌 노인들이 도시 노인들보다 그렇다고 응답하였다<표 3-17 참고>. 이는 농어촌 지역 노인층의 경우 도시 지역 노인층보다 일상적 삶에 있어서 노인들을 중심으로 생활하므로 대중매체에서 노인에 대한 소외를 더욱 느끼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전문가 집단의 경우 노인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광고 및 대중매체에 활동적인 '노인'이미지 제시'가 시급함을 지적하였다.

오늘날 도서, 신문, TV, Radio 등의 대중매체가 주소비자를 비노인 인구로 규정함으로써 노인이 구매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대중매체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 이는 노인을 주 대상으로 한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프로는 물론이고 대중매체를 통해 다양한 노인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일본과 비교된다(염장호 외, 2000).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의미 있고 일정한 지위를 갖는 집단이 대중매체에 자주 등장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노인이 소비할 수 있는 대중매체를 확대하고 노인을 주요 독자로 한 도서와 신문의 증가와 노인의 책임기 문화를 확대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의 개발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방송 위원회가 주관하여 TV와 Radio 프로그램의 일정 비율을 노인 대상 프로그램으로 편성하도록 권고하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6) 미디어를 통한 노인의 긍정적 이미지 구축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델파이 조사결과 노인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언론매체를 통한 긍정적인 노인이미지 홍보’가 중요성과 시급성에 있어서 2순위로 지적되었다<표 3-27 참고>. 노인차별은 노인의 부정적 이미지 그리고 노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비노인층 인구가 노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와 편견을 개선하는 것이 노인차별의 예방과 해소에 필수적이다. 그러나 일반인의 시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대중매체가 노인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투영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편견과 왜곡된 시각을 조장한다는 시각이 있다. 한 연구에서는 광고가 개인 및 사회의 가치를 변화시키는 기능을 강조하면서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형성을 위한 공익광고도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김미혜 · 원영희, 1999). 따라서 대중매체에서 주체적이고 건강한 삶을 사는 노인의 모습을 소개하는 등 노화와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강조하여 비노인 인구의 왜곡된 시각을 바로잡고 노인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제와 적극적 활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림 4-3> 정책적 개입 전략

제5장 요약 및 결론

오늘날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 현상이 현저하며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사회구조적 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노인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즉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산업화, 정보화, 도시화, 핵가족화 등 사회의 제반 환경변화는 노인의 지위와 역할을 약화시키고 경제활동을 비롯한 각종 사회활동에서 배제시키며 세대간 단절이나 갈등을 낳고 노인층을 가정이나 사회의 부담계층으로 인식해 그릇된 편견이나 차별의 상황을 야기하기도 한다.

노인인권 보장의 측면에서 노인차별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노인차별은 개인이나 가정 혹은 기타 사적 영역뿐만 아니라 법적, 제도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등 우리 사회 도처에 존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노인차별은 연령차별의 한 유형으로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나 차별적 행동을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개인적이든 제도적이든 노인층에 대해 편견을 가진 태도나 차별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노인차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노인차별은 우리 사회 구성원인 노인이 인간 존엄성과 품위를 유지하며 건강하고 만족스런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저해한다. 또한 노인차별은 인권존중을 중시하는 기본적 민주주의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윤리적, 법적 문제를 야기하며 민주사회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세대간 화합이나 사회 통합을 저해시킬 수 있다.

노인차별에 관한 피해 및 가해 경험을 개인적 및 제도적 차원에서 살펴보는 것은 오늘날 노인들이 처한 현실 및 노인문제를 파악하고 노인의 삶의 질을 고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방향 제시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노인차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연구는 별로 없었다. 주로 노인에 대한 태도나 이미지, 고정관념이나 편견 등 인식적

차원의 연구가 이루어졌고, 노인차별에 관한 추상적인 담론, 노인차별의 상황적 판단 또는 노인의 차별감 그리고 노인차별에 관한 탐색적 연구가 시도된 바 있었고, 노인차별 경험 및 인식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 노인차별의 현황을 개인적 및 제도적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도시와 농촌을 포함, 노인층과 비노인층을 포괄하는 노인차별 실태조사를 하였다. 또한 노인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적 방안 모색을 위해 노인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델파이 조사를 병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토대로 노인차별의 현황, 원인, 대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사회 노인층을 비롯, 비노인층, 전문가 집단 대부분이 우리 사회에 노인차별이 존재한다고 인식하였다. 조사대상 대부분의 노인층(70.0%), 비노인층(90.4%), 전문가 집단 모두가 우리 사회에 노인차별이 편재(偏在)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노인차별에 대한 높은 인식은 우리 사회 인권문제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과 함께 노인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면서 사회구성원이 전반적 사회의식이나 인권감수성이 향상됨으로써 노인차별에 대한 높은 인지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노인차별 상황에 대한 구체적 경험에 있어서 노인층의 경우 40%가 넘는 비율이 노인차별의 상황을 경험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비노인층의 경우 상황에 따라 40~50%가 노인차별을 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 전문가 집단에 있어서 우리 사회 노인차별에 대해 '노인고용 기피'를 가장 많이 발생됨과 동시에 심각한 사안으로 보았고, '자녀들의 노인부양 기피', '노인들의 문화프로그램 및 공간부족' 등을 지적하였다. 한편, 노인차별을 나타내는 구체적 상황에 대해 노인차별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노인층의 경우 구체적 상황에 대해 경중의 차이는 있으나 70-80%가, 비노인층의 경우 80% 정도가 제시된 상황들을 '노인차별'이라고 인식하였다.

넷째, 노인차별에 대한 원인으로 노인층 및 비노인층이 비슷하게 ‘노인의 낮은 사회적 지위’, ‘노인에 대한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 ‘노인복지 미비’ ‘세대간 단절’ 등을 지적하였고 전문가 집단에서는 ‘생산성과 젊음이 중시되는 사회적 가치’, ‘노인(노화)에 대한 이해 부족’, ‘노인에 대한 대중매체의 부정적 이미지 강조’ 등이 지적되었다. 이와 같이 노인차별의 원인은 노인의 낮은 사회적 지위, 노인복지 미비, 대중매체의 부정적 이미지 강조 등 제도적 측면이 있으며, 노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 생산성과 젊음이 중시되는 사회적 가치 등 개인적 측면에서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개인적, 제도적 측면의 차별적 원인은 상호 연관되어 있으므로 원인에 대한 대응 마련에 있어서 이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노인차별 해결방안으로 노인층, 비노인층의 경우 경중의 다소 차이가 있지만 ‘노인 일자리 마련, 노후소득 지원’, ‘노인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개선’, 그리고 ‘허약노인들의 위한 지원서비스’, ‘노인에 대한 사회적 역할 부여’ 등이 지적되었다. 전문가 집단에 있어서도 ‘노인취업 및 일자리 지원’이 가장 우선적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노인과 노년기에 대한 조기교육 실시’, ‘정년제도 철폐 또는 정년연령의 조정’, ‘광고 및 대중매체에 활동적인 노인 이미지 제시’ 등으로 나타났다. 시급히 실행되어야 할 해결방안으로 중요성과 마찬가지로 ‘노인취업 및 일자리 지원’이 제시되었으며 두 번째 역시 ‘노인과 노년기에 대한 조기교육 실시’로 지적되었다.

여섯째, 노인차별 예방방안으로 노인층, 비노인층 모두 ‘일자리 마련, 노후소득 지원’을 가장 높은 비율로 지적하였고 ‘노인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개선’, 그리고 ‘허약노인들을 위한 지원서비스’ 등이 지적되었다. 전문가 집단은 ‘노인취업 및 일자리 강화’, ‘언론매체를 통한 긍정적인 노인 이미지 홍보’, ‘노후준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노후생애 준비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급하게 실행되어야 할 예방책으로 중요성과 마찬가지로 ‘노인 취업 및 일자리 지원 강화’로 나타났으며, 두

번째 시급한 사항 역시 '언론매체를 통한 긍정적 노인 이미지 홍보'로 나타났다. '노후준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노후생애 준비교육을 실시'한다는 항목에서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시급성의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모든 항목들은 중요성과 시급성에 있어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지역별 비교에 있어서 농어촌의 노인들은 도시 노인들보다 노인차별 행위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으며, 인식의 정도도 더욱 높게 나타났다. 한편, 비노인층의 경우에는 농어촌 지역과 도시지역이 노인차별 경험이나 인식의 정도가 큰 차이가 없는 편으로 나타났다. 제도적/규범적 노인차별 항목에서는 노년기의 이혼 및 재혼과 관련된 규범을 제외하고 모든 항목에서 비노인층이 지역과 상관없이 노인차별을 더욱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어촌 노인들이 도시노인들보다 노인차별이라고 인식하였고, 특히 '노인여가 문화'와 '정보화' 영역에서 도시 노인층보다 상대적으로 더욱 차별적 상황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농어촌 지역의 노인 대상 제반 서비스 및 여건 조성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과 연관되며 따라서 도·농간 노인차별 경험 및 인식 차이를 좁히기 위해 농어촌 지역의 제반 복지적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덟째, 세대간 비교에 있어서 노인차별 경험과 관련 가장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은 '노인의 말이나 행동을 못미더워하는 것',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이성에 대한 관심 표현', '나이든 외모에 대한 거부감이나 싫어하는 느낌' 등이 해당되었다. 전자는 비노인층이 노인층보다 훨씬 많이 경험한 반면, 후자 두 항목은 노인층이 더 경험하는 편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인 차별 인식과 관련하여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성에 대해 관심을 갖거나 이야기했다가 무안받는/주는 것'과 같은 규범적 사안이었는데, 이를 포함하여 대부분 항목에서 비노인층이 노인층보다 노인차별로 인지하는 정도가 높았다. 한편,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노인이라는 이유로 부탁내지 요청받지

못했다 또는 요청하지 않았다' 및 '노인이라는 이유로 못미더워 했다'의 경우 노인층에서는 상대적으로 노인차별이라고 인지하는 정도가 높았으나, 비노인층에서는 다른 노인차별 항목들에 비해 노인차별로 인지하는 정도가 낮았다. 특히 전자의 경우 경험 빈도에서 비노인층과 노인층 모두에게서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경험하는 노인차별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인식에 있어서 노인층이 비노인층보다 노인차별로 인식하는 정도가 높았다.

한편, 제도적/규범적 측면에 있어서 비노인층이 노인층보다 노인차별이라고 인식하였다. '노인일자리 부족', '노인문화 부재와 여가시설 부족'은 노인층, 비노인층 모두 노인차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의 문제 해결이 세대를 불문 하고 동의할 수 있는 노인차별 대처의 주요 사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따라서 노인들이 경제활동을 비롯하여 무엇인가 할 수 있음에 불구하고 어떠한 일을 요청받지 못하고 배제되어지는, 그리고 노인들이 의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음에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개인적, 제도적 상황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세대간 이견을 줄이고 세대통합을 이루어나가면서 노인차별적 경험을 줄여나가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차별 대응을 위한 두 가지의 기본전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노인의 인권존중 및 국가의 인권보장 의무가 확립되어야 하며 둘째, 노인의 권리보장 시각에서 노인차별의 정책적 개입을 위해 '제도적 환경-사회 인식의 균형적 패러다임'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정책 개입을 위한 하위 목표로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환경의 고려, 사회적 인식 개선의 병행 등이, 그리고 이의 하위 정책 목표로 노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환경 구축 및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 증진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사회는 노인차별이 도처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으므로 '노인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이 실행되어야 하며 개인적, 제도적 노인차별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제반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개입전략을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제시하였다. 첫째 노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환경 구축으로 노인 고용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노인의 안전과 사회적 참여의 권리 확대를 제안하였다. 노인 고용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고령자 고용촉진제도의 확대, 노인고용 차별 금지의 법적 근거 마련, 정년제 연장,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의 활성화를 제시하였다. 노인의 안전과 사회적 참여의 권리 확대를 위한 전략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대처, 성년 후견인 제도의 도입, 민간 옴부즈맨 제도의 도입, 노인 범죄 피해 예방, 정보 및 물리적 접근성 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 증진 방안으로 이를 위해 노인차별과 인권에 대한 사회적 교육, 전문교육 기회의 확대, 노인 대상 소비자 교육, 세대통합 프로그램의 확대, 대중매체로부터의 노인 소외 방지, 미디어를 통한 노인의 긍정적 이미지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이번 노인차별 실태조사 연구를 통해 다음의 주목할만한 결론(시사점)을 얻어낼 수 있었다. 첫째,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노인차별 실태에 대한 실증적 확인이다. 그간 우리 사회에 노인차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경험을 통한 현상학적 근거를 통해 합의되었을 뿐 객관적 자료를 통한 실증적 이해는 부족했다. 이번 연구는 우리 사회에서 노인차별이 개인적이고 대인적인 차원과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해 주었다.

둘째, 노인차별의 심각성과 정책적 개입의 시급성 대한 다양한 인구 집단의 의식이 서로 크게 상이하지 않다는 것이 교차 검증되었다. 비노인집단, 노인집단, 전문가집단

모두 우리 사회에 노인차별이 만연해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시급히 모색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서로 다른 사회적 지위와 시각을 소유한 집단이 노인차별 실태의 심각성과 제도적 접근 모색의 시급성에 대해 폭넓게 공감하고 있다는 것은 그간 노인차별이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지적 욕구와 합의 수준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이번 연구의 결과는, 노인차별 근절을 위한 정책적 개입은 노인 삶의 구체적 영역에 보다 직접적인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실천적 정책으로 제시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그간 노인차별의 문제는 사회 구성원의 인식적 차원의 문제로 주로 다루어져 왔다. 따라서 노인차별에 대한 접근도 경로사상의 고취나 신호문화의 정립 등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에 주력해 왔다. 그러나 이번 연구의 결과는 노인차별의 보다 직접적인 원인이 노인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교환성에 있으며 정책적 개입 역시 직접적으로 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교환성을 회복할 수 있는 대책으로 제시되어야 함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노인에 대한 일반의 인식개선 역시 병행되어야 할 과제이나 인식개선의 문제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노인차별의 이차적이고 간접적인 원인이며 또한 노인차별 근절을 위한 이차적이고 간접적인 방안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경로사상의 고취와 신호문화 정립의 인식적 개선에 주력해온 노인차별에 대한 과거의 접근 전략을 전환하여 노년기 삶의 환경들을 개선하는 보다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노인차별은 노인 개개인의 다양성이 강조되고 노인의 역량 강화에 관심을 가지며 역연령(曆年齡)에 근거하지 않고 개인의 욕구와 능력, 경험, 그리고 특성에 근거한 개인적 및 사회적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제반 사회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우리 사회 '명백히 드러나거나' 또는 '보이지 않으나 여

전히 존재하는' 노인차별적 요소 및 제도 개선 등 제반 개인적, 환경적 변화가 이루어져 노인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보다 나은 노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노인인권 보장의 실제적 구현이 시급히 요청된다.

참 고 문 헌

- 강현아 · 김항심 · 이은주. 2000. “직장 내 성차별적 관행과 성평등 의식의 딜레마: 광주지역 사례 연구.” 『현대사회과학연구』 11: 91-122.
- 강희설. 2004. “노인차별에 대한 노인의 경험과 인식.”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고양근. 2002. “현대사회에서의 노인차별-노인의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pp. 47-60.
- 구지순. 1987. “노인여성과 사회적 차별문제.” 『여성문제연구』 15: 133-149.
- 권경득. 2000. 공직인사상의 여성차별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행정학회 국제포럼 발표논문집』 155-174.
- 김근홍. 2005. “독일의 노인복지정책”. 임춘식 외 『세계의 노인복지 정책』 244-315.
- 김문영. 2000. “Ageism을 통해 본 노인차별에 관한 고찰.” 『정신간호학회지』 9(4): 515-524.
- 김미혜 · 원영희. 1999. “새로운 이미지 정립을 위한 노인광고: 신문매체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19(2): 193-214.
- 김영숙. 2002. “중 · 고등학생의 노인 이미지에 대한 도시와 농촌의 비교연구.” 『한국노년학』 21(3): 75-89.
- 김영중. 1990. “한국사회의 여성문제와 사회복지: 여성 차별적 사회구조의 의미.” 『여성문제연구』 18: 33-62.
- 김육. 2002a. “억압의 한 형태로서의 노인차별주의(Ageism): 사회복지적 대응과 함의.” 『사회복지정책』 14: 97-118.
- 김육. 2002b. “한국의 노인차별에 관한 탐색적 조사연구.” 『한국노년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pp. 61-77.
- 김육. 2003. “노인차별의 실태 및 관련요인에 관한 탐색적 조사연구.” 『한국노년학』 23(2): 21-35.
- 김윤정 · 정선아. 2001. “청소년의 노인에 대한 태도: 노인에 대한 인식과 행동 간의

- 관계 규명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6): 173-183.
- 김정석 · 김영순 (역). 2000. 『노년 불평등과 복지정책』. 나눔의 집.
- 김정애. 1999. “여성장애인의 이중차별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형수. 2002. “한국노인의 자살생각과 관련요인 연구.” 한국노년학, 22(1): 195-172.
- 김혜경. 1997. “청소년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조부모와의 세대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65-79.
- 모선희 외. 2004.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NAP 수립을 위한 노인권 기초현황 조사”. 밝은 노후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의 모임.
- 박경란 · 이영숙. 2001. “대학생이 갖고 있는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 분석.” 『한국노년학』 21(2): 71-83.
- 박수천. 2005. “노인 인권 보호의 세계 동향과 성년후견인제 도입 방안”. 『한국노인 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pp. 11-34.
- 박종우. 1999. “한국사회의 연령주의(Ageism)와 노인문제.” 『경북대 사회과학』 11: 51-6.
- 배지연. 2004. 노인자살에 관한 사례분석: 신문기사내용을 중심으로. 한국노인복지 연구, 봄호, pp. 65-82.
- 보건복지부. 2006. 노인학대 현황과 대책. 당·정 간담회 보고자료.
- 보건복지부. 2006. 늘어나는 노인사기 피해 예방 지침 홍보. 2006. 6. 29. 보도자료집.
- 보건복지부. 2006. 시설 생활노인에 대한 인권보호, 학대예방, 안전관리에 대한 지침 신설. 2006. 5. 26. 보도자료집.
- 사회복지신문. 1997년 2월 3일자. ‘96년 한국의 지표’.
- 서병숙 · 김수현. 1999.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이미지 연구.” 『한국노년학』 19(2): 97-111.
- 서윤. 2000.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인지와 목격실태에 관한 연구.” 『노인 복지연구』 7: 27-71.

- 양옥경. 1998.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편견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5(8): 231-261.
- 양창삼. 1989. 불평등과 차별적 사회문제. 「평등문제와 우리사회」 한국사회이론학회. pp. 31-64.
- 엄장호 외. 2000. 『사회문제론 II』. 서울: 도서출판 열린.
- 원영희. 2005. “노인차별 피해경험이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정책』 21: 319-339.
- 원영희. 2004. “노인편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24(1).
- 원영희 외. 2003. “노인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형사정책연구』, 14(3).
- 우국희. 2001. 노인학대 관련 정책 개발을 위한 일고찰: 미국의 노인학대 관련법과 서비스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44: 209-231.
- 유동철. 2000. “여성지체장애인에 대한 이중차별 분석: 고용과 임금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15: 73-109.
- 유성호. 2005. “호주의 노인복지정책”. 임춘식 편집 『세계의 노인복지 정책』 321-353.
- 윤인경 외(2006).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비 학교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인적자원부·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동연구 용역과제.
- 윤인진. 2000. “소수차별의 메커니즘.” 『사회비평』 가을호: 24-36.
- 이금룡. 2004. “연령별 노인에 대한 태도 비교를 통한 세대통합 프로그램의 전략적 방안 모색.” 『한국노인복지연구』 26: 143-164.
- 이선자. 1989. “각 연령별로 본 노인에 대한 태도의 심리학적 고찰.” 『한국노년학』 9: 79-91.
- 이시형 외. 1999. 『노인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 및 부양의식』. 삼성생명 사회정신
- 이연호, 2001. “선진국 노인학대 지원제도 및 프로그램 비교 연구”. 『한국노인복지연구』, 14: 165-192.
- 이영숙·박경란. 2002. 노년학 교육이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1(3): 29-41.

- 이은미. 1990. “중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이미지에 관한 연구: 텔레비전의 드라마와 코메디물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재창·송관재·홍영오. 2001. “사회적 오점보유자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 및 자존감에 관한 연구: 지체장애인 및 윤락녀를 중심으로.” 『사회문제』 17(1): 119-137.
- 이혜원. 1999.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태도조사. 『한국사회복지학』 39: 266-289.
- 장인협·최성재. 1988.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 장지연. 2002.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과 고용정책』.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장지연. 2004.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과 고용정책(II)』.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06. 고령친화적 기업경영모델 개발과 확산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 2006. 10. 23. 보도자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06.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0) 시안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
- 정경희 외. 2002. “무료 및 실비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인권실태 사례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조명희. 1987. “청소년의 노인에 대한 사회심리적 태도 분석.” 『지역환경』 5: 73-87.
- 조용만. 2004. 『고용차별금지법의 국제비교: 영미법계의 연령·장애 차별금지법제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애저·김승원·김유경. 1993. 『노부모 학대실태에 관한 사례연구: 6개 대도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이용노인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지광준. 2002. 노인범죄의 특성과 그 대책. 『한국노년학』 21(3): 1-14.
- 최성재 외. 2003. 『지역사회에서의 노인학대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최원기. 1989. “노인의 차별감에 대한 고찰: 하위문화론과 현대화이론을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 차중천. 2004. 차별의 개념 및 실태와 원인. 『보건복지포럼』, 95, 6-20.
- 최정혜. 2002. “노인이 지각하는 가족 내 차별감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 추계 학술대회 자료집』 pp. 94-111.

- 한국노동연구원. 2002. 『사업체 실태 조사』 .
- 한국여성개발원. 1996. 『대중매체의 여성차별지표개발: 텔레비전을 중심으로』 .
- 한국인터넷진흥원. 2006. 『2006년 상반기 정보화실태조사 요약보고서』 .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3. 『장·노년층 정보격차 실태조사』 ..
- 한동희. 2002. 한국의 노인차별에 관한 연구-공공영역에서의 노인차별-. 한국노년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pp. 78-93.
- 한은주. 2006. “노인학대의 원인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 한국학술정보(주).
- 한정란. 2000. “대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0(3): 115-127.
- Aday, R. H., McDuffie, W. & Sims, C. R. 1993. “Impact of an Intergenerational Program on Black Adolescents’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Educational Gerontologist*, 19(7): 663-674.
- Allport, G. W. 1954. *The Nature of Prejudice*. NY: Doubleday.
- American Bar Association Commission on Law and Aging, 2005. Information about law related to elder abuse.
- Atchley, R. 1988. *Social Forces and Aging : An Introduction to Social Gerontology*. Belmont, CA: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 Blau, Z. 1981. *Aging in a changing society*(2d ed.), New York: Franklin Walts
- Burgess, E. W.(1960). *Aging in western societi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utler, R. N. 1969. “Ageism: Another Form of Bigotry.” *The Gerontologist* 9: 243-246.
- _____ 1987. "Ageism." In G. Maddox et al., (ed.). *The Encyclopedia of Aging*. NY: Springer Publishing Co.
- Cowgill, D. & Holmes, L.(1972). *Aging and modernization*. New York: Appleton-Century-Crofts

- Cowgill, D. 1974. Aging and modernization: A revision of theory. In J. F. Gubriun(Ed.), *Late life communities and environmental policy*. Springfield, Ill.:Charles C. Thomas
- Dowd, J. J. 1980. *Stratification among the aged*. Monterrey, Calif.:Books/Cole.
- Dowd, J. J., Sisson, P. R. & Kern, Dennis, M. 1981. Socialization in Violence among the Aged. *Journal of Gerontology*, 36(3): 350-354.
- Estes, C. & Binney, E. 1998. The biomedicalization of aging: Danger and dilemmas. *The Gerontologist*, 29.
- Estes, C., Zhlman, D., Goldberg, S., & Ogawa, D., 2004. State long term care ombudsman program. *The Gerontologist*, 44(1), 104-115.
- Foner, A.(1975). Age in society:Structures and change.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19.
- Hagestad, G. & Neugarten, B. 1985. Age and the life course. In R. H. Binstock & E. Shanas(Eds.),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2d ed.). New York: Van
- Hawkins, M. J. 1996. "College Students' Attitudes Toward Elderly Persons." *Educational Gerontology* 22(3): 271-280.
- Herme, S. 2002. Perspectives on elder abuse.
- Hooyman, N. R. & H. A. Kiyak.(1991). *Social gerontology: A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2d Eds.), Boston:Allyn & Bacon.
- Hummert, M. L. 1993. "Age and Typicality Judgements of Stereotypes of the Elderly: Perceptions of Elderly versus Young Adults."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37: 217-226.
- Hummert, M. L. Garstka, T. A. Shaner, J. L. & Strahm, S. 1995. "Stereotypes of the Elderly held by Young, Middle-aged, and Elderly Adults." *Journal of Gerontology* 49(5): 240-249.
- Ife, J. 2001. *Human Rights and Social W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unda, Z. 1999. *Social Cognition*. MA: MIT Press.
- Levin, J. & Levin, W. 1982. *Ageism: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against the Elderly*. Belmont, CA: Wadsworth.
- Lussier, R., 1998. Title II of the older workers benefit protection act. *Harvard Journal on Legislation*, 35, 189-224.
- MacNeil, R. D. Ramos, C. I. & Magafas, A. M. 1996. "Age Stereotyping among College Students: A Replication and Expansion." *Educational Gerontology* 22(3): 229-244.
- Macnicol, J., 2005. The age discrimination debate in Britain, *Social Policy and Society*, 4(3), 295-302.
- McMullin, J. A. & Marshall, V. W. 2001. "Ageism, Age Relations, and Garment Industry Work in Montreal." *The Gerontologist*. 41(1): 111-122.
- Matavish, D. G. 1971. "Perceptions of Old People: A Review of Research Methodologies and Findings." *The Gerontologist* 11(4): 90-101.
- McGowan, T. G. 1996. *Ageism and Discrimination*. *Encyclopedia of Gerontology: Age, Aging and the Aged*. CA: Academic Press.
- Minkler, M. & Estes, C. 1984. *Readings in the political economy of aging*. Farmingdale, NY: Baywood.
- Nelson, T. D. 2002. *Ageism: Stereotyping and Prejudice Against Older Persons*. MA: MIT Press.
- Palmore, E. B. 1990. *Ageism: Negative and Positive*. NY: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_____, E. 2001. "The Ageism Survey: First Findings." *The Gerontologist* 41(5): 572-575.
- Palmore, E., & Manton, K. 1973. "Ageism Compared to Racism and Sexism." *Journal of Gerontology* 28: 363-367.

- Pasupathi, M., & Lockenhoff. 2002. "Ageist Behavior." In Nelson, T. D.(eds). *Ageism: Stereotyping and Prejudice against Older Persons.* (pp. 201-246). London: MIT Press.
- Riley, M. M. 1971. Social gerontology and the age stratification of society. *The Gerontologist*, 11.
- _____ (1985). Age strata in social system. In R. H. Binstock and E. Shanas(Eds.),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2d ed.)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 Rose, A. M.(1965). The subculture of the aging: A framework. In A. M. Rose & W. A. Peterson(Eds.), *Older people and their social worlds.* Philadelphia: F. A. Davis.
- Rosencranz, H. A., & McNevin, T. E. 1969. "A Factor of Attitudes toward the Aged." *The Gerontologist* 9: 55-59.
- Rosow, I.(1985). Status and role change through the life cycle. In R. H. Binstock and E. Shanas(Eds.),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2d ed.),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 Saenger, G. 1953. *The Social Psychology of Prejudice: Achieving Intercultural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in a Democracy.* NY: Harper & Brothers Publishers.
- Sanders, G. F. Montgomery, J. E, Pittman, Jr. J. F., & Balkwell, C. 1984. "Youth's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3(1): 59-70.
- Schmit, D., & Boland, S. 1986. "Structure of Perceptions of Older Adults: Evidence for Multiple Stereotypes." *Psychology and Aging* 1: 255-260.
- Seefeldt, C. 1984. "Children's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19: 319-28.
- Seniors Resource Centre Association of Newfoundland and Labrador, 2004. Strategic plan to address elder abuse in Newfoundland and Labrador, St, John: Seniors Resource Centre Association of Newfoundland and Labrador.

- Troxler, A. J. 1971. "Intergenerational Differences in Attitudes toward Old People." *The Gerontologist* 11: 3.
- Tuckman, J., & Lorge, I. 1969. "Attitudes toward Old Peopl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7: 249-260.
- Whitbourne, S. K., & Sneed, J. R. 2002. "Paradox of Well-being, Identity Process, Stereotype". In Nelson, T. D. (eds.). *Ageism: Stereotyping and Prejudice against Older Persons*(pp. 247-273). London: The MIT Press.
- Yamada, 1999. A telephone counseling program for elder abuse in Japan. *Journal of Elder Abuse and Neglect*, 11(1), 105-112.
- Zastrow, C. 2000. *Introduction to Social Work and Social Welfare (7th edition)*. Belmont, CA: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부 록

1. 일반용 설문지
2. 노인용 설문지
3. 전문가 델파이 설문지(1차)
4. 전문가 델파이 설문지(2차)